

▣ 참여연구진

저 자 황정윤, 김건위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정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건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소지 요건 완화와 인감대장 전산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의 타당성과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행정 접근성과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의 행정 부담 완화와 운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개편 방향과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 인감증명제도 이용 현황과 문제점 진단

- 인감증명제도는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 유지되어 온 핵심적인 제도이나,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비해 운영 방식의 개선은 제한적이었음
 -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신고·변경·말소 등 주요 업무는 여전히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기관에 한정되어 운영이 이루어짐
- 주소지 중심의 신고·변경 체계는 직주불일치, 생활권 분산, 지역 이동성 확대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과 민원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발
 - 실제 생활지역과 행정처리 가능 지역 간 괴리로 인해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민원 접근성 측면에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인감대장이 수기 방식으로 관리되는 현행 구조는 디지털 행정환경과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음
 - 주소 이전 시 인감대장 이송, 종이대장 관리 등 아날로그 기반 절차가 유지되면서 행정 효율 저하와 오류·분실 위험이 상존
 - 전산 발급시스템과 수기 원본 대장이 공존하는 현재의 관리 구조는 제도 전반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나, 수요기관의 관행적 인감 요구와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제 활용은 제한적임
 - 그 결과 본인 확인에 대한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제도의 선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 지속됨
- 이와 같은 문제는 인감증명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주소지 요건 완화와 전산화 추진이 단순한 편의성 제고를 넘어 종합적인 제도 재설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
 - 인감증명제도의 운영 실태 및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의 수요 및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소지 요건 완화 및 전산화 추진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단계별 개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인감증명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결과

□ 일반 국민 및 업무 담당자의 인감증명제도 개선 수요

-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이는 인감 민원이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부담이 크고, 편의성 개선의 체감 효과가 크기 때문임
 - 민원인은 금전적 부담보다 방문에 따른 시간·거리 비용, 대기시간 등 오프라인 처리의 불편을 지적함
 - 주소지와 생활권이 일치하는 집단은 비교적 불편이 적으나, 생활권이 분리된 집단에서는 불편이 집중되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 신중한 개선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감 신고·변경의 요건 완화에 대한 편의성 향상과 함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단순한 주거지 완화 방식보다는 안전장치가 병행된 개선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담당자의 경우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책임 소재 불명확, 관리의 일관성 저하, 보안 위험, 대도시 지역의 업무 집중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함
 - 특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전면 개편보다 시범운영 후 단계적 개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통합전산망 구축, 정보 연계, 인력·예산 지원, 본인확인 강화 등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성 또한 강조됨
- 인감대장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효율화와 오류 감소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됨
- 다만 시스템 장애, 해킹, 초기 이관 오류, 원본 확보 및 관리 등의 이슈가 존재하므로, 안정성과 보안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됨

□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수요기관 수용 가능성 및 제도적 고려사항

- 심층 면접조사 결과, 인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전산시스템, 법적 책임 구조, 금융·등기 실무 관행 등 복합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이해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수용가능한 개선 범위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개선 방향 설정 시 제도·기술·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종이 인감증명서를 전자 인감증명서로 단기간 내에 전면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용 부진은 신뢰성 부족보다는 문서 구조와 금융·등기 실무 프로세스 간의 부적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실질적인 제도 대체를 위해 양식 개선, 해석 기준 및 지침의 통일, 수요처의 관행 및 운영체계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적 효과 분석 결과

□ 주소지 요건 완화의 정책적 효과 검토

- 주소지 요건 완화 수준에 따라 인감 신고·변경의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는 주소지 요건의 시군구 단위 완화에서 시도·전국 단위 완화로 갈수록 증가하며, 이미 인감을 보유한 기등록자가 전체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는 신규 신고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
 - 이는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효과가 신규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보다는 기존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에 집중됨을 보여줌
 - 미등록자를 중심으로 한 잠재적 신규 신고 수요 또한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어, 제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인감 이용 행태 전반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됨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주소지 요건의 완화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국 평균 업무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시군구 단위 완화 시나리오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업무량 증가가 관찰되나, 시도·전국 단위로 확대될수록 업무 부담의 지역적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강화됨
 - 특히 전국 단위 완화 시 대도시 및 업무 중심 지역에서 업무량 증가 폭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비교적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 간·권역 간 행정수요의 편중 가능성이 확인됨
 - 주민센터 단위 분석에서도 주소지 요건 완화가 상당수 읍면동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설계 시 지역별 수용 능력과 행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인감대장 전산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됨
 - 분석기간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순현재가치가 0을 상회하고 비용편익비가 1 이상으로 나타나,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행정 내부 편익을 확대 반영한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감대장 전산화의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인감증명제도의 개선방향 및 정책 제언

□ 단계별 제도 개선 방향과 추진 전략

-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있어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이 가능할 경우 편익이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장 담당자는 책임 소재 불명확과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 제도 개편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행정적 안정성과 국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3단계 전략이 필요
 - 단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소지 요건 완화
 - 중기: 전산화·수기 인감대장 폐지
 - 장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의 인증체계로 점진적 전환
- 단기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고'에 한해 주소지 요건을 완화
 -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량 변화, 처리시간, 오류율, 민원 증가 양상 등 효과성 지표를 모니터링·분석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기초-광역-전국 단위의 점진적 확대 전략이 요구됨
- 중기적으로는 인감대장의 전면 전산화·수기대장 폐지를 통해 수기 기록·이송·보관에 수반되는 비효율·부담을 제거

- 통합전산망·실시간 정보연계·전자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강화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한 기술·시스템 기반을 마련
- 장기적으로는 인감증명제도의 이용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표준적인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재설계
 - 제도·법령·수요기관 규정과 거래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 체계를 단순화·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법·제도적 정비 및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관리 과제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 및 전산화를 위한 상위법·시행령 정비가 필요
 - 각 단계별 조치(주소지 요건 완화, 전산화·수기대장 폐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중심 전환)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인감제도의 단계적 축소·전환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근거 고시·지침 제정, 책임소재·처리범위 또한 함께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 완화 필요
- 시스템·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 통합 인감관리 전산망 구축, 데이터 이관·품질관리, 이중화·백업·보안체계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 전산 장애·사이버 공격·데이터 오류 등의 위험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비대면 이용 기반을 확충해야 함
- 공무원의 책임 부담과 적용 비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인감업무 전담 인력 배치, 업무 재배치 및 정원 재설계, 전산·보안·비상대응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창구 운영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인감제도에 대한 관행적 이용 및 의존도를 낮추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중심으로 인증체계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
 - 은행·법원·공공기관 창구에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이 가능’함을 상시 안내 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오해를 줄이는 홍보 전략 필요

【요약 표 1】 인감증명제도의 단계별 개선 방향 및 대응 전략

단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문제 가능성	대응전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지역 중심 주소지 요건 완화 이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운영 확대 인감 '신규신고'에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 중심 신고·변경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감소 국민의 행정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 신고에 따른 관리·책임 주체 불명확 우려 특정 지역(도심·업무지구 등)에 민원 쏠림 현상 가능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선 및 민원 증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확인·대리발급 요건에 대한 표준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 사전예약제 등 민원 분산 장치 도입 정부24·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 인감대장 폐지 통합 전산망 구축 및 인감대장 전면 전산화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기대장 이송·보관·검증 업무의 제거로 행정 효율성·업무 생산성 향상 분실·훼손·기재 오류 등 아날로그 관리의 비효율성 감소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처리 가능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장애·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 가능성 초기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오입력 등 전산 품질 저하 위험 해킹·사이버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현장 적응 부담 및 교육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화·백업, 재해 복구센터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축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표준 절차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운영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고도화된 인증·접근권한 관리 체계 도입 전산시스템 매뉴얼·온라인 교육·현장 설명회 등 체계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 인감증명 이용 축소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장 제작·보관·분실에 따른 비용·위험 소멸 본인발급에 따른 대리 위·변조 위험 상대적 감소 인증수단의 단순화·표준화에 따른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을 전제로 한 기존 거래 관행·법적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의 제도 적응 부담 및 접근성 저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기관 중심의 시스템 개편 등 전환 계획 마련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전담 창구 마련 및 별도 대응체계 구축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의 수행체계	10

제 2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제1절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검토	13
1. 인감증명제도 개요	13
2. 현행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1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0
1. 인감증명제도에 관한 논의	30
2. 인감증명제도의 대안 및 대체가능성에 관한 논의	31
3. 디지털 측면에서의 인감증명제도에 관한 논의	33
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34
제3절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도출	37
1. 현행 인감증명제도 이슈 검토	37
2. 주요 쟁점 파악 및 도출을 위한 면접조사	44
3.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쟁점 및 고려사항	48

목 차

제 3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설계	51
1. 설문조사 개요	51
2. 심층 면접조사 개요	53
제2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56
1. 일반사항	56
2. 인감증명서 이용	58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66
제3절 인감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72
1. 일반사항	72
2. 인감 업무 처리	75
3. 인감증명제도 및 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실태	80
4. 인감증명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선 필요	85
제4절 심층 면접조사 결과	100
1. 금융기관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100
2. 법원행정처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103
3.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106
제5절 조사결과 종합	109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09
2. 심층 면접조사 결과 요약	120
3. 소결 및 시사점	122

제 4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적 효과 추정

제1절 정책적 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및 방법	129
1. 직주불일치의 개념 및 적용	129
2. 직주불일치 인구의 산정	130
제2절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 추정	133
1.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방법	133
2. 주소지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	140
제3절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153
1.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방법	153
2.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156
제4절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166
1. 경제적 효과 추정의 가정 및 고려사항	166
2.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 모형 설계	172
3.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타당성 검토	176

제 5 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87
1. 인식조사 분석 결과	187
2. 정책효과 분석 결과	191
제2절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95
1.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195

목 차

2.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	197
3.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201
4. 소결: 인감제도 개편의 방향 및 과제	205
참고문헌	209
부 록	211

표 목차

표 1-1		현행 인감증명법상 인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표 2-1		인감증명법의 주요 연혁	16
표 2-2		연도별 인감신고 현황	18
표 2-3		연령대별 인감신고 현황(2025.7 기준)	19
표 2-4		지역별 인감신고 현황(2025.7 기준)	20
표 2-5		연령대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21
표 2-6		지역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21
표 2-7		연령대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말소, 부활 포함)	23
표 2-8		지역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말소, 부활 포함)	24
표 2-9		연령대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25
표 2-10		지역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26
표 2-11		연령대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27
표 2-12		지역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28
표 2-13		관련 선행연구 정리	34
표 2-14		연령대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이용현황	37
표 2-15		인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처리 절차	39
표 2-16		인감증명법 시행령	42
표 2-17		인감증명제도 관련 제도개선 요구 목록	43
표 2-18		조사 개요	45
표 3-1		일반국민 인식조사 내용 및 문항	52
표 3-2		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내용 및 문항	52
표 3-3		심층 면접조사 개요	54
표 3-4		응답자의 성별: 일반국민	56
표 3-5		응답자의 연령: 일반국민	56
표 3-6		거주지역: 일반국민	57

표 목차

표 3-7		직업: 일반국민	58
표 3-8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 일반국민	58
표 3-9		인감증명서 용도: 일반국민	59
표 3-10		인감 신고 이유: 일반국민	59
표 3-11		분실·훼손 등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 경험: 일반국민	60
표 3-12		인감 변경 신고 장소: 일반국민	60
표 3-13		인감 변경 신고 비용: 일반국민	61
표 3-1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 일치 여부: 일반국민	61
표 3-15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인식: 일반국민	62
표 3-16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 가능 시 유용성 인식: 일반국민	63
표 3-17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경험: 일반국민	63
표 3-18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사항: 일반국민	64
표 3-19		인감증명서 발급·사용 이유: 일반국민	65
표 3-20		제출기관 확대: 일반국민	66
표 3-2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경험: 일반국민	66
표 3-2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유: 일반국민	67
표 3-2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용도: 일반국민	67
표 3-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	68
표 3-25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의향: 일반국민	68
표 3-2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일반국민	69
표 3-27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일반국민	70
표 3-28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식: 일반국민	71
표 3-29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안성·신뢰성: 일반국민	71
표 3-30		응답자의 성별: 업무담당자	72

표 3-31		응답자의 연령: 업무담당자	72
표 3-32		근무지역: 업무담당자	73
표 3-33		직급: 업무담당자	74
표 3-34		공무원 경력: 업무담당자	74
표 3-35		민원 업무 담당 경력: 업무담당자	75
표 3-36		담당업무 비중: 업무담당자	76
표 3-37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 처리 빈도: 업무담당자	76
표 3-38		인감 신규 신고 업무 처리 시간: 업무담당자	77
표 3-39		인감 변경 업무 처리 시간: 업무담당자	77
표 3-40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량: 업무담당자	78
표 3-41		인감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업무담당자	78
표 3-42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 및 분실 사례 경험: 업무담당자	79
표 3-43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업무담당자	79
표 3-44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 업무담당자	80
표 3-45		관할 주소지 외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시 반려한 사례: 업무담당자	80
표 3-46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 업무담당자	81
표 3-47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민원 발생 빈도: 업무담당자	81
표 3-48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주요 민원 유형: 업무담당자	82
표 3-49		인감 신규 신청·변경의 문제점: 업무담당자	83
표 3-50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등기우편 본인수령 도입 의견: 업무담당자	83
표 3-51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업무담당자	84
표 3-52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 업무담당자	84
표 3-53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업무담당자	85
표 3-54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업무담당자	86

표 목차

표 3-55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의견: 업무담당자	86
표 3-56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업무담당자	87
표 3-57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업무담당자	88
표 3-58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 업무담당자	88
표 3-59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업무량·업무시간에 미치는 영향: 업무담당자	89
표 3-60		현행 인감 업무 시스템에서 관할 주소지 외 민원 처리 가능성: 업무담당자	90
표 3-61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 업무담당자	91
표 3-62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변경 가능 시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92
표 3-63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한 의견: 업무담당자	92
표 3-64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업무담당자	93
표 3-65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시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 업무담당자	94
표 3-66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 업무담당자	94
표 3-6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95
표 3-68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96
표 3-6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업무담당자	97
표 4-1		활용데이터 현황	131
표 4-2		NICE평가정보 데이터 세부 내용	132
표 4-3		데이터 가공 절차	133
표 4-4		시나리오 및 가정별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모형	138
표 4-5		NICE평가정보 데이터 시점별 직주불일치율 기초통계	139

표 4-6	지역별 연간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141
표 4-7	시군구 유형별 연간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142
표 4-8	지역별 연간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143
표 4-9	시군구 유형별 연간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144
표 4-10	지역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145
표 4-11	시군구 유형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146
표 4-12	지역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147
표 4-13	시군구 유형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148
표 4-14	지역별 연간 변경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최근 3년 평균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149
표 4-15	시군구 유형별 연간 변경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최근 3년 평균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150
표 4-16	지역별 연간 변경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151
표 4-17	시군구 유형별 연간 변경 신고 수해가능인구 추정: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152
표 4-18	지역별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157
표 4-19	시군구 유형별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158
표 4-20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분포	160
표 4-21	단계별·시나리오별 추정모형에 따른 수해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 최소값 기준	162

표 목차

표 4-22	보수 시나리오 기준 수혜가능인구 규모	169
표 4-23	확대 시나리오 기준 수혜가능인구 규모	169
표 4-24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모형 구분	176
표 4-25	인감대장 전산화의 비용-편익 정리	177
표 4-26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비용-편익 정리	179
표 4-27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3%	180
표 4-28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5%	182
표 4-29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7%	183
표 5-1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단계별 내용 및 전략 요약	20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0
그림 2-1 수기 인감대장 작성 예시	40
그림 2-2 인감 전산업무 관리화면 예시	41
그림 5-1 인감증명제도 단계별 개편 로드맵	196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인감증명제도의 내용 및 의의

- 인감증명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신원 확인 제도임
 -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이용되어 왔음(김건위·고경훈, 2022)
 - 2003.3.26.부터는 인감전산망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2024.9.30.부터 인감 온라인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 금융기관·법원 제출용도가 아닌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해짐
- 2012.12.1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또한 마련된 바 있음

□ 현행 인감(변경)신고의 문제점 노출

- 현행 인감 신고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 인감증명법 제3조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함을 규정

-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발급업무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및 변경, 말소, 부활 등의 업무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표 1-1】 현행 인감증명법상 인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리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주소지 제약에 따라 인감발급 절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불편·불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직장, 학교 등 생활 지역이 주민등록주소지와 떨어져 있는 경우 법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인감의 신고나 변경 등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등의 경우 활용이 제약됨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제도의 변화 필요성 대두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및 보안기술의 발달, AI 활용 서비스의 확대 등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이 행정서비스 영역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감증명제도 또한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전자정부 고도화, 비대면 민원 확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각종 행정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연계·관리되고 있으며, 민원 처리 또한 온라인·자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임
- 반면 인감증명제도의 핵심 관리 수단인 인감대장은 여전히 수기(手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인감 신고·변경 이력의 수작업 기록, 종이 대장 보관 중심의 운영 방식은 현행 디지털 행정환경과 구조적 불일치를 초래
 - 이로 인해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 담당자 숙련도 의존, 기록 오류 및 관리 공백의 가능성이 존재

2) 연구의 필요성

□ 지역 이동성 확대에 따른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소지 요건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
 - 직장, 학교 등 거주지가 주소지와 상이할 경우에도 인감 신고 및 변경 등의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기관에서 처리가 필요
 -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인감 신고 및 변경에 대한 요구 증대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33% 수준으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남(안소현 외, 2025)

- 생활인구 개념과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접근성 확대 필요
 - 국민들의 공간적 생활패턴 다양화에 따른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 국민 의견 조사결과, 응답자의 73.8%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2%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안소현 외, 20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주소지 관할기관에 국한된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불편을 야기

□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추어 인감 관리 체계의 전환 필요

- 디지털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식 처리의 문제
 - 정부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전자문서 확대, 비대면 민원서비스 강화의 흐름이 공공영역에서 크게 관찰되고 있음
 - 현재는 전산대장과 별도로 수기 인감대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한 수용성 부족
 - 전산등록과 종이대장 관리가 병행되는 등 이중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 발생
- 불필요한 문서의 이동 등 지자체의 부담 유발
 - 인감신고자가 주소 이전, 등록기준지 또는 체류지 변경 등을 신청하면 구 증명청은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이송하여야 함(행정안전부, 2024)
 - 수기 인감대장의 이송, 우편 송달 등 절차에 따른 지자체 업무 부담, 우편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 불필요한 문서 이동, 기록의 수기 관리 등으로 업무 속도·정확성 저하
- 인감대장 전산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 인감대장 전산화는 인감증명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에 해당함
 - 인감 신고·변경 이력의 전산 관리를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및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가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 인감대장 전산화는 단순한 업무 개선을 넘어, 인감증명제도의 디지털 전환과 행정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감증명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운영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인감증명제도 처리절차의 단순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감 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 및 일원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됨

2. 연구 목적

□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인감(변경)신고제도의 제도 개선 요구 및 필요성 파악
 - 인감(변경)신고 제도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검토
 - 인감(변경)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감(변경)신고제도의 절차 개선 방향 도출
 - 인감(변경)신고제도의 주소지 요건 완화를 위한 개편방안 수립 및 인감대장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른 효과 및 방향 논의

□ 장기적 차원에서 인감증명제도의 효과적 운영방향 모색

- 인감증명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현황 및 인식을 검토
 -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봄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현행 인감증명제도 관련 현황 파악
 - 인감증명법 제정 이후의 인감증명제도의 변천 및 현재 운영 내용 검토
 -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이후 운영 현황 파악
- 인감증명제도 관련 국내현황 및 사례, 그리고 최근 정책·제도 등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 최근 3년(2022년~현재)간 인감신고(변경) 및 발급 현황을 파악
 - 인감 신고 및 변경과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 행정부담 등을 조사

□ 내용적 범위

-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정책 동향
 - 선행연구 및 관련 논의 검토
 - 인감증명제도 관련 법·제도 검토
 - 인감증명제도 처리 절차 및 지침 파악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인감증명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실태 확인
 - 일반국민(인감증명제도 이용자) 및 읍·면·동 공무원(인감증명제도 업무 담당) 인식 조사
 - 수요기관 관계자 의견 조사
 - 인감증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도출
-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 도출
 - 인감신고 및 변경 절차의 주소지 요건 완화와 인감대장 관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적 가치(비용 및 편익) 추정 분석

-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인감증명제도 대체수단(본인서명사실확인제)과 인감증명제도의 효과적인 병행 및 활용을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 검토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분석

-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 검토
 - 국내·외 보고서,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최신 동향 조사 및 검토
- 관련 제도 및 지침, 계획, 통계,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등 정책자료에 대한 검토
 - 인감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 (대상) 인감신고 및 변경 등 제도 이용 대상 민원인(일반국민) 및 담당 공무원, 수요기관(금융기관, 법원 등) 관계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실무 관계자 등
- (목적)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인(주소지 요건, 수기대장 관리 등)을 실제 제도 이용자(일반국민) 및 현장 공무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쟁점 사항 도출 및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함
 - 읍면동 단위의 인감 업무 처리 창구에서 느끼는 업무부담,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현장 공무원 관점에서 수집하여 개선방안 설계 시 반영하고자 함
 - 전산화·주소지 요건 완화·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등에 대한 수요 및 인식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의 수용성과 적응성을 제고함
- (방법) 구조화된 조사지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및 반구조화 심층면접을 진행
 - (설문조사)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인감제도 이용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계량적·정성적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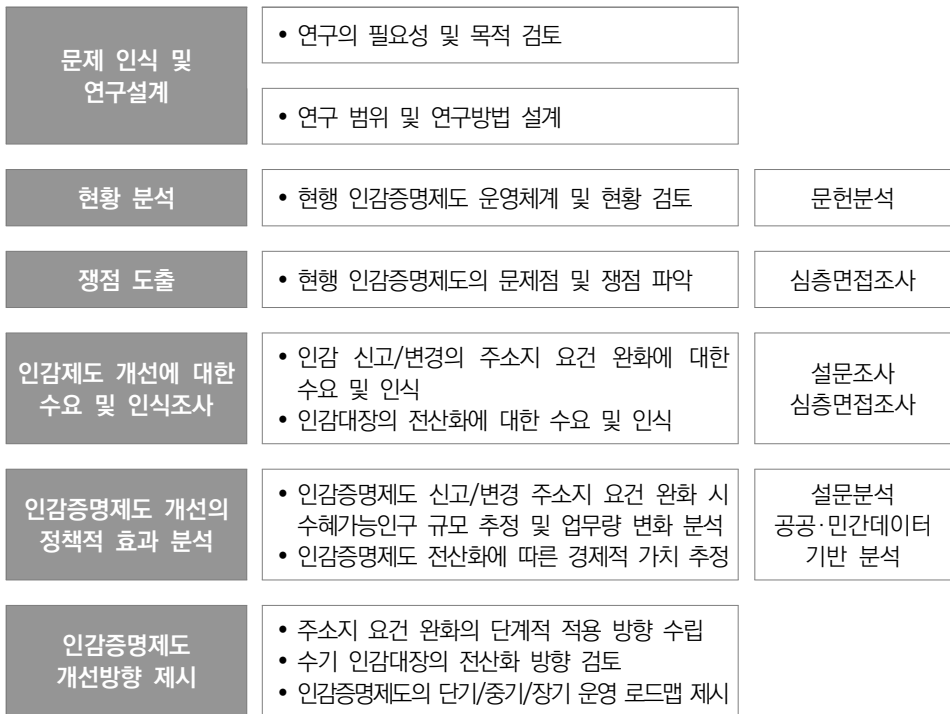
- (면접조사) 인감신고·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 인감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및 법원등기소 관계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접을 실시하여 인감제도의 문제 및 쟁점, 제도 개선 필요성,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정성자료 수집

□ 전문가 자문: 개선방향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

- 본 연구의 쟁점 사항 도출 및 개선방향 수립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고, 정책제언의 정합성을 확보함

3. 연구의 수행체계

|그림 1-1 | 연구흐름도



제 2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제1절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검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도출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쟁점 진단

제1절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검토

1. 인감증명제도 개요

□ 인감의 개념 및 인감증명사무의 구성

- 인감이란, 개인의 도장을 행정청(시·군·구)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시 공무원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하는 제도임¹⁾
- 인감증명사무는 인감등록사무와 인감증명사무로 구성됨
 - 인감등록 시 증명청 또는 등기소는 인감을 등록하는 자가 본인에 해당하는지(본인의 동일성), 그리고 인감등록의 신청이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등록신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박광동, 2010)
- 따라서 인감등록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신고의 원칙, 인장제출의 원칙, 등록 의사확인 원칙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됨(김병두, 2004: 252)

□ 인감증명제도의 활용 및 관련 동향

- 인감증명 주요 활용분야는 ① 부동산 및 재산권 관련 사무, ② 가족관계 관련 사무, ③ 대리인 위임 관련 사무, ④ 저당권 설정 관련 사무, ⑤ 각종 법인설립이나 계약관련 사무 등이 대표적임(김건위·고경훈, 2022)
 - 인감은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리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소명자료로 기능함

1) 인장(도장)을 의미하는「印」과 거울을 뜻하는「鑑」의 합성어인 印鑑은, 거래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는 인영(印影)의 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미리 날인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신고한 인영임(김병두, 2004: 248)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 행정청에 등록하고 이미 신고된 본인 고유의 서명 사실을 확인해주지만, 인감증명제도와는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인감증명의 경우 본인의 도장을 확인하는 기능 외에 본인확인, 본인의사확인 기능까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
 - 대법원 판례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가지고 발급했는가 여부에 따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²⁾

□ 인감증명제도의 주요 내용

-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에 해당(김건위·고경훈, 2022)
 -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이용되어 왔음
- 특히 인감전산망(2003.03.26.)이 구축됨에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의 편리성은 더욱 증진됨
-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김건위·고경훈, 2022)

□ 인감증명제도의 기능

-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됨(김건위·고경훈, 2022)

2) 인감증명은 본인 이외의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實印(인감증명을 받은 인장)을 소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타인이 본인의 인장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만약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본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김병두, 2004: 249).

- 먼저, 인감증명제도는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함. 즉, 인감 신고인이 신고한 도장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기능임
 - 과거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증명청이 인감도장과 신고인의 명의 적합성을 직접 조회하였음
 - 2003년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거래당사자나 수요기관 등이 인감도장과 본인 명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됨 (김건위 외, 2016: 39-40)
- 둘째, 인감증명제도는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기능을 지님
 - 거래행위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증명함
- 셋째, 거래행위가 행위자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즉,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행위가 본인 의사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함
 - 다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2018.7.1. 이후 피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적 이상으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피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인감 관련 법적 행위(인감증명서 발급, 계약 체결 등)가 가능함

□ 인감증명제도의 연혁 및 주요 변천

- 196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인감증명법은 총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총 3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변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음
 - 이를 통해 거주 범위 확대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성년후견에 관한 내용 반영 및 전자문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짐

【 표 2-1 】 인감증명법의 주요 연혁

구분	내용
제정 (1961.09.23.)	
1차 개정 (1962.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감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감의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인감의 사용을 방지(사망·실종신고, 개인요구 불응시) • 시장·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2차 개정 (197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대장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78.09.01. 시행, 1차 경신)
3차 개정 (1991.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으로 인감대장을 주민등록과 분리 (2차 경신, 현행 인감대장 도입)
6차 개정 (199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의 대리 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 전국 확대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인감 신고 가능
7차 개정 (1997.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감을 주민카드(주민등록증)에 수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수행 •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한 것으로 봄 ('98.04.01. 시행)
8차 개정 (1999.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대리 신고시 보증인을 2인 이상에서 1인으로 함
9차 개정 (1999.0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인감의 주민카드 수록 폐지
10차 개정 (2002.0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 규정
11차 개정 (2004.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구축·운영 •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현지어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날에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말소신고된 인감을 본인이 부활신청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3차 개정 (2007.0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 제2항 등의 본적지를 등록 기준으로 개정함
16차 개정 (2012.0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무인을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함(의원입법)
17차 개정 (2015.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감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18차 개정 (2016.0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반영 • 인감보호제도 및 열람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20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p.179.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 및 시행

- 인감증명제도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도 이루어짐
 - 인감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도입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며,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감증명의 대체 수단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가추세에 부합함
 - 현 인감증명제도에서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해당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비용)수단으로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가 단순한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대판 2006다63273) 현실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서까지 인감증명서 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2. 현행 인감증명제도 운영 현황

1) 인감등록 신고 현황

□ 연도별 인감등록 신고 현황

-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총 인감신고는 42,147,491건으로 나타남
 - 이 중 내국인은 41,483,140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고 있음
 - 내국인이 아닌 자는 총 664,351명이 인감을 등록하였으며, 이 중 재외국민이 270,73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감신고 증가율은 연평균 1.81%로 나타남
 - 내국인의 인감신고 증가율은 연평균 1.75%이며, 외국인의 인감신고 증가율은 연평균 6.62%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 연도별 인감신고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내국인	내국인 외			
			소 계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2025.7.	42,147,491	41,483,140	664,351	200,187	270,730	193,434
2024	41,875,623	41,225,663	649,960	191,722	270,596	187,642
2023	41,417,784	40,791,823	625,961	177,880	270,382	177,699
2022	40,969,857	40,365,848	604,009	166,256	270,065	167,688
2021	40,511,760	39,926,596	585,164	156,786	269,732	158,646
2020	39,936,705	39,371,280	565,425	147,271	269,448	148,706
2019	39,465,921	38,920,081	545,840	137,554	269,134	139,152
2018	38,963,531	38,438,390	525,141	126,939	268,649	129,553
2017	38,427,273	37,924,251	503,022	115,587	268,008	119,427
2016	37,869,367	37,388,524	480,843	104,358	267,105	109,380
2015	37,250,426	36,800,755	449,671	92,749	257,255	99,667
2014	36,618,810	36,190,674	428,136	82,159	255,584	90,393

연도	계	내국인	내국인 외			
			소 계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2013	36,005,148	35,606,729	398,419	72,120	246,303	79,996
2012	35,467,852	35,080,554	387,298	64,706	249,104	73,488
2011	34,870,151	34,511,035	359,116	54,592	238,658	65,866
2010	34,198,577	33,869,961	328,616	43,129	226,972	58,515
2009	33,573,656	33,274,724	298,932	34,503	212,872	51,557
2008	32,885,441	32,622,543	262,898	29,238	189,776	43,884
2007	31,189,498	30,947,496	242,002	19,056	182,495	40,451
2006	30,404,195	30,172,431	231,764	17,961	174,196	39,607
2005	30,137,480	29,947,082	190,398	17,573	146,158	26,667
2004	28,905,724	28,732,758	172,966	16,569	129,891	26,506

□ 연령대별 인감등록 신고 현황

-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감신고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70대 이상으로 총 11,437,443건으로 나타남
 -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감신고 건수 및 비중이 높으며, 30대 이상부터 인감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 | 연령대별 인감신고 현황(2025.7 기준)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총계	42,147,491	100.0
10대 이하	59,632	0.1
20대	1,118,145	2.7
30대	4,276,725	10.3
40대	7,179,977	17.3
50대	8,930,447	21.5
60대	8,480,771	20.4
70대 이상	11,437,443	27.6

□ 지역별 인감등록 신고 현황

- 전체 인감신고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서울로,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부산(6.7%), 경남(6.6%), 인천(5.8%), 경북(5.5%)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 | 지역별 인감신고 현황(2025.7 기준)

(단위: 건, %)

지 역	인감대장건수	신고비율	지 역	인감대장건수	신고비율
전 국	41,483,140	100.0	경 기	10,483,025	25.3
서 울	7,202,831	17.4	강 원	1,339,366	3.2
부 산	2,796,222	6.8	충 북	1,351,963	3.2
대 구	1,939,386	4.7	충 남	1,820,327	4.4
인 천	2,411,546	5.8	전 북	1,550,569	3.7
광 주	1,106,250	2.7	전 남	1,665,990	4.0
대 전	1,116,105	2.7	경 북	2,281,795	5.5
울 산	864,767	2.1	경 남	2,755,460	6.6

2) 인감 신규 신고 현황

□ 연령대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 신규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신고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2022년 21만 9천 건(47.9%), 2023년 21만 건(46.9%), 2024년 21만 1천 건(46.1%)으로 나타남
 - 이러한 비중의 감소 추세는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음
 - 다음으로 신규 신고가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2022년 13만 4천 건(29.4%), 2023년 14만 건(31.3%), 2024년 15만 2천 건(33.3%)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표 2-5 | 연령대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458,008	100.0	448,200	100.0	458,174	100.0
70대 이상	10,807	2.4	12,398	2.8	14,075	3.1
60대	9,021	2.0	9,906	2.2	10,703	2.3
50대	15,809	3.5	16,667	3.7	17,205	3.8
40대	49,690	10.8	51,553	11.5	55,893	12.2
30대	211,136	46.1	210,198	46.9	219,457	47.9
20대	152,604	33.3	140,407	31.3	134,808	29.4
10대 이하	8,941	2.0	7,071	1.6	6,033	1.3

□ 지역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 지역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가 129,1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2022년 대비 2024년 인감 신규 건수가 8.3%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 표 2-6 | 지역별 인감 신규 신고 현황

(단위: 건, %)

지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국	458,008	100.0	448,200	100.0	458,174	100.0
서울	101,137	22.1	99,644	22.2	101,240	22.1
부산	25,282	5.5	26,222	5.9	27,393	6.0
대구	18,666	4.1	18,996	4.2	17,887	3.9
인천	28,465	6.2	28,099	6.3	27,711	6.0

지 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광 주	11,724	2.6	13,003	2.9	12,446	2.7
대 전	13,871	3.0	12,387	2.8	13,577	3.0
울 산	8,924	1.9	8,565	1.9	7,921	1.7
세 종	3,191	0.7	2,942	0.7	3,262	0.7
경 기	129,181	28.2	124,146	27.7	126,068	27.5
강 원	11,641	2.5	11,627	2.6	12,013	2.6
충 북	13,800	3.0	13,995	3.1	14,542	3.2
충 남	18,815	4.1	17,792	4.0	18,227	4.0
전 북	13,354	2.9	12,525	2.8	13,270	2.9
전 남	13,064	2.9	12,514	2.8	13,756	3.0
경 북	18,898	4.1	18,133	4.0	19,194	4.2
경 남	22,380	4.9	22,247	5.0	24,161	5.3
제 주	5,615	1.2	5,363	1.2	5,506	1.2

3) 인감 변경 신고 현황

□ 연령대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

- 변경 신고 건수는 2022년 86만 4천 건, 2023년 82만 8천 건, 2024년 82만 1천 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변경 신고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2022년 20만 2천 건(23.4%), 2023년 19만 2천 건(23.3%), 2024년 19만 4천 건(23.7%)으로 나타남
 - 20대와 30대에서는 인감 변경 신고 추세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30대의 경우 2022년 12만 7천 건(14.8%)에서 2024년 6만 7천 건(8.2%)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30대는 2022년 10만 4천 건(12.1%)에서 2024년 13만 5천 건(16.5%)으로 30%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표 2-7] 연령대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말소, 부활 포함)

(단위: 건, %)

구분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821,654	100.0	828,240	100.0	864,627	100.0
70대 이상	95,181	11.6	95,237	11.5	94,992	11.0
60대	138,655	16.9	137,921	16.7	140,688	16.3
50대	194,849	23.7	192,582	23.3	202,510	23.4
40대	180,492	22.0	176,675	21.3	178,021	20.6
30대	135,227	16.5	118,332	14.3	104,358	12.1
20대	67,085	8.2	94,232	11.4	127,646	14.8
10대 이하	10,165	1.2	13,261	1.6	16,412	1.9

□ 지역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

- 인감 변경 신고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22년 22만 3천 건(25.9%), 2023년 22만 1천 건(26.7%), 2024년 22만 3천 건(27.2%)으로, 변경 신고 건수는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변경 신고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024년 5천1백 건(0.6%)의 신고가 이루어졌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는 변경신고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또한 변경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

| 표 2-8 | 지역별 인감 변경 신고 현황(말소, 부활 포함)

(단위: 건, %)

지 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 국	821,654	100.0	828,240	100.0	864,627	100.0
서 울	143,307	17.4	145,925	17.6	152,466	17.6
부 산	48,271	5.9	49,567	6.0	52,572	6.1
대 구	32,679	4.0	33,625	4.1	33,689	3.9
인 천	49,250	6.0	50,198	6.1	50,633	5.9
광 주	22,206	2.7	23,097	2.8	23,613	2.7
대 전	21,700	2.6	21,529	2.6	22,941	2.7
울 산	15,775	1.9	16,069	1.9	16,289	1.9
세 종	5,159	0.6	5,131	0.6	5,132	0.6
경 기	223,327	27.2	221,098	26.7	223,965	25.9
강 원	26,217	3.2	25,639	3.1	27,741	3.2
충 북	25,712	3.1	26,883	3.2	27,394	3.2
충 남	36,501	4.4	37,017	4.5	38,420	4.4
전 북	32,681	4.0	33,000	4.0	35,536	4.1
전 남	34,651	4.2	34,181	4.1	39,709	4.6
경 북	40,116	4.9	40,476	4.9	43,760	5.1
경 남	50,472	6.1	50,870	6.1	56,793	6.6
제 주	13,630	1.7	13,935	1.7	13,974	1.6

4)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 연령대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022년 1,798만 건, 2023년 1,735만 건, 2024년 1,740만 건으로 나타남
 - 인감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연령대는 50대로 2022년 495만 건(27.5%), 2023년 480만 건(27.7%), 2024년 480만 건(27.6%)으로,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발급 비중은 2023년 증가했다가 2024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인감증명서를 가장 적게 발급한 연령대는 10대로 2022년 2만 3천 건(0.1%), 2023년 2만 9백 건(0.1%), 2024년 2만 43건(0.1%)을 보이고 있으며, 발급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0대와 40대, 20대에서는 발급 건수 및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표 2-9 】 연령대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17,401,208	100.0	17,359,327	100.0	17,987,560	100.0
70대 이상	1,875,399	10.8	1,820,014	10.5	1,865,186	10.4
60대	3,641,343	20.9	3,571,684	20.6	3,642,977	20.3
50대	4,803,264	27.6	4,803,586	27.7	4,954,860	27.5
40대	3,973,092	22.8	4,043,839	23.3	4,241,539	23.6
30대	2,464,069	14.2	2,427,609	14.0	2,510,445	14.0
20대	623,998	3.6	671,611	3.9	749,527	4.2
10대 이하	20,043	0.1	20,984	0.1	23,026	0.1

□ 지역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 인감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2022년 463만 건(25.7%),

2023년 448만 건(25.8%), 2024년 454만 건(26.1%)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인감증명서를 가장 적게 발급받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발급건수는 2022년 12만 2천 건(0.7%), 2023년 11만 8천 건(0.7%), 2024년 12만 5천 건(0.7%)임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10 | 지역별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지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국	17,401,208	100.0	17,359,327	100.0	17,987,560	100.0
서울	3,066,313	17.6	3,054,026	17.6	3,146,807	17.5
부산	1,027,060	5.9	1,046,968	6.0	1,076,513	6.0
대구	732,595	4.2	742,771	4.3	751,371	4.2
인천	946,412	5.4	949,276	5.5	968,867	5.4
광주	524,069	3.0	533,556	3.1	548,907	3.1
대전	472,623	2.7	459,718	2.6	480,112	2.7
울산	357,993	2.1	365,558	2.1	359,153	2.0
세종	125,792	0.7	118,533	0.7	122,948	0.7
경기	4,549,114	26.1	4,485,709	25.8	4,631,193	25.7
강원	547,323	3.1	541,379	3.1	578,941	3.2
충북	587,248	3.4	586,206	3.4	611,994	3.4
충남	831,944	4.8	830,734	4.8	846,413	4.7
전북	670,584	3.9	671,218	3.9	708,086	3.9
전남	772,857	4.4	792,282	4.6	838,428	4.7
경북	893,019	5.1	883,460	5.1	934,144	5.2
경남	1,047,126	6.0	1,046,811	6.0	1,127,405	6.3
제주	249,136	1.4	251,122	1.4	256,278	1.4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 연령대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2022년 121만 건, 2023년 122만 건, 2024년 136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장 많이 발급한 연령대는 30대로 2022년 29만 건(24.6%), 2023년 30만 건(25.3%), 2024년 35만 건(26.4%)으로, 발급 건수 및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50대와 40대에서도 발급 건수 및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70대 이상과 60대에서는 발급 건수는 모두 증가하나, 비중은 2023년 증가 후 2024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장 적게 발급한 연령대는 10대이며, 2022년 1만 1천 건(0.9%), 2023년 6천3백 건(0.5%), 2024년 6천1백 건(0.4%)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대의 경우, 발급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발급 건수는 2023년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증가함

[표 2-11 | 연령대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총계	1,363,895	100.0	1,222,014	100.0	1,219,471	100.0
70대 이상	82,309	6.0	77,018	6.3	68,311	5.6
60대	181,800	13.3	166,261	13.6	155,488	12.8
50대	257,695	18.9	227,669	18.6	222,816	18.3
40대	285,926	21.0	251,496	20.6	247,568	20.3
30대	359,702	26.4	308,572	25.3	299,603	24.6
20대	190,338	14.0	184,604	15.1	214,222	17.6
10대 이하	6,125	0.4	6,394	0.5	11,463	0.9

□ 지역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지역은 경기도로 2022년 28만 8천 건(23.6%), 2023년 28만 9천 건(23.7%), 2024년 33만 8천 건(24.8%)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장 적게 발급받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022년 8천3백 건(0.7%)에서 2024년 9천3백 건(0.7%)까지 발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반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변함이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에, 전라남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2-12】 지역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건, %)

지 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 국	1,363,895	100.0	1,222,014	100.0	1,219,471	100.0
서 울	219,243	16.1	191,594	15.7	190,583	15.6
부 산	68,018	5.0	58,685	4.8	58,540	4.8
대 구	44,618	3.3	38,038	3.1	38,003	3.1
인 천	70,680	5.2	60,069	4.9	59,796	4.9
광 주	43,894	3.2	42,295	3.5	42,228	3.5

지 역	2024		2023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 전	36,952	2.7	32,583	2.7	32,497	2.7
울 산	24,541	1.8	21,846	1.8	21,768	1.8
세 종	9,342	0.7	8,386	0.7	8,355	0.7
경 기	338,752	24.8	289,134	23.7	288,020	23.6
강 원	48,233	3.5	48,030	3.9	48,787	4.0
충 북	50,034	3.7	46,428	3.8	46,353	3.8
충 남	78,885	5.8	69,350	5.7	69,272	5.7
전 북	67,790	5.0	66,698	5.5	66,654	5.5
전 남	84,236	6.2	86,957	7.1	86,899	7.1
경 북	76,190	5.6	66,954	5.5	66,901	5.5
경 남	80,894	5.9	75,923	6.2	75,756	6.2
제 주	21,593	1.6	19,044	1.6	19,059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인감증명제도에 관한 논의

□ 인감증명제도의 폐지 및 개선의 필요성

- 김병두(2006)의 연구에서는 인감증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감증명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인감의 간접증명방식과 대리발급 허용, 허술한 관리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본인 여부 입증의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인감사고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대안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전자서명, 공증, 거래인감등록, 서명제도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 수단보다 서로 유기전적·병행적 입법평가를 통해 인감증명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논의함
- 문흥안(2020)은 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에 있어서 인감증명서가 용도 불명확, 위·변조 및 허위 사용 가능성 등으로 진정한 본인의사 확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음
- 한정미(2020)의 연구에서는 인감의 직접 제출과 증명 절차가 국내 창업환경의 절차·시간·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인감증명제도의 변화

- 김건위 외(2016)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에 초점을 맞춰 인감증명제도 변화의 한계와 제3의 제도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긍정적 환류로는 인감증명서 발급 요건 완화, 대리인 발급 허용,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인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산발급시스템 구축, 담당공무원의

책임 경감을 위해 종전의 직접증명방식이 간접증명방식으로 개편되었음을 제시함

- 부정적 환류로는 인감증명과 관련된 범죄 발생, 인감요구사무 감축, 인감 증명제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음

2. 인감증명제도의 대안 및 대체가능성에 관한 논의

□ 인감증명제도의 대안 및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용 강조

- 한정미(2020)의 연구에서는 인감증명제도와 관련하여 창업(특히 법인설립)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갖는 실효성, 국제적 기준과의 불일치, 그리고 절차적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법인설립등기 시 인감신고·제출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서명이나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음
- 문홍안(2020)은 인감증명서가 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의 전통적인 수단이나, 실효성 및 신뢰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활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함
- 박광동(2024)의 연구에서는 인감증명제도의 국민적 불편과 시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확대와 전자인감 증명서 제도 신설 등이 필요함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 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 활용 근거 마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감 관련 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등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본인서명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 박광동(2011)은 인감증명제도의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타당성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방향성 및 서식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존폐 논의 속에서 그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며, 이는 공증제도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인감증명제도만큼의 국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전자위임장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서명문화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거래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인장날인을 병행하여 국민과 기관의 활용 편의를 높이고, 제도 도입 시 법률 명칭은 「본인서명 등 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방향성이 제시됨
- 박광동(2012)의 연구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본인확인 기능과 본인의사 추정 및 국민적 친숙성 관점에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국민 이용 편의성 확보가 필요함
 - 법제 측면에서 총칙 조항의 구체화와 위임범위 명확화가 요구되며, 운영 측면에서는 발급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 측면에서는 전자서명의 가시성, 관인날인의 문제, 이용자 사전 등록절차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 김건위·고경훈(2022)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감증명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기에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 2021년 기준, 인감 신고자는 약 4,051만 명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연간 3,500만 통 이상 발급되고 있는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는 5.7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인감 및 서명확인 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최소화, 디지털 비대면 발급 확대 등 인감증명제도의 개선과 무인발급기 설치, 제도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제도 개선을 위해 초기에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대체수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며, 중기에는 다양한 디지털 본인 확인 수단 개발 및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인감제도 폐지를 목표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3. 디지털 측면에서의 인감증명제도에 관한 논의

- 김진일·허준(2015)의 연구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인영과 홀로그램이 디지털 카메라나 칼라 스캐너로 쉽게 분리·추출되어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홀로그램을 삭제한 위조인영파일 제작 및 위조인장 조각이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현재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디지털 촬영 및 컬러 스캔 환경에서도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의 기능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함
- 정창훈 외(2016)는 HMAC(해시 기반 메시지 인증 코드)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메시지의 인증과 사용자 인증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인감 시스템을 제안하였음
 - 디지털 인감은 종이에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스캔된 데이터와 HMAC으로 계산된 태그를 출력함
 - 온라인 banking에서 디지털 인감은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보안 장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차용증에서도 일반 인감보다 위조 방지 효과가 뛰어남

- 더하여, 정창훈 외(2018)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인감을 통해 안전한 비밀번호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음
 - 디지털 인감을 활용해 사용자가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일회용 비밀번호 (HOTP)를 생성해 인증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함
 - 이는 비밀번호 기억이나 관리 없이도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비밀키 저장 여부에 따라 사용성 또는 보안성을 강조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종 해킹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인증수단임을 제시함

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대부분의 연구가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함
 - 간접증명 방식, 대리발급 허용, 서류 중심 절차 등으로 인해 본인확인 신뢰도가 낮고 국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인감사고 및 재산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법의 근본적 개편을 제안함
 -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기술적 수단(공증,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디지털 인감 등)이 제시됨

【 표 2-13 】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분	내용
김병두 (2006)	인감증명의 간접증명방식, 대리발급, 허술한 관리 등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지적하였으며, 공증제도, 전자서명, 공증, 거래인감등록, 서명제도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제안하였고, 단일 수단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식이 효과적임을 설명하였음
박광동 (2010)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공증과의 기능 중복 문제 해결 및 전자위임장 등 제도 정비와 인장날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박광동 (2011)	인감증명법은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 등 여러 한계로 인해 개선 또는 대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요구됨

구분	내용
박광동 (20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보완, 국민 편의성 확보, 전자서명의 가시화 및 책임 명확화 등 운영상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김진일·허준 (2015)	인감증명서에 탑재된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기능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고,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인감인영을 추출·가공하여 위조인장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인감증명서의 보안성에 심각한 취약점이 있음을 지적함
김건위 외 (2016)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성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긍정적 환류와 부정적 환류를 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변화의 한계와 제3의 제도 형성에 대해 논하였음
정창훈 외 (2016)	바코드와 HMAC 태그를 이용한 디지털 인감을 제안하고, 이를 온라인 banking 및 오프라인 차용증 등에서 본인확인 및 메시지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존 보안 수단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함
정창훈 외 (2018)	바코드와 HOTP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 인감을 통해 일회용 비밀번호(HOTP Tag)를 생성하여,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하며, 이는 사용성과 보안성(MitM, MitB 공격 방어 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설명함
문흥안 (2020)	인감에 의존한 기존 가족관계등록 신고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감 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 및 신고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한정미 (2020)	창업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비효율적이고 국제 기준과 불일치하므로, 서명·전자서명 등 대체 수단을 통한 절차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김건위·고경훈 (2022)	인감제도의 낮은 활용성과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단계적 정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감제도 폐지를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박광동 (2024)	인감증명제도의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행정에 부합하기 위해, 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재외국민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도입,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전자인감증명서제도 신설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선행연구의 한계

- 선행연구들은 인감증명제도 및 관련 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인감제도를 중심으로 한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개선 방안의 행정현장 적용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예측은 미흡함
 - 제도 개선 논의가 법률·제도적 측면에 집중되어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함

- 법령·절차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어 수기대장, 주소지 제한, 이송 등 현장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
 - 제도 수요자(민원인·공무원) 관점에서의 체감도 및 정책 개선시의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
- 제도 개선이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에 대한 내용 미흡
- 많은 기존 연구는 '폐지 vs 존치'의 이분법적 관점에 머물러,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진적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인감증명제도의 운영상의 제약요인을 고려한 정책효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마련이 필요
- 그간 제도적 논의에서 간과된 운영상의 제약요인(수기대장, 이송, 관할 제도)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를 모두 고려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 국민·현장 공무원 모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업무 효율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인감·무인발급 등 대체수단의 실제 활용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제3절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도출

1. 현행 인감증명제도 이슈 검토

□ 인감증명제도의 관행적 활용 문제

-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인감증명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지적되고 있음
 -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의 활용 및 발급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제약된다는 것임
 - 2025년 7월 기준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6.9%에 그치고 있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연령대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인감증명서 이용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됨
 - 인감증명 수요의 80% 이상을 4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수용률이 낮음

| 표 2-14 | 연령대별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이용현황

(단위: 천 통)

구분	2025.7		2024		2023		2022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총계	소계	18,840 (100%)	31,334 (100%)	31,716 (100%)	32,478 (100%)				
	인감	17,539	93.1%	29,434	93.9%	29,836	94.1%	30,749	94.7%
	서명	1,301	6.9%	1,901	6.1%	1,880	5.9%	1,729	5.3%

구분		2025.7		2024		2023		2022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통수	발급률
70대 이상	소계	1,888 (10.0%)		3,008 (9.6%)		2,911 (9.2%)		2,968 (9.1%)	
	인감	1,807	95.7%	2,910	96.7%	2,817	96.8%	2,872	96.8%
	서명	81	4.3%	98	3.3%	94	3.2%	96	3.2%
60대	소계	3,703 (19.7%)		6,099 (19.5%)		5,956 (18.8%)		6,066 (18.7%)	
	인감	3,529	95.3%	5,872	96.3%	5,751	96.6%	5,854	96.5%
	서명	174	4.7%	227	3.7%	205	3.4%	212	3.5%
50대	소계	5,137 (27.3%)		8,539 (27.3%)		8,580 (27.1%)		8,763 (27.0%)	
	인감	4,883	95.1%	8,191	95.9%	8,256	96.2%	8,458	96.5%
	서명	254	4.9%	348	4.1%	324	3.8%	306	3.5%
40대	소계	4,356 (23.1%)		7,362 (23.5%)		7,653 (24.1%)		7,902 (24.3%)	
	인감	4,062	93.3%	6,954	94.5%	7,234	94.5%	7,546	95.5%
	서명	294	6.7%	408	5.5%	419	5.5%	356	4.5%
30대	소계	2,863 (15.2%)		4,820 (15.4%)		4,925 (15.5%)		4,990 (15.4%)	
	인감	2,536	88.6%	4,290	89.0%	4,420	89.7%	4,542	91.0%
	서명	327	11.4%	530	11.0%	505	10.3%	448	9.0%
20대	소계	863 (4.6%)		1,464 (4.7%)		1,647 (5.2%)		1,741 (5.4%)	
	인감	697	80.8%	1,182	80.8%	1,322	80.3%	1,437	82.6%
	서명	165	19.2%	282	19.2%	325	19.7%	304	17.4%
10대 이하	소계	30 (0.2%)		42 (0.1%)		44 (0.1%)		48 (0.1%)	
	인감	25	81.3%	34	80.9%	36	81.8%	40	84.0%
	서명	6	18.7%	8	19.1%	8	18.2%	7	16.0%

○ 이러한 결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나 인감증명서의 관행적 사용 문제도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지닌 절차적 특성으로 인해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존재하기 때문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인정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본인 직접 발급이 필요
- 반면 인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발급가능하며, 본인 발급이 원칙이긴 하나 대리발급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인감증명제도상의 규제 및 부담

- 인감증명제도의 경우 60년대부터 제·개정되어 온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미 확고한 제도로 자리잡았음에도, 관련 처리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부분이 존재함
- 인감증명서 발급과 달리 최초 인감 신고 및 변경 처리에 있어서는 주소지 요건의 제약이 존재함
 - 현행 인감증명법에서는 인감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처리를 위해 반드시 신고관할 증명청, 즉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표 2-15 | 인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처리 절차

신 고	관 리	발 급	대장이승
신고관할(증명청)	변경 등	발급기관	증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고(원칙) ○ 서면신고(예외). ※ 시행령에 규정된 신분증(6종) ※ 신분별 인감대장 구분 작성(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도장 변경(증명청) ○ 본인의 발급금지의 신청 및 해지 - 전국 어디서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종류 -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 특이사항 - 매도용은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의 주소(거소, 체류지) 변경 시 - 수기 인감대장 이송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4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대장 관리 절차는 수기대장을 작성 후 → 이를 전산입력 → 이후 수기대장을 원본으로 보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중 부담이 존재
 - 수기 인감대장에서는 인감증명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과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흑색필기구로 적고, 주소이동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인감도장 등의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함

| 그림 2-1 | 수기 인감대장 작성 예시

주민등록번호		3 9 0 0 0 0 -		1 4 5 0 0 0 0		인 감 대 장	
성 명 (한 자)	순서	주 소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인감		
					전	입	
이 동 사 항	1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하리 257번지			1999. 3. 12 (전입)	(인)	
	2	창원군조례에 의거 리동명칭 변경 (2000. 10. 20)			· ·		
	3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하리 257번지			2000. 10. 20 (명칭변경)	(인)	
	4	법률 제4678호로 시설택지 (2001. 1. 1)			· ·		
	5	경남 창원시 명서동 257번지 4/5			2001. 1. 1 (행정구역변경)	(인)	
	6	법률 제0000호로 구설택지 (2010. 7. 1)			· ·		
	7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257번지			2010. 7. 1 (행정구역변경)	(인)	

《 서면신고시 인감대장 작성예시 》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지

인 감

직 인

신고일을 기재하고,
(본인, 서면)중 해당
되지 않는 부분을
황선으로 삭제

※ 인감지는 반드시 흰 종이를 사용함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4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수기 인감대장 작성 및 변경에 따라 인감 전산시스템에도 동일한 내용을 입력 및 기록

| 그림 2-2 | 인감 전산업무 관리화면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2024). 2024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는 인감신고자가 주소 이전, 등록기준지 또는 체류지 변경 등을 할 경우 구 증명청은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행정안전부, 2024: 265)
 - 구 증명청에 인감신고자의 전출 사실이 통보·확인되면 거주자인지 말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의 인감대장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민원직인이 아닌 “관인”)을 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이송 통보서를 출력하여 인감대장에 동봉하여 3일 이내에 신거주지 증명청에 이송

- 구 증명청은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하고 신 증명청은 구 증명청의 관리사항을 참조하여 인감대장 수령 등 인감대장 현황을 관리
- 전입지 증명청은 주민등록 재등록 사항 및 전입사항을 작성하고 직인 날인

【 표 2-16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이송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주요 한계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현행 인감증명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신고·변경 절차의 주소지 제한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인감대장 관리의 전산화 미비로 인한 행정부담 및 비용 발생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됨

- (접근성 부족)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나,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기관(증명청)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오늘날과 같이 인구감소 및 지역 이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실제 주소지와 생활권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 절차와 방식을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크게 초래될 수 있음
 - (행정부담 및 비용 발생) 현재 인감증명제도에서 수기 인감대장과 인감 전산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있어 관리 부담 및 업무 비효율이 존재함
- 이러한 제약 및 부담으로 인해 최근 인감 신고 및 변경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감대장 관리방식의 전산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짐
- 2024년~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는 총 27건으로, 인감신고 및 변경 절차에 있어 주소지 규제 완화 요구가 21건, 인감대장의 전산화 요구가 6건으로 나타남

【표 2-17】 인감증명제도 관련 제도개선 요구 목록

구분	내용	출처
'25년 상반기	인감 등록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주소지 규제 완화	규제개혁신문고
	인감증명법 인감신고 관련 개정	규제개혁신문고
	인감신고 거주지 제한 규제 완화	규제개혁신문고
	인감등록 및 인장변경의 편의성을 위한 전국시행 전산화	민원제도 제안
'24년 하반기	인감 수기대장 폐지 제안	국민제안
	종이 인감대장 전자화	국민제안
	인감 등록(신고)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개선	지자체 규제건의
	인감변경신고 가능기관 전국 확대	지자체 규제건의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 신고와 변경을 할 수 있게	황당규제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황당규제
	수기 인감대장의 전산화 추진	규제개혁신문고
	인감대장 등록지역 제한에 따른 규제 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등록(신고)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인감변경신고 가능기관 전국 확대	규제개혁신문고	

구분	내용	출처
'24년 상반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인감 최초등록	지자체 규제건의
	인감증명서 신고 및 변경의 편의성 개선	행정제도 개선과제
	종이 인감대장의 전산화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변경신고 절차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변경신고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인영 변경 전국 어디서나 가능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변경 시 변경신고 관할 요건 완화를 건의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인감신고 방법 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인감대장의 전산화	규제개혁신문고
	인감증명을 위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완화	규제개혁신문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인감 최초등록	규제개혁신문고
	인감 변경 거주지 이외 변경	규제개혁신문고

- 주소지 요건의 경직성과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요인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 실태 및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
 - 제도 운영상의 주요 쟁점과 실무적 과제를 파악하고자 함
 - 인감증명제도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함임

2. 주요 쟁점 파악 및 도출을 위한 면접조사

□ 면접조사 개요

- (목적)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집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조사 및 분석에 앞서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주요 쟁점 진단 및 도출을

위해 인감증명 업무에 있어 현장 행정의 실태와 업무 부담, 절차적 문제, 민원인의 불편 체감도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감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실무적·현실적 고려사항과 정책 실행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함

○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조사지 기반 심층면접을 실시

| 표 2-18 |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년 9월 22일
조사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2인
조사방법	반구조화(semi-structured) 심층면접 방식
조사형태	현장 방문 대면 인터뷰
조사내용	인감업무 처리절차, 수기대장 관리 실태, 주소지 요건 완화 인식, 전산화 및 전자인감 도입에 대한 의견, 민원 유형 및 업무 부담, 개선 필요사항 등

□ 면접조사 주요 구성

○ 조사는 ‘현행 인감업무 운영구조’, ‘민원 수요 및 행정부담’, ‘주소지 요건 완화의 수용 가능성 및 향후 영향’, ‘수기 인감대장 관리 현황 및 쟁점’,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

- (현행 인감업무 운영구조) 인감 신고 및 변경의 주요 내용, 인감증명 관련 업무 절차 및 분장 등
- (민원 수요 및 행정부담) 민원인 특성 및 행태, 인감 신고 및 변경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인감 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량 수준 등
- (주소지 요건 완화의 수용 가능성 및 향후 영향) 현행 주소지 제한의 불편성 수준, 주소지 요건 완화의 장단점, 주소지 요건 완화 이후의 업무량 변화 가능성 및 행정처리상 문제발생 가능성 등

- (수기 인감대장 관리 현황 및 쟁점) 인감대장 관리 및 이송 절차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인감증명제도의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전산화 시 기대되는 효과 및 예상 문제점, 전산화 추진시 필요한 정책 지원 등
- (제도 개선 방향) 인감제도 개선시의 방향 및 대안의 우선순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간의 대체가능성 및 현장에서의 수용성 관련 인식, 장기적 차원에서의 관련 제도의 운영방향 등

□ 면접조사 주요 결과

- (민원 처리 및 행정부담 관련 인식) 인감업무는 절대 건수는 많지 않으나, 건당 소요시간과 민원 복잡성이 높아 '업무 밀도'가 큰 편임
 - 현재는 통합민원 창구에서 인감 및 관련 민원을 함께 처리하므로, 인감 업무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소지 요건의 제약, 대리발급 시 서류구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인감 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재방문율이 다른 민원에 비해 높은 편임(주소지 요건 미비로 인한 타 주민센터 방문 등)
- (주소지 요건 완화의 예상 효과) 주소지 요건 완화시 민원인 편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현장에서의 수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수기 인감대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주소지 요건을 완화할 경우, 주소지 관할기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받은 행정기관이 수기대장 작성 후 다시 등기로 송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행정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거나 관리상의 문제·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유입 및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불만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주소지 요건의 완화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소지 요건 완화의 단계적 적용 이후 확대가 필요하며, 인감 변경 업무에 있어서는 수기 인감대장이 존치되는 한 주소지 요건의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쟁점) 현행 인감대장 관리에 있어 구조적 비효율이 존재함

- 인감대장은 여전히 ‘수기대장이 원본, 전산은 보조’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행정업무를 넘어 ‘이송·보관·대장관리’라는 별도의 물리적 업무를 발생시켜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킴
 - 인감의 신규·변경 절차는 수기대장 → 전산입력 → 스캔업로드 순으로 진행되며 건당 소요시간이 10~15분 수준임. 인감 업무는 다른 민원업무(통합민원)과 함께 처리하기에 이로 인한 민원 대기시간이 비교적 긴 편임
 - 타 지역으로 주민 전출 시 3일 내에 해당 읍면동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등기로 송부해야 하며,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 등)에서는 해당 업무를 일과시간 이후 및 주말에 처리할 정도로 부담이 있음
- (전산화 가능성 및 우려사항) 장기적 차원에서 전산화는 반드시 필요함
- 수기대장이 유지되는 주된 이유는 ‘법적 원본’으로서의 지위와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임
 - 전면 전산화에 따른 수기 인감대장 폐지시 주소지 요건 완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재 주소지 요건 완화의 가장 큰 장벽이 수기 대장 이송 및 관리이므로, 수기 인감대장이 폐지될 경우 국민 편의 및 접근성 향상과 함께 인감증명 업무 담당자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해킹·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시스템 교체 예산 부족 등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나 위변조 방지기술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 (제도 개선 방향) 인감증명에 대한 수요처 관행과 제도 개선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향이 고안되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도적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금융기관·법원 등은 여전히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상황임
 - 실제 인감증명서 발급의 70~80%가 금융·대출 관련 서류이며, 제도 개선이 민원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행정 절차상의 개편만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행정·기술·수요처의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3.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쟁점 및 고려사항

□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현행 인감업무의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음
 - 수기대장을 원본으로 하는 이중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향후 인감제도의 개선은 ‘수기대장의 법적 지위 조정 및 전산화’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적·법적·운영상의 통합 접근
 - 전산화(기술)와 법령개정(제도), 민원창구운영(행정), 인식개선(이용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음
 - 기술적·행정적 개선 외에 금융·법원 등 주요 수요처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주소지 요건 완화 및 전산화 시의 기대효과 및 제약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소지 요건 완화와 인감대장 전산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행정비용 절감·업무처리 속도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의 행정 업무 과부하·인감대장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부담, 그리고 기술적 운영·구현의 문제, 보안상의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 또한 내포함
- 인감제도의 개선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른 개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주소지 요건 완화를 위한 시범운영 전략 등의 고려와 함께 개선 전략 실행 단계에서의 행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인구 및 업무밀집 지역에 대한 한시적 인력지원, 전담창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 수기 인감대장의 100% 디지털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전국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제 3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설계
- 제2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 제3절 인감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 제4절 심층 면접조사 결과
- 제5절 조사결과 종합

인감증명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방식

- 본 연구에서는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실태와 인식, 그리고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인감이용행태 및 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일반국민과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진행함
- 행정안전부의 협조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는 일반국민 및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
 - 일반국민 대상 조사기간: 11월 3주차 ~ 12월 2주차까지 약 4주간 실시
 -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기간: 11월 3주차 ~ 12월 1주차까지 약 3주간 실시

□ 설문조사 항목 및 주요 내용

-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① 인감증명제도 이용 및 경험 실태, ② 인감증명제도 이용의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수요,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관련 인식, 그리고 ④ 일반사항임
- 업무 담당자(공무원) 조사 또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① 인감업무 처리 현황, ② 인감증명제도 운영 실태, ③ 인감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및 방향, 그리고 ④ 일반사항임

| 표 3-1 | 일반국민 인식조사 내용 및 문항

구분	세부 조사 항목
I. 인감증명제도 이용 및 경험 관련	인감(도장) 신고·발급 경험 여부
	인감증명서 발급 목적
	인감 변경 신고 경험 및 비용 인식
	인감 신고 이유
	주소지와 생활권 불일치 여부
II. 인감 이용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수요	인감 발급시 불편 경험
	인감 발급시 불편 내용 및 유형
	주소지 요건 완화시 기대효과 및 인식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 의견
	인감증명제도 개선시 예상 만족도 변화
기타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II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관련 인식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및 미이용 사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지도 및 이용경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방식 선호도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뢰도 비교
IV. 일반사항	거주지역
	연령
	성별
	직업

| 표 3-2 | 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내용 및 문항

구분	세부 조사 항목
I. 인감업무 처리 현황	인감업무 구성 비율(발급, 신고, 대장관리, 본인서명 등)
	일일 처리건수 및 건당 소요시간
	업무량 인식 수준
	인감업무 처리시 주요 애로사항
	수기 인감대장 관리 경험
	인감대장 이송 건수

구분	세부 조사 항목
Ⅱ. 인감증명제도 운영 실태	주소지 요건 불일치로 인한 반려 사례 빈도
	민원 대기시간 평균
	인감 관련 민원 접수 빈도 및 유형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수령 및 사용자 확대 의견
Ⅲ.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및 방향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 및 한계
	제도 개선 필요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 방안
	인감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수준
	주소지 요건 완화 방향에 대한 인식
	주소지 요건 완화 시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전산화(수기대장 폐지)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전산화 시 업무량 변화 및 요구사항
Ⅳ. 일반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제도 개선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변화 인식
	성별
	근무 지역
	직급
	근무경력

2. 심층 면접조사 개요

□ 심층 면접조사 방식

-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및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 또한 실시함
 - 심층 면접조사는 실제 인감 활용의 효과성 및 개선의 필요성, 제도 개편시 고려사항 및 시사점, 나아가 현실적 측면에서 타당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짐
 - 심층 면접조사는 인감의 주요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및 법원등기소 담당자, 그리고 인감대장 전산화 구축·운영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 표 3-3 | 심층 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2월 1일
조사대상	금융기관 관계자 1인, 법원행정처 등기관 2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실무 담당자 3인
조사방법	반구조화(semi-structured) 심층면접 방식
조사형태	개별 대면 인터뷰
조사내용	인감의 실무적 활용 행태, 전산화 및 전자인감 도입에 대한 의견,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및 부담, 개선 필요성, 제도 개편 방향 및 전략 등

□ 면접조사 주요 구성

- 금융기관 관계자 대상 면접조사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무적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향후 정책 개편에 있어 고려사항과 수요기관의 예상 대응방향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형성 배경) 주택담보대출 등 등기 연계 업무에서 인감증명서 중심 관행의 형성 배경 및 원인
 - (실무 구조) 대량·표준화된 대출 프로세스와 제도 설계 간의 적합성
 - (문제·쟁점) 서류 기재상의 오류·보정 발생 시 민원·업무 부담 구조
 - (정책 인식) 인감과 본인서명에 대한 인식
 - (전산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전자증명서 활용 가능성 및 우려사항
 - (개선 방향) 본인서명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조건
- 법원행정처(등기소) 관계자 대상 면접조사는 부동산 등기 처리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갖는 법적·실무적 지위, 등기관의 책임 구조와 위·변조 판단 기준, 전자적 제출·연계 제도의 실제 활용 수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등기 절차) 인감의 진정성 확인 구조와 등기 과정에서의 인감의 역할·기능
 - (책임 구조) 인감의 위·변조 판단 기준과 등기관의 책임 인식
 - (전자 연계)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간 전자 인감증명서 연계 제도의 실효성

- (업무 처리) 등기 신청 유형별 인감의 필요성, 인감과 본인서명의 법적 효력 및 실무상 인식·선호
 - (정책 인식) 인감 제도의 전자화·단계적 축소에 대한 견해
 - 아울러 인감 전산화 및 제도 개선이 등기 실무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양식·실무 지침 개선 방향, 사법 실무 관점에서 정책 개선 시 수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음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실무 관계자 대상 면접조사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추진 방식, 대상·범위 설정, 비용 구조 및 단계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함
- (선행 사례) 주민등록표 원장 DB 구축 경험에 기반한 수기 인감대장 전자화의 가능성 및 필요성
 - (대상 범위) 인감대장 전산화 범위에 따른 쟁점
 - (비용 구조) 전산화 및 인력 투입에 따른 사업비 산정 구조
 - (추진 전략) 기록 처리 방식 및 사업 설계의 주요 고려사항

제2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1. 일반사항

□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573명, 31.54%)이 남성(332명, 18.27%)보다 많게 나타남³⁾

| 표 3-4 | 응답자의 성별: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남성	332	18.27	여성	573	31.54	무응답	912	50.19

□ 연령

- 연령별로는 30~39세(316명, 17.39%)가 가장 많고, 40~49세(241명, 13.26%), 50~59세(182명, 10.02%), 20~29세(136명, 7.48%) 순으로 나타남
- 반면 60세 이상(41명, 2.26%)과 20세 미만(3명, 0.17%)은 적은 수준임

| 표 3-5 | 응답자의 연령: 일반국민

구분	응답자(n)	응답자(%)
20세 미만	3	0.17
20~29세	136	7.48
30~39세	316	17.39
40~49세	241	13.26
50~59세	182	10.02
60~69세	35	1.93
70세 이상	6	0.33
응답하지 않음	898	49.42
합계	1,817	100.0

3) 인감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성별, 연령 등 일반사항에 대한 응답 없이 조사가 종료되도록 설계함에 따라, 일반사항 항목에 대한 무응답이 존재함

□ 거주지역

-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경기(178명, 9.80%), 전남(100명, 5.50%), 서울(92명, 5.06%), 강원(80명, 4.40%), 경남(79명, 4.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세종(3명, 0.17%), 제주(6명, 0.33%), 충북(18명, 0.99%)은 응답 비중이 낮음

| 표 3-6 | 거주지역: 일반국민

지역	응답자(n)	응답자(%)	지역	응답자(n)	응답자(%)
광역(시)			광역(도)		
서울	92	5.06	경기	178	9.80
부산	73	4.02	강원	80	4.40
대구	39	2.15	충북	18	0.99
인천	44	2.42	충남	46	2.53
광주	33	1.82	전북	23	1.27
대전	22	1.21	전남	100	5.50
울산	24	1.32	경북	58	3.19
세종	3	0.17	경남	79	4.35
			제주	6	0.33
소계	330	18.16	소계	588	32.36
기타	899	49.48	전체	1,817	100

주: 기타의 경우, 무응답 등임

□ 직업

-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588명, 32.36%), 전문직(69명, 3.80%), 서비스직(62명, 3.41%), 주부(36명, 1.98%), 관리직(32명, 1.7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판매·영업직(5명, 0.28%), 생산직(9명, 0.50%), 단순노무직(9명, 0.50%)은 낮은 비중을 보임

| 표 3-7 | 직업: 일반국민

구분	응답자(n)	응답자(%)	구분	응답자(n)	응답자(%)
① 관리직	32	1.76	⑧ 농림/어업	20	1.10
② 전문직	69	3.80	⑨ 자영업	29	1.60
③ 사무직	588	32.36	⑩ 대학(원)생	9	0.50
④ 서비스직	62	3.41	⑪ 주부	36	1.98
⑤ 판매/영업직	5	0.28	⑫ 무직	17	0.94
⑥ 생산직	9	0.50	⑬ 기타	932	51.29
⑦ 단순노무직	9	0.50	합계	1,817	100

주: 기타의 경우, 무응답 등임

2. 인감증명서 이용

□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

- 응답자의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을 살펴보면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670명, 36.87%)보다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1,147명, 63.1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8 |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이용한 적이 있다	670	36.87	이용한 적이 없다	1,147	63.13

□ 인감증명서 용도

- 인감증명서 주요 용도는 은행 거래(295명, 28.18%)와 부동산 거래(263명, 25.12%)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거래(160명, 15.28%), 상속 절차 처리(70명, 6.69%),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68명, 6.49%)임
- 인·허가 관련(22명, 2.10%) 및 보증(12명, 1.15%)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임

- 기타(42명, 4.01%)에는 확인용, 개인 회생, 보험 등이 제시됨

| 표 3-9 | 인감증명서 용도: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① 부동산 거래	263	25.12	⑦ 인·허가 관련	22	2.10
② 자동차 거래	160	15.28	⑧ 계약·사업 신청	41	3.92
③ 은행 거래(대출 등)	295	28.18	⑨ 보상금 청구·수령	33	3.15
④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41	3.92	⑩ 보증(신용·인우·연대·재정)	12	1.15
⑤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	68	6.49	⑪ 기타	42	4.01
⑥ 상속 절차 처리	70	6.69	합계	1,047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인감 신고 이유

- 인감 신고 이유로는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보호’(362명, 54.11%)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종 행정상 필요’(286명, 42.75%)가 나타남
- ‘독립된 세대를 구성’(5명, 0.75%)과 ‘부모 또는 지인의 필요성 언급’(10명, 1.49%)은 매우 낮음
 - 기타(6명, 0.90%)는 ‘모르겠다’, ‘남들이 있으니까’ 등의 응답이 제시됨

| 표 3-10 | 인감 신고 이유: 일반국민

구분	n	%
①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보호	362	54.11
② 각종 행정상 필요(은행대출, 행정서류제출 등)	286	42.75
③ 독립된 세대를 구성	5	0.75
④ 부모 또는 지인의 필요성 언급	10	1.49
⑤ 기타	6	0.90
합계	669	100

주: 1명 무응답임

□ 분실·훼손 등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 경험

-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203명, 30.30%) 보다 경험이 없는 경우(467명, 69.70%)가 더 많음

【표 3-11】 분실·훼손 등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 경험: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있음	203	30.30	없음	467	69.70

□ 인감 변경 신고 장소

- 인감 변경 신고 장소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한 경우(166명, 81.77%)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 생활지와 신고 주민센터가 달라 이동하여 신고한 경우(37명, 18.23%)는 낮게 나타남

【표 3-12】 인감 변경 신고 장소: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현재 주소지와 주 생활지가 일치함)	166	81.77	주 생활지(직장 등)와 신고 주민센터 (주민등록지)가 달라 이동하여 신고 (현재 주소지와 주 생활지가 불일치함)	37	18.23

□ 인감 변경 신고 비용

- 인감 변경 신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동 시 소요된 교통비와 시간 소모에 따른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한 비용은 1만원 미만(116명, 57.14%)이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는 1만원 이상~5만원 미만(68명, 33.5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14명, 6.9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4명, 1.97%),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1명, 0.49%) 순으로 나타남

| 표 3-13 | 인감 변경 신고 비용: 일반국민

구분	n	%
① 1만원 미만	116	57.14
②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68	33.50
③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4	6.90
④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4	1.97
⑤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1	0.49
⑥ 30만원 이상	0	0
⑦ 기타	0	0
합계	203	100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 일치 여부

-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직장, 학교 등)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응답으로 ‘주소지 바로 옆 동네 등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262명, 39.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읍면동 단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238명, 35.52%)이며, ‘주소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생활한다’(134명, 20.00%), ‘자주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매우 떨어져 있다’(35명, 5.22%) 순으로 응답함

| 표 3-14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 일치 여부: 일반국민

구분	n	%
① 읍면동 단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238	35.52
② 주소지 바로 옆 동네 등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262	39.10
③ 주소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생활한다	134	20.00
④ 자주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매우 떨어져 있다	35	5.22
⑤ 기타	1	0.15
합계	670	100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인식

- 인감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시, ‘주소지와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완전히 같아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음’(202명, 30.15%)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달라 필요시 이동해야 하나 거리가 가까워 큰 문제가 되지 않음’(201명, 30.00%),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다르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따로 시간을 내어 처리가 필요함’(178명, 26.57%), ‘현재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려면 연차나 휴가, 여가 등을 활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함’(84명, 12.54%) 순으로 응답함
 - 기타(5명, 0.75%)에는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면 좋겠다’, ‘직접방문이 번거롭다’, ‘활동 지역이 넓어서 때에 따라 여건이 다르다’ 등이 제시됨

【표 3-15】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인식: 일반국민

구분	n	%
① 주소지와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완전히 같아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음	202	30.15
②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달라 필요시 이동해야 하나 거리가 가까워 큰 문제가 되지 않음	201	30.00
③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다르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따로 시간을 내어 처리가 필요함	178	26.57
④ 현재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려면 연차나 휴가, 여가 등을 활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함	84	12.54
⑤ 기타	5	0.75
합계	670	100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 가능 시 유용성 인식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이 가능할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현재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다’(250명, 37.3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장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236명, 35.22%),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신고·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96명, 14.33%),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82명, 12.24%) 순으로 나타남

- 기타(6명, 0.90%)에는 수기 인감대장 보관하는 곳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직접 방문은 도움이 되지 않아 온라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편리할 것 같으나 인감도용 등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표 3-16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 가능 시 유용성 인식: 일반국민

구분	n	%
① 당장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36	35.22
② 현재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다	250	37.31
③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신고·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	96	14.33
④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82	12.24
⑤ 기타	6	0.90
합계	670	100

□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경험

-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을 경험한 경우(248명, 37.01%)보다 불편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422명, 62.99%)가 더 높게 나타남

표 3-17 |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경험: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있다	248	37.01	없다	422	62.99

□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사항

-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겪었던 불편 사항은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168명, 27.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일과 후(18시) 발급 이용 불가’(128명, 20.85%), ‘인감의 신규 신고·변경, 증명서 발급 등에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됨’(80명, 13.03%), ‘본인 확인 등 절차나 요구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함’(79명, 12.87%), ‘도장 제작에 비용·불편 초래’(77명, 12.54%), ‘대리인에게 위임시 재외공관·병원 등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71명, 11.56%) 순으로 나타남
 - 기타(11명, 1.79%)에는 신분증이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인감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인식, 위임장 작성 미숙, 등록 인감도장에 대한 기억혼선, 온라인 발급 제한, 지문 확인 오류 등이 제시됨

【표 3-18】 인감신고·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 사항: 일반국민

구분	n	%
①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168	27.36
② 일과 후(18시) 발급 이용 불가	128	20.85
③ 도장 제작에 비용·불편 초래	77	12.54
④ 대리인에게 위임시 재외공관·병원 등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71	11.56
⑤ 인감의 신규 신고·변경, 증명서 발급 등에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됨	80	13.03
⑥ 본인 확인 등 절차나 요구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함	79	12.87
⑦ 기타	11	1.79
합계	614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인감증명서 발급·사용 이유

- 본인증명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주로 발급 및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처(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380명, 56.72%)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다른 증명제도를 알지 못하여’(93명, 13.88%)가 많았으며, ‘개인이 발급하기 수월하고 이용이 편리’와 ‘인감증명서에 대한 높은 신뢰’가 각각 64명(9.55%)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후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감증명서가 익숙해서’(56명, 8.36%), ‘대리인을 통한 발급 가능’(12명, 1.79%) 순임
 - 기타(1명, 0.15%)는 인감 신규 신고만 해봤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3-19 | 인감증명서 발급·사용 이유: 일반국민

구분	n	%
① 다른 증명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알지 못하여	93	13.88
② 개인이 발급하기 수월하고 이용이 편리	64	9.55
③ 수요처(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	380	56.72
④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감증명서가 익숙해서	56	8.36
⑤ 인감증명서에 대한 높은 신뢰	64	9.55
⑥ 대리인을 통한 발급가능	12	1.79
⑦ 기타	1	0.15
합계	670	100

□ 제출기관 확대

- 제출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제출기관을 확대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는 응답(359명, 53.5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제출기관을 확대하되, 온라인 발급 시 본인확인 수단 강화 필요’(194명, 28.96%), ‘법원과 은행 제출용은 대출 등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 반대’(91명, 13.58%), ‘확대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25명, 3.73%) 순으로 나타남
 - 기타(1명, 0.15%)에는 제출기관 축소가 제시됨

| 표 3-20 | 제출기관 확대: 일반국민

구분	n	%
① 제출기관을 확대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359	53.58
② 제출기관을 확대하되, 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 수단 강화 필요	194	28.96
③ 법원과 은행 제출용은 대출 등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 반대	91	13.58
④ 확대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25	3.73
⑤ 기타	1	0.15
합계	670	100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경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529명, 29.11%)보다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1,288명, 70.89%)가 더 높게 나타남

| 표 3-2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경험: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사용해 봤다	529	29.11	사용해 본 적이 없다	1,288	70.8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라는 응답(238명, 34.49%)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발급비용이 저렴해서’(193명, 27.97%), ‘인감(도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153명, 22.17%), ‘인감증명서에 비해 위·변조 등에서 안전해 보여서’(82명, 11.88%) 순으로 나타남
 - 기타(24명, 3.48%)는 편리성, 인감 분실·부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용 등이 제시됨

표 3-2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유: 일반국민

구분	n	%
① 인감(도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153	22.17
② 수요기관(공공기관, 등기소, 은행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요구	238	34.49
③ 인감증명서에 비해 위·변조 등에서 안전해보여서	82	11.88
④ 발급비용이 저렴해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현재 무료)	193	27.97
⑤ 기타	24	3.48
합계	690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용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용도는 은행 거래(199명, 27.87%)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자동차 거래(154명, 21.57%), 부동산 거래(105명, 14.71%),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56명, 7.84%), 계약·사업 신청(41명, 5.74%), 보상금 청구·수령(32명, 4.48%), 상속 절차 처리(29명, 4.06%),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25명, 3.50%), 인·허가 관련(19명, 2.66%), 보증(14명, 1.96%) 순으로 나타남
 - 기타(40명, 5.60%)는 확인용, 회사·관공서 제출, 경매, 자동차 번호판 대리 교체 등이 제시됨

표 3-23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용도: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① 부동산 거래	105	14.71	⑦ 인·허가 관련	19	2.66
② 자동차 거래	154	21.57	⑧ 계약·사업 신청	41	5.74
③ 은행 거래(대출 등)	199	27.87	⑨ 보상금 청구·수령	32	4.48
④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25	3.50	⑩ 보증(신용·인우·연대·재정)	14	1.96
⑤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	56	7.84	⑪ 기타	40	5.60
⑥ 상속 절차 처리	29	4.06	합계	714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요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만 요구’(415명, 32.30%)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알지 못함’(405명, 31.5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서 서명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서’(131명, 10.19%), ‘대리발급이 불가능함’(50명, 3.89%), ‘해킹이 우려됨’(39명, 3.04%), ‘인터넷 및 정보화 기기 사용 미숙’(19명, 1.48%) 순임
- 기타(226명, 17.59%)는 사용할 일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 표 3-2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일반국민

구분	n	%
① 알지 못함	405	31.52
② 수요기관(공공기관, 등기소, 은행 등)에서 인감증명서만 요구	415	32.30
③ 대리발급이 불가능함	50	3.89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서 서명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서	131	10.19
⑤ 해킹이 우려됨	39	3.04
⑥ 인터넷 및 정보화 기기 사용 미숙	19	1.48
⑦ 기타	226	17.59
합계	1,285	100

주: 3명은 무응답임

□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의향

-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의향이 있는 경우(812명, 88.36%)가 사용 의향이 없는 경우(107명, 11.6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표 3-25 】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의향: 일반국민

구분	n	%	구분	n	%
있다	812	88.36	없다	107	11.6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277명, 30.1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으로 접근성 확대’(253명, 27.53%), ‘제도 홍보 강화’(232명, 25.24%), ‘발급 수수료 지속 무료화’(145명, 15.78%) 순임
 - 기타(12명, 1.31%)는 인감 제도 폐지, 이용기관의 확대, 보안 강화 등이 제시됨

【 표 3-26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일반국민

구분	n	%
① 제도 홍보 강화	232	25.24
② 발급수수료 지속 무료화(현행법령상 '28.12.31.까지 무료)	145	15.78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으로 접근성 확대	253	27.53
④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	277	30.14
⑤ 기타	12	1.31
합계	919	100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용기관 확대’(339명, 36.89%)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제도 홍보 강화’(232명, 25.24%), ‘정부24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207명, 22.52%),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간편인증 허용’(78명, 8.49%), ‘최초 이용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허용’(55명, 5.98%) 순으로 나타남
 - 기타(8명, 0.87%)는 인감 제도 폐지, 보안 강화 등이 제시됨

| 표 3-27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일반국민

구분	n	%
① 제도 홍보 강화	232	25.24
② 이용기관 확대(은행 및 민간기관 등)	339	36.89
③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	207	22.52
④ 최초 이용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허용(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	55	5.98
⑤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간편인증 허용	78	8.49
⑥ 기타	8	0.87
합계	919	10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식으로는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라는 응답(455명, 49.51%)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정부 홈페이지(정부24 등)에서 배너, 게시글 등으로 안내’(167명, 18.17%),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 실시’(122명, 13.28%),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포스터, 홍보책자 등 비치’(91명, 9.90%),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배포’(80명, 8.71%) 순으로 나타남
 - 기타(4명, 0.44%)는 공익광고,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제도 정착, 인감제도 폐지가 제시됨

| 표 3-2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식: 일반국민

구분	n	%
① 정부 홈페이지(정부24 등)에서 배너, 게시글 등으로 안내	167	18.17
②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 실시	122	13.28
③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포스터, 홍보책자 등 비치	91	9.90
④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	455	49.51
⑤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80	8.71
⑥ 기타	4	0.44
합계	919	100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안성·신뢰성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응답(357명, 38.85%)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인감증명서가 더 신뢰된다’(250명, 27.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신뢰된다’(196명, 21.33%), ‘잘 모르겠다’(116명, 12.62%) 순으로 나타남

| 표 3-29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안성·신뢰성: 일반국민

구분	n	%
① 인감증명서가 더 신뢰된다	250	27.20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신뢰된다	196	21.33
③ 비슷하다	357	38.85
④ 잘 모르겠다	116	12.62
합계	919	100

제3절

인감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1. 일반사항

□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1,857명, 71.26%)이 남성(644명, 24.71%)보다 비중이 높으며, 응답하지 않음(105명, 4.03%)은 일부 나타남

| 표 3-30 | 응답자의 성별: 업무담당자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남성	644	24.71	여성	1,857	71.26	무응답	105	4.03

□ 연령

- 연령별로는 30~39세(1,032명, 39.60%)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20~29세(796명, 30.54%), 40~49세(489명, 18.76%), 50~59세(281명, 10.78%) 순임
- 20세 미만(4명, 0.15%)과 60세 이상(4명, 0.15%)은 매우 낮은 비중을 보임

| 표 3-31 | 응답자의 연령: 업무담당자

구분	n	%
20세 미만	4	0.15
20~29세	796	30.54
30~39세	1,032	39.60
40~49세	489	18.76
50~59세	281	10.78
60세 이상	4	0.15
합계	2,606	100

□ 근무지역

- 조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인감업무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480명, 18.42%)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전남(255명, 9.79%), 서울(250명, 9.59%), 경북(243명, 9.32%), 경남(200명, 7.67%)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세종(9명, 0.35%), 제주(23명, 0.88%), 광주(43명, 1.65%)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32 | 근무지역: 업무담당자

지역	응답자(n)	응답자(%)	지역	응답자(n)	응답자(%)
광역(시)			광역(도)		
서울	250	9.59	경기	480	18.42
부산	172	6.60	강원	154	5.91
대구	110	4.22	충북	120	4.60
인천	125	4.80	충남	103	3.95
광주	43	1.65	전북	187	7.18
대전	70	2.69	전남	255	9.79
울산	56	2.15	경북	243	9.32
세종	9	0.35	경남	200	7.67
			제주	23	0.88
소계	835	32.04	소계	1,765	67.73
기타	6	0.23	전체	2,606	100

주: 기타의 경우, 무응답 등임

□ 직급

- 응답자의 직급은 9급(1,379명, 52.92%)이 과반수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8급(562명, 21.57%), 7급(348명, 13.35%), 6급(144명, 5.53%), 5급 이상(2명, 0.08%) 순으로 나타남
 - 기타(171명, 6.56%)는 일반임기제, 한시임기제, 계약직, 행정 대체 등이 제시됨

| 표 3-33 | 직급: 업무담당자

구분	n	%
5급 이상	2	0.08
6급	144	5.53
7급	348	13.35
8급	562	21.57
9급	1,379	52.92
기타	171	6.56
합계	2,606	100

□ 공무원 경력

- 응답자의 공무원 경력은 1년 이상~3년 이하(781명, 29.97%)가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5년 이상(748명, 28.70%), 1년 이하(693명, 26.59%), 3년 이상~5년 이하(384명, 14.74%) 순으로 나타남

| 표 3-34 | 공무원 경력: 업무담당자

구분	n	%
1년 이하	693	26.59
1년 이상~3년 이하	781	29.97
3년 이상~5년 이하	384	14.74
5년 이상	748	28.70
합계	2,606	100

□ 민원 업무 담당 경력

- 응답자의 민원 업무 담당 경력은 1년 이하(1,166명, 44.74%)가 가장 높으며, 1년 이상~3년 이하(930명, 35.69%), 3년 이상~5년 이하(278명, 10.67%), 5년 이상(232명, 8.90%) 순으로 나타남

| 표 3-35 | 민원 업무 담당 경력: 업무담당자

구분	n	%
1년 이하	1,166	44.74
1년 이상~3년 이하	930	35.69
3년 이상~5년 이하	278	10.67
5년 이상	232	8.90
합계	2,606	100

2. 인감 업무 처리

□ 담당업무 비중

- 인감증명 관련 업무 전체를 100%라고 가정할 때 각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비중이 41.34%로 가장 높음
 - 인감증명서 발급의 표준편차는 17.6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0%에서 최대 98%까지 분포하여 지자체별, 담당자별 업무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그 다음으로 대장관리(이송) 20.45%, 민원응대 약 17.34%, 인감 신고(변경) 약 11.96%, 본인서명신청 및 발급 약 8.90% 순임
 - 대장관리(이송)의 경우 표준편차는 13.67%, 최소 0%, 최대 100%로 나타나 업무 비중 차이가 큰 편임
 - 민원응대는 표준편차 13.52%, 최소 0%, 최대 1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편차가 큰 편임
 - 인감 신고(변경)는 표준편차 6.68%, 최소 0%, 최대 50%로 비교적 편차가 낮은 편임
 - 본인서명신청 및 발급은 표준편차 5.75%, 최소 0%, 최대 40%로 나타남

| 표 3-36 | 담당업무 비중: 업무담당자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① 인감증명서 발급	41.34	17.66	0	98
② 인감 신고(변경)	11.96	6.68	0	50
③ 대장관리(이송)	20.45	13.67	0	100
④ 본인서명신청 및 발급	8.90	5.75	0	40
⑤ 민원응대	17.34	13.52	0	100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 처리 빈도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 처리 빈도를 살펴보면 하루 2~4건(1,221명, 46.85%)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1건 이하(922명, 35.38%), 하루 5건 이상(397명, 15.23%) 순임
 - 기타(66명, 2.53%)는 월 1-5건, 일주일에 1-3건 등으로 제시됨

| 표 3-37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 처리 빈도: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하루 1건 이하	922	35.38
② 하루 2~4건	1,221	46.85
③ 하루 5건 이상	397	15.23
④ 기타	66	2.53
합계	2,606	100

□ 인감 신규 신고 업무 처리 시간

- 인감 신규 신고 업무 1건당 평균 처리 시간의 평균은 약 10분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5분임
 - 최소 1분, 최대 80분까지 분포하여 지자체별 처리 시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표 3-38 | 인감 신규 신고 업무 처리 시간: 업무담당자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감 신규 신고 업무 1건당 평균 처리 시간	10.04	5.45	1	80

주: 무응답 등 38개 응답이 제외되어 총 2,568개 응답을 기준으로 함

□ 인감 변경 업무 처리 시간

- 인감 변경 업무 1건당 평균 처리 시간의 평균은 약 10분으로 나타남
 - 표준편차는 약 6분이며, 최소 1분, 최대 180분으로 처리 시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표 3-39 | 인감 변경 업무 처리 시간: 업무담당자

(단위: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감 변경 업무 1건당 평균 처리 시간	10.06	6.23	1	180

주: 무응답 등 39개 응답이 제외되어 총 2,567개 응답을 기준으로 함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량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량은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큼’(1,198명, 45.97%)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님’(916명, 35.15%), ‘절대적인 업무량이 다소 높은 수준임’(244명, 9.36%), ‘절대적인 업무량이 매우 많음’(116명, 4.45%),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98명, 3.76%) 순으로 나타남
 - 기타(34명, 1.30%)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추가 설명·대기시간 증가로 부담 발생, 인감 위임장 작성 오류로 인한 마찰, 지문 확인이 되지 않을 때의 번거로움 등이 제시됨

| 표 3-40 |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량: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절대적인 업무량이 매우 많음	116	4.45
② 절대적인 업무량이 다소 높은 수준임	244	9.36
③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큼	1,198	45.97
④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님	916	35.15
⑤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98	3.76
⑥ 기타	34	1.30
합계	2,606	100

□ 인감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 인감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인감사고 발생 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 부여’(1,298명, 49.8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대리인의 신원 확인 및 위임장 등 서류 확인’(799명, 30.66%), ‘수기 인감대장 관리’(368명, 14.12%), ‘민원 응대’(124명, 4.76%) 순으로 나타남
 - 기타(17명, 0.65%)는 ①번부터 ④번까지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 지문 인식 오류로 인한 본인 확인 지연, 위임장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반복적인 분쟁, 인감대장 이송 시 소요 시간이 많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표 3-41 | 인감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인감사고 발생 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 부여(소송, 손해배상 등)	1,298	49.81
② 대리인의 신원 확인 및 위임장 등 서류 확인	799	30.66
③ 수기 인감대장 관리(수기 인감대장 정리, 이송시 분실 우려 등)	368	14.12
④ 민원 응대	124	4.76
⑤ 기타	17	0.65
합계	2,606	100

□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 및 분실 사례 경험

-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 및 분실 사례를 경험한 경우(1,503명, 57.67%)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1,103명, 42.33%)보다 높게 나타남

| 표 3-42 |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 및 분실 사례 경험: 업무담당자

구분	n	%	구분	n	%
예	1,503	57.67	아니오	1,103	42.33

□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은 ‘전산과 수기의 이중 관리 부담’(1,017명, 39.03%)이 가장 높으며, ‘이송 과정 번거로움’(693명, 26.59%), ‘분실·훼손 우려’(671명, 25.75%), ‘보관 공간 부족’(187명, 7.18%) 순으로 나타남
 - 기타(38명, 1.46%)는 ①번부터 ④번까지 모두 해당한다는 의견, 빈번한 전입·전출로 인한 인감대장 반복 이송 과정에서 누락·분실 위험이 크다는 의견, 수기 인감대장과 전산 이중 관리 부담 등이 제시됨

| 표 3-43 |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보관 공간 부족	187	7.18
② 분실·훼손 우려	671	25.75
③ 이송 과정 번거로움	693	26.59
④ 전산과 수기의 이중 관리 부담	1,017	39.03
⑤ 기타	38	1.46
합계	2,606	100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의 평균은 월 평균 약 99건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122건, 최소 1건, 최대 2,000건으로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44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 업무담당자

(단위: 건)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감대장 이송 건수(월 평균)	98.70	122.05	1	2,000

주: 무응답 등 68개 응답이 제외되어 총 2,538개 응답을 기준으로 함

3. 인감증명제도 및 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실태

□ 관할 주소지 외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시 반려한 사례

- 관할 주소지 외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시 반려한 사례는 ‘가끔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1,204명, 46.20%)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자주 있는 편이다’(651명, 24.98%), ‘별로 없다’(277명, 10.63%), ‘거의 없다’(250명, 9.59%), ‘매우 자주 있다’(224명, 8.60%) 순으로 나타남

표 3-45 | 관할 주소지 외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시 반려한 사례: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자주 있다	224	8.60
② 자주 있는 편이다	651	24.98
③ 가끔 있는 편이다	1,204	46.20
④ 별로 없다	277	10.63
⑤ 거의 없다	250	9.59
합계	2,606	100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은 5분~10분(1,307명, 50.15%)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0분~20분(721명, 27.67%), 5분 미만(445명, 17.08%), 20분~30분(115명, 4.41%), 30분~1시간(11명, 0.42명), 1시간 이상(7명, 0.27%) 순으로 나타남

| 표 3-46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5분 미만(거의 즉시처리 가능)	445	17.08
② 5분~10분	1,307	50.15
③ 10분~20분	721	27.67
④ 20분~30분	115	4.41
⑤ 30분~1시간	11	0.42
⑥ 1시간 이상	7	0.27
합계	2,606	100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민원 발생 빈도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민원 발생 빈도는 ‘가끔씩 접함’(1,131명, 43.40%)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드물게 접함’(673명, 25.83%), ‘관련 민원이 거의 없음’(445명, 17.08%), ‘매우 자주 접함’(346명, 13.28%) 순으로 나타남

| 표 3-47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민원 발생 빈도: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자주 접함	346	13.28
② 가끔씩 접함	1,131	43.40
③ 드물게 접함	673	25.83
④ 관련 민원이 거의 없음	445	17.08
⑤ 기타	11	0.42
합계	2,606	100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주요 민원 유형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주요 민원 유형은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불편’(1,760명, 44.72%), ‘절차의 복잡성’(1,115명, 28.33%), ‘처리 지연 또는 처리시간 관련 불만’(567명, 14.41%), ‘필요 서류에 대한 불만’(417명, 10.59%) 순으로 나타남

- 기타(77명, 1.96%)는 민원이 없다는 의견과 대리발급 시 위임장 작성에 대한 불만, 지문 인식 오류, 인감 인영 불일치, 질병·의사무능력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례에서의 제도 적용 한계 등이 제시됨

| 표 3-48 | 인감 신규 신고·변경 관련 주요 민원 유형: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불편(예: 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처리 가능)	1,760	44.72
② 처리 지연 또는 처리시간 관련 불만(예: 민원인이 오래 대기하여야 함)	567	14.41
③ 절차의 복잡성(예: 본인 확인이나 수기 인감대장 작성이 복잡함)	1,115	28.33
④ 필요 서류에 대한 불만(예: 사전 작성 서류가 많고 작성이 어려움)	417	10.59
⑤ 기타	77	1.96
합계	3,936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인감 신규 신청·변경의 문제점

- 인감 신규 신청·변경의 문제점으로는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2,123명, 53.94%)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1,049명, 26.65%), ‘업무 부담 과중’(977명, 24.82%),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501명, 12.73%) 순으로 나타남
 - 기타(33명, 0.84%)는 대리발급·본인확인·위임 절차·훼손된 도장 반려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발생, 지문 인식 오류, 과도한 서류 요구, 인감 제도의 개선 필요, 노인·장애인 등의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시 판단 책임 부담,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반복적 전입·전출 등이 제시됨

표 3-49 | 인감 신규 신청·변경의 문제점: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	1,049	26.65
②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	501	12.73
③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	2,123	53.94
④ 업무 부담 과중	977	24.82
⑤ 기타	33	0.84
합계	4,683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등기우편 본인수령 도입 의견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등기우편 본인수령 도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반대(1,483명, 56.91%)가 제도 도입 찬성(1,123명, 43.09%)보다 높게 나타남
- 반대 사유로는 등기우편 수령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분실·오배송·대리수령·도용 등 인감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으며, 등기 발송·반송·민원 응대 등 추가 행정 절차로 인한 담당 공무원 및 집배원의 업무 과중, 비용 증가 등이 있음

표 3-50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등기우편 본인수령 도입 의견: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제도 도입 찬성	1,123	43.09
② 제도 도입 반대	1,483	56.91
합계	2,606	100

□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1,755명, 67.34%)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필요’(708명, 27.17%), ‘별로 필요하지 않음’(97명, 3.72%), ‘전혀 필요하지 않음’(27명, 1.04%) 순으로 나타남

- 기타(19명, 0.73%)는 모르겠다는 의견과 전산 미연계로 인한 등기번호 직접 입력에 따른 어려움,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추가 이송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표 3-51 |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필요	1,755	67.34
② 어느 정도 필요	708	27.17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97	3.72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27	1.04
⑤ 기타	19	0.73
합계	2,606	100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전부 확대 필요’(1,499명, 57.52%)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하지 않음’(477명, 18.30%), ‘법원·은행 확대’(343명, 13.16%),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확대’(257명, 9.86%) 순으로 나타남
 - 기타(30명, 1.15%)에는 본인확인 강화·부정발급 방지 필요성과 사고·오남용·대리발급에 대한 우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처 확대, 자동차 매도 등 일부 제한적 확대만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표 3-52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전부 확대 필요	1,499	57.52
②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확대	257	9.86
③ 법원·은행 확대	343	13.16
④ 필요하지 않음	477	18.30
⑤ 기타	30	1.15
합계	2,606	100

4. 인감증명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선 필요

□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함’(1,323명, 50.77%)이 가장 높았으며, ‘어느 정도 필요함’(1,115명, 42.79%), ‘별로 필요하지 않음’(130명, 4.99%), ‘전혀 필요하지 않음’(38명, 1.46%) 순으로 나타남

| 표 3-53 |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필요함	1,323	50.77
② 어느정도 필요함	1,115	42.79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130	4.99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38	1.46
합계	2,606	100

□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2,044명, 51.93%)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제도 정비를 통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최소화’(1,394명, 35.42%), ‘인감증명 사고 방지를 위한 대리발급 요건 강화’(1,014명, 25.76%),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편리성 강화’(819명, 20.81%) 순으로 나타남
 - 기타(85명, 2.16%)는 인감제도 폐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의 전면 대체가 다수 제기되었으며, 제도 존치 시에도 활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대리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책임, 다수의 민원 발생, 대리발급 제한, 본인확인 강화, 수기 대장 폐지 및 전산화, 비대면 발급 확대 등이 제시됨

| 표 3-54 |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편리성 강화	819	20.81
② 제도 정비를 통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최소화	1,394	35.42
③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2,044	51.93
④ 인감증명 사고 방지를 위한 대리발급 요건 강화	1,014	25.76
⑤ 기타	85	2.16
합계	5,356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의견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 찬성’(937명, 35.96%)이 가장 높았으며, ‘매우 반대’(560명, 21.49%), ‘어느 정도 반대’(556명, 21.34%), ‘매우 찬성’(553명, 21.22%) 순으로 나타남

| 표 3-55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의견: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찬성	553	21.22
② 어느 정도 찬성	937	35.96
③ 어느 정도 반대	556	21.34
④ 매우 반대	560	21.49
합계	2,606	100

□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1,911명, 48.55%)이 가장 높았으며, ‘주소지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민원 감소’(1,549명, 39.35%), ‘현행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행정 유연성 향상’(941명, 23.91%),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하는 현실에서 제도 간 정합성 증대’(686명, 17.43%) 순으로 나타남

- 기타(123명, 3.13%)에는 주소지 요건 완화·타 관할 인감 변경에 따른 담당 공무원 업무 부담 증가, 수기 인감대장 유지로 인한 혼란·사고 위험 확대, 인감제도 폐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심으로의 제도 전환 등이 제시됨

【표 3-56】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1,911	48.55
② 주소지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민원 감소	1,549	39.35
③ 현행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행정 유연성 향상	941	23.91
④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하는 현실에서 제도 간 정합성 증대	686	17.43
⑤ 기타	123	3.13
합계	5,210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에서의 신고·변경으로 인한 업무 책임 소재의 불명확’(1,919명, 48.76%)이 가장 높음
- 이어서 ‘주소지 중심 관리체계의 약화로 인감대장 관리의 일관성 저하’(1,299명, 33.00%),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위·변조 위험의 증가 우려’(857명, 21.77%), ‘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감 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량 증가’(835명, 21.21%), ‘제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 혼선 및 안내 혼동’(276명, 7.01%) 순으로 나타남
 - 기타(25명, 0.64%)에는 주소지 요건 완화 시 수기 인감대장 관리·분실 위험·변경 이송 등으로 공무원 업무 과중과 관리 혼란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되었음
 - 오히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이 위축되고 인감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

| 표 3-57 |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주소지 중심 관리체계의 약화로 인감대장 관리의 일관성 저하	1,299	33.00
② 타 지역에서의 신고·변경으로 인한 업무 책임 소재의 불명확	1,919	48.76
③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위·변조 위험의 증가 우려	857	21.77
④ 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감 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량 증가	835	21.21
⑤ 제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 혼선 및 안내 혼동	276	7.01
⑥ 기타	25	0.64
합계	5,211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적’(1,136명, 43.59%)이 가장 높았으며, ‘효과는 있으나 크지 않음’(693명, 26.59%), ‘매우 효과적’(462명, 17.73%),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315명, 12.09%) 순으로 나타남

| 표 3-58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효과적	462	17.73
② 어느 정도 효과적	1,136	43.59
③ 효과는 있으나 크지 않음	693	26.59
④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	315	12.09
합계	2,606	100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업무량·업무시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업무량 및 업무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부 증대’(912명, 35.00%)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매우 증대’(623명, 23.91%),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

- 없음'(495명, 18.99%),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400명, 15.35%),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매우 단축'(154명, 5.91%) 순으로 나타남
- 기타(22명, 0.84%)에는 전반적으로 업무량 변화는 지역별·유동인구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
 - 특히 수도권·거점도시·접근성이 높은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이 집중되어 업무 과중·대기 시간 증가·민원 증가 우려가 크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표 3-59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 가능 시 업무량·업무시간에 미치는 영향: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매우 단축	154	5.91
②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	400	15.35
③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 없음	495	18.99
④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부 증대	912	35.00
⑤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매우 증대	623	23.91
⑥ 기타	22	0.84
합계	2,606	100

□ 현행 인감 업무 시스템에서 관할 주소지 외 민원 처리 가능성

- 현행 인감 업무 시스템에서 관할 주소지 외 민원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임'(635명, 24.3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주소지 요건 완화의 수용 가능성이 다소 낮은 편임'(539명, 20.68%),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주소지 요건 완화는 수용이 거의 불가능함'(520명, 19.95%), '신규 신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510명, 19.57%), '변경(말소, 부활 포함) 신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196명, 7.52%), '주소지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음'(154명, 5.91%) 순으로 나타남
- 기타(52명, 2.00%)에서는 수기 인감대장 폐지 및 전산화의 선행, 업무 혼란 야기 등이 다수 제기되었음

표 3-60 | 현행 인감 업무 시스템에서 관할 주소지 외 민원 처리 가능성: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주소지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음	154	5.91
②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임	635	24.37
③ 신규 신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510	19.57
④ 변경(말소, 부활 포함) 신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196	7.52
⑤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주소지 요건 완화의 수용 가능성이 다소 낮은 편임	539	20.68
⑥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주소지 요건 완화는 수용이 거의 불가능함	520	19.95
⑦ 기타	52	2.00
합계	2,606	100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로는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주소지 요건을 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854명, 32.77%)가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시도 단위,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점진적 확대’(635명, 24.37%), ‘전국 어디서나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로 개편’(473명, 18.15%), ‘본인의 주소지가 위치한 시도(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307명, 11.78%), ‘직장, 학교 등 주 생활지역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생활지역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요건을 완화’(193명, 7.41%) 순으로 나타남
 - 기타(144명, 5.53%)에서는 수기 인감대장이 존재하는 한 주소지 요건 완화나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은 관리·책임소재 혼란과 업무 과중,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인감대장 전면 전산화, 인감제도 폐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대 등이 제시됨

| 표 3-61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전국 어디서나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로 개편	473	18.15
② 본인의 주소지가 위치한 시도(광역시자치)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	307	11.78
③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시도 단위,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점진적 확대	635	24.37
④ 직장, 학교 등 주 생활지역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생활지역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요건을 완화	193	7.41
⑤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주소지 요건을 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	854	32.77
⑥ 기타	144	5.53
합계	2,606	100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변경 가능 시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변경 가능 시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는 ‘통합 전산망 구축’(1,011명, 38.80%)이 가장 높았으며, ‘실시간 정보 연계’(516명, 19.80%), ‘추가 인력 및 예산 등 지원’(391명, 15.00%), ‘신원 확인 절차 강화’(373명, 14.31%),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교육 등 제공’(225명, 8.63%) 순으로 나타남

- 기타(90명, 3.45%)에는 수기 인감대장 폐지, 인감대장 전산화, ①번부터 ⑤번 부분 혹은 전부 필요, 제도 변경 불가·불필요 등이 제시됨

| 표 3-62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변경 가능 시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통합 전산망 구축	1,011	38.80
② 실시간 정보 연계	516	19.80
③ 신원 확인 절차 강화	373	14.31
④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교육 등 제공	225	8.63
⑤ 추가 인력 및 예산 등 지원	391	15.00
⑥ 기타	90	3.45
합계	2,606	100

□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한 의견

○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우 찬성’(1,735명, 66.58%)이 가장 높았으며, ‘어느 정도 찬성’(759명, 29.13%), ‘어느 정도 반대’(90명, 3.45%), ‘매우 반대’(22명, 0.84%) 순으로 나타남

| 표 3-63 |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한 의견: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매우 찬성	1,735	66.58
② 어느 정도 찬성	759	29.13
③ 어느 정도 반대	90	3.45
④ 매우 반대	22	0.84
합계	2,606	100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 주요 기대효과로는 ‘수기 작성 및 관리 과정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 향상’(2,066명, 52.49%)이 가장 높았으며, ‘자료 누락·오류 등의 실수 및 오류의 감소’(1,062명, 26.98%), ‘종이대장 보관이 불필요해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711명, 18.06%),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감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708명, 17.99%),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539명, 13.69%), '업무 표준화 및 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사후 추적과 감사 대응 용이'(107명, 2.72%) 순으로 나타남

- 기타(18명, 0.46%)에서는 대장 이송에 따른 우편·등기 비용 감소, 업무 부담 감소, 민원 불편 해소, 종이 등 자원 사용 및 예산 절감, 변경이력 혼란 등이 제기됨

표 3-64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수기 작성 및 관리 과정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 향상	2,066	52.49
② 자료 누락·오류 등의 실수 및 오류의 감소	1,062	26.98
③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감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	708	17.99
④ 종이대장 보관이 불필요해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711	18.06
⑤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539	13.69
⑥ 업무 표준화 및 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사후 추적과 감사 대응 용이	107	2.72
⑦ 기타	18	0.46
합계	5,211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시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⁴⁾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시 업무량 변화 예상치 평균은 -17.6%, 표준편차는 39.9%, 최소 -100%에서 최대 200%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
- 전반적인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나, 기관별로 업무량 변화 폭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0%는 “현재와 동일”, 음수(-)는 “업무량 감소”, 양수(+)는 “업무량 증가”를 의미함(예: -50% = 업무량 절반 감소, +50% = 업무량 1.5배 증가)

| 표 3-65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시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 업무담당자

(단위: %)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업무량 변화 예상치	-17.60	39.90	-100	200

주: 무응답 등 14개 응답이 제외되어 총 2,592개 응답을 기준으로 함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시스템 장애나 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1,499명, 38.0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 증가 우려’(1,128명, 28.66%), ‘초기 전산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관 오류 및 업무량 과다 발생 가능’(1,027명, 26.09%), ‘인감대장 원본(수기 기록) 부재로 진위 확인 및 이력 추적 어려움’(986명, 25.05%), ‘새로운 전산시스템 활용 및 적응에 대한 부담’(296명, 7.52%),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 부담’(238명, 6.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37명, 0.94%)에서는 문제점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데이터 소실 위험, 의사무능력자의 재산·신상 등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호장치 약화 우려 등이 제시되었음

| 표 3-66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주요 우려 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시스템 장애나 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	1,499	38.08
②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 증가 우려	1,128	28.66
③ 인감대장 원본(수기 기록) 부재로 자료 진위 확인 및 이력 추적 어려움	986	25.05
④ 초기 전산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관 오류 및 업무량 과다 발생 가능	1,027	26.09
⑤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 부담	238	6.05
⑥ 새로운 전산시스템 활용 및 적응에 대한 부담	296	7.52
⑦ 기타	37	0.94
합계	5,211	100

주: 중복응답을 고려한 것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1,091명, 41.86%)이 가장 높았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815명, 31.27%), ‘제도 홍보 강화’(611명, 23.45%), ‘발급수수료 인하’(53명, 2.03%) 순으로 나타남
 - 기타(36명, 1.38%)는 대리발급 기능 보완, 서류 명칭 단순화, 이용기관 확대, 인감제도 폐지 등이 제시됨

【표 3-6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제도 홍보 강화	611	23.45
② 발급수수료 인하	53	2.03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	815	31.27
④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	1,091	41.86
⑤ 기타	36	1.38
합계	2,606	100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이용기관 확대’(1,283명, 49.23%)가 가장 높으며, ‘정부24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573명, 21.99%), ‘제도 홍보 강화’(484명, 18.57%), ‘이용 승인신청 방법 다양화’(172명, 6.60%), ‘인증 보안 수단 강화’(94명, 3.61%) 순으로 나타남

표 3-68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제도 홍보 강화	484	18.57
② 이용기관 확대(은행 및 민간기관 등)	1,283	49.23
③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	573	21.99
④ 이용승인신청 방법 다양화(비대면 이용승인 신청)	172	6.60
⑤ 인증 보안 수단 강화	94	3.61
합계	2,606	100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는 ‘두 제도를 중심으로 병행하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 전환’(965명, 37.03%)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단일화 운영’(804명, 30.85%), ‘현재와 같이 인감증명제도를 중심으로 병행 유지’(453명, 17.38%), ‘국가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의 증명제도로 운영’(197명, 7.56%),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인감증명제도 단일화 운영’(105명, 4.03%), ‘민간기관 증명서비스 추가 병행 운영’(76명, 2.92%) 순으로 나타남
 - 기타(6명, 0.23%)는 수기 인감대장 폐지, 인감증명제도는 대리발급시에만 허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발급 시에만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표 3-69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업무담당자

구분	n	%
① 현재와 같이 인감증명제도를 중심으로 병행 유지	453	17.38
② 두 제도를 중심으로 병행하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 전환	965	37.03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인감증명제도로 단일화 운영	105	4.03
④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단일화 운영	804	30.85
⑤ 민간기관 증명서비스 추가 병행 운영	76	2.92
⑥ 국가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의 증명제도로 운영	197	7.56
⑦ 기타	6	0.23
합계	2,606	100

□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대한 기타 의견

○ 수기 인감대장 문제

- 전입·전출 시 인감대장 이송 업무가 과다하며, 특히 대규모 전입(신축 아파트 입주 등) 시 인감대장 관련 업무가 단기간에 급증하여 담당자 처리 역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등기우편 비용 및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음
- 잦은 주소 이전 민원인의 경우 인감대장 작성·이송이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함
- 인감대장 분실·훼손 위험이 존재하며, 영구보관에 따른 공간·관리 부담이 큼

○ 대리발급·위임장 관련 애로사항

- 인감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대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위임장 미비·오작성 등으로 보완·반려 시 강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위임장의 자필 여부 및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위임장이 대리인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질적 통제가 곤란함
- 대리발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일선 공무원에게 부과됨

○ 공무원 책임·보호 문제

- 본인확인 및 의사능력 판단에 대한 책임이 개별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음
- 소송, 민원, 감사 등과 연계될 소지가 커 담당자 심리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함
-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면책 규정이 미흡함

○ 본인확인 수단 문제

- 신체적 여건, 고령 등의 사유로 지문 인식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지문 인식 불일치 시 추가 질문 등을 통한 주관적 확인에 의존하게 되어 민원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음
- 지문 외에 선택가능한 보완적 본인확인 수단이 부족함
- 전자서명, 민간인증,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이미 보급되어 있어 대체 가능성이 충분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저조 원인

- 은행, 법원 등 주요 수요기관이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우선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읍면동 차원의 홍보만으로는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 의사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관련 문제

- 고령자, 치매 환자, 중증 환자 등 의사능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의 인감 발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성년후견 제도는 신청·심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장에서 즉시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산화·온라인·무인 발급 확대 필요성

- 인감 관련 업무의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발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무인·온라인 발급 확대 시 본인확인이 보다 명확해지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면 전산화 시 해킹, 시스템 장애 등 정보보안·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지침·교육·시스템 개선 요구

- 인감 사무편람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다양한 사례를 포괄하는 구체적 지침 보완이 요구됨
- 증명청별로 세부 처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혼선과 불만을 유발하고 있음

제4절

심층 면접조사 결과

1. 금융기관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 실무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실태

- (본인서명 기피의 실무적 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확한 사전 기재’를 전제로 하는 문서 구조로 인해 보정 필요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실무에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임
 - 대출 등의 업무 처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경우 은행명·금액·날짜·목적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누락·오기 등의 발생 시 등기소의 보정 요청으로 인해 민원인이 주민센터-은행-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서를 재발급해야 함
 - 초창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과정에서 이러한 재발급 사례가 누적되면서, 현재는 실무상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고착화됨
 - 예컨대 신규 아파트 집단입주 등의 상황에서는 외부 대출상담사가 표준화된 서류를 대량 접수하는데, 보정·재발급 가능성이 높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운영상 부담이 커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존재함
 -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기관에서 연간 담보대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
- (활용 범위의 비대칭성) 인감증명서는 “문서 한 장으로 다목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은 용도·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실무적 활용의 유인이 낮음
 -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근저당 설정 외에도 소유권 이전, 말소 등 복수 등기 업무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음
 - 인감증명서는 은행제출용·매도용 등 다양한 목적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범용적·저위험 문서”로 인식되어 인감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내재적 한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위임자란은 주택담보대출 업무의 대량·분업 구조와 충돌하며, 그에 따라 보정 요구 가능성이 높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법무사(또는 법무법인) 정보와 위임내용을 사전에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 고객과 금융기관 모두 담당 법무사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사전 기재의 정확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등기소의 문서 처리 과정에서 보정·재발급 요구가 높아 비효율성이 높음
 - 일부 항목(용도 체크 등)이 단순화되더라도 위임자란이 존치되는 한 실무상 불편과 회피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신뢰성 인식의 괴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상 안전성이 인감에 비해 더 크나, 역설적으로 민원인들은 인감을 더 ‘안심되는 문서’로 인식하는 상황임
 - 사회적 통념상 인감증명서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서명은 모방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존재함
 - 실제 제도 설계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고 신원확인 과정 또한 엄격히 이루어지나, 실무에서는 ‘익숙하지 않음’, ‘복잡한 양식’, ‘높은 보완 요구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불편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 (대리발급 이슈와 실무의 불일치) 인감증명서에 대리발급 표기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본인의사 확인의 문제·위험이 일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는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음
 - 대출 실행 시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 서명 절차를 수행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했다 하더라도 실무상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일부 기관에서 대리발급 인감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운용한 사례도 있어, 기관별로 해석·운용상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음

□ 인감증명제도 전산화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제도개선 방향

-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가능성) 인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 '고객 방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업무부담·책임 이전 가능성이 주요 우려로 제기됨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이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전산 조회·출력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경우 연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다만 현재는 읍면동 단위 행정청에서 의사확인·대리발급과 관련한 응대 및 법적 부담을 지고 있으나, 이러한 부담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발급 확대에 의한 대리 이용 가능성(타인의 인증수단 이용) 등으로 책임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인감의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인감증명서의 전자적 연계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 은행권, 법원(등기소) 등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대상의 특수성 고려) 외국인·난민 등 인감 발급이 활용이 어려운 집단은 본인서명은 사실상 유일한 증명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확대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편임
 - 다만, 지나치게 특수한 대상이라는 점, 이들 집단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본인서명으로의 전면적 전환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제도 개선 방향) 본인서명의 확대 및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양식 설계의 단순화와 해석·실무지침의 통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위임자란의 삭제 또는 사후 기재 가능 구조로의 전환, 용도란의 범용화, 그리고 등기소·법무사·은행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일 지침과 시행령 정비가 필요함
 - 동시에 인감 전산화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 인감제도는

유지하되 종이·방문 중심에서 전자적 확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 방향이 될 수 있음

2. 법원행정처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 등기 절차에서의 인감의 중요성

- (등기 절차에서 인감의 지위) 인감증명서는 등기 실무에서 ‘진정성 확인의 핵심 축’으로 기능함
 - 등기 처리시에는 원인서면,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됨
 - 인감증명서는 특수용지·홀로그램·일련번호 등 물리적 요소를 통해 육안 위·변조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등기관이 책임을 이행했다는 근거로 작용함
 - 인감이 없는 등기 처리 또는 명백한 위·변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기관 개인의 증과실로 귀결될 수 있음
- (종이 인감증명서의 방어적 기능) 종이 인감증명서는 등기 절차에서 책임이 분산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에 해당
 - 읍면동 행정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시 본인·대리인 확인, 인감대장 발급 이력 등에 대한 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관은 이를 전제로 인감증명서를 최종 육안 확인함으로써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임
 - 등기와 관련한 사후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으며, 인감의 온라인 발급이나 전면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이중 확인 구조의 약화로 인한 문제·책임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인감 전자화는 등기 분야뿐 아니라 집행·공탁·소송 전반과 연계된 문제이며,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기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인감제도 전산화를 통한 시스템 연계 가능성

- (행정안전부 전자 인감 연계의 실효성) 현행 전자 인감증명서 연계는 등기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
 - 서면 신청이 원칙인 방문 등기에서는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이 사실상 필수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음
 - 연계 시스템을 통한 PDF 열람은 특이·의심 사례에서의 확인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인감 제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음
 - 전자신청(온라인 등기)에서는 이미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아, 전자 인감의 활용 여지는 더욱 제한적임
 - 결과적으로 인감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전자 등기신청과 인감 사용 구조) 전자등기 확대만으로 인감 사용 감소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전체 등기신청의 약 80~90%는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이며, 이들은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수수료 구조, 업무 관행, 민원 대응 방식 등으로 인해 전자 등기신청 비중을 정책적으로 급격히 확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그에 따라 전자 등기신청 확대에 따른 인감 사용 감소 효과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 (인감대장 전산화 정책에 대한 인식) 인감대장의 전산화는 단기적 편의성과 장기적 정책 목표 간의 긴장을 내포함
 - 인감을 전자적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 경우, 오히려 인감 의존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음
 - 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특히 전자 방식)를 구조적으로 더 편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인감 축소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
 - 법원행정처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제도·양식·홍보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는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식) 인감과 본인서명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나, 실무상에서 본인서명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바로 ‘양식 설계’에 있음
 - 등기 예규상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등기관은 이를 차별 없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실무적으로 볼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오히려 본인성 측면에서 더 신뢰성이 높은 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위임인란 기재 의무로 인해 보완 요구 가능성이 높아, 법무사·은행 실무에서 회피되는 구조가 형성됨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이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범용화되고 기재 요건이 완화된다면, 본인서명의 활용 확대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됨
- (본인서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향) 등기소 차원의 홍보·안내 협조를 통한 정책홍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원 창구 홍보물 배포, 포스터 부착, 상담 시 대안 문서 안내 등은 국토부 임대차계약신고 홍보 사례와 유사하게 전국 단위 협조를 통한 홍보가 가능함
 - 제도 개선과 병행될 경우 본인서명 인지도·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종합 시사점)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와 등기 실무는 직접적 연계 효과가 제한적임
 - 인감대장 전산화의 1차 효과는 주민센터 행정부담 완화와 보존·재난 대비에 있으며, 등기소의 종이 인감 요구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
 - 장기적으로는 전자등기 확대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인감 신규 신고를 줄이고 인감의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됨

3.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의 기본 방향

- (전산화 추진의 기본 방향) 인감대장 전산화는 단기간 일괄 추진이 아닌 다년간의 연차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 주민등록표 원장 DB 구축 사례에서도 전국 원장을 권역별 거점으로 집적해 스캔·보정·DB화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추진되었음
 - 인감대장 역시 전산화 착수 이전에 현재 인감 관리 현황 분석, 유사 사업 프로세스 검토, 이를 토대로 한 DB 구축 범위·공정·비용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전산화의 목적·목표 설정) 전산화의 목적이 수기 인감대장의 ‘보존’인 경우와 ‘업무 효율성·국민 편의성 향상’인 경우에 따라 전산화의 사업 설계는 달라짐
 - 재난·훼손 대비를 위한 보존 중심 접근과, 주소지 요건 완화·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실무 중심 접근은 요구되는 범위와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산화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범위 설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전산화 대상·범위 설정) 전산화 범위에 따라 비용·기간·정책 효과의 차이가 존재함
 - 인감제도 시행 이후의 수기 인감대장을 전수 전산화하는 것은 법적 분쟁 대비와 역사적 보존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이나, 그에 다른 사업 예산과 기간이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 기준연도 이후·생존자 중심의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비용·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상속·분쟁 사례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단일 안이 아닌 복수 시나리오를 설정해 정책적 선택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전산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

- (자료 구조 및 기술·물리적 제약) 현재 관리되고 있는 수기 인감대장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전산화의 난이도를 좌우함

- 수기 인감대장은 원칙적으로 '1인 2장(양면)'으로 구성되지만, 인감 변경이력에 따라 복수의 장이 존재하며 인감대장의 바인딩·겹침·혼합 보관 등으로 인해 대량 스캔이 어려운 경우 또한 다수 존재할 수 있음
- 1991년 이전 주민등록표 원장에 포함된 인감란을 전산화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또한 전산화의 범위·난이도에 영향을 미침
- 침수·훼손 등으로 보존 상태가 열악한 구(舊) 원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산화 착수 전 수기 인감대장의 실물 보관 상태에 대한 전수 혹은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인 식별·매칭 문제)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개인 식별 오류에 대한 기술적 고려가 필요함

- 과거 인감대장은 한자 수기 기록, 구(舊)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등 이질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매칭을 위한 별도 로직이 필요함
- 사망자의 인감 이력 조회·증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 또한 필요함

○ (기존 전산 이력과 수기 인감대장의 역할) 2003년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한 접근이 필요함

- 2003년 이후 등록·변경된 인감은 행정 시스템 내부에 변경이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화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추가 스캔 없이 관리가 가능함
- 이에 따라 인감대장 전산화의 핵심은 전산화 이전 구간의 수기 기록을 어떻게 보완·연계할 것인지에 있음

○ (전산화 이후의 인감대장 보존의 문제) 수기 인감대장의 중앙 집중 보관이나 국가기록원 이관 등은 현실적 측면에서 대안이 되기 어려움

- 과거 주민등록표 원장 전산화 시 물리적으로 규모가 너무 커 국가기록원 이관이 불가능했던 선례가 있음

□ 인감제도 전산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 (예산 및 비용 구조) 인감대장 전산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부분 인건비에 편중될 가능성이 큼

- 과거 사례를 고려할 경우 인감대장 전산화에 수백억~천억 원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의 대부분은 수기 인감대장의 스캔·보정·검수 등의 노동력 투입에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전산화 추진 전략) 전산화 추진에 있어 단계적·연차적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전산화의 타당성·필요성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판단됨
 - 수기 인감대장의 전수 전산화나 부분 전산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전산화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단위의 단년도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권역별 분산 및 연차 사업을 고려한 전산화 방향 설계가 필요함
 - 특히 전산화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행정 효율화 등 개선 효과를 포괄하는 효과성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이 요구됨

제5절

조사결과 종합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 일반 국민 인감 이용 실태

□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과 인감증명서 용도

- 일반국민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87%가 인감 신고·변경 및 인감증명서 발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3.13%는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인감증명서의 주요 용도는 은행 거래(28.18%), 부동산 거래(25.12%), 자동차 거래(15.28%) 등으로 나타나, 재산권 행사 및 금융·부동산 관련 절차 등에서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감 신고 및 분실·훼손 등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 경험

- 인감 신고 이유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4.11%), 그 외에도 각종 행정상 필요(42.75%)에 따른 신고 비중이 높게 조사됨
- 아울러 응답자의 30.30%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인감 변경 신고 장소 및 비용 인식

- 인감 변경 신고 장소와 관련하여, 81.77%의 응답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인감 변경 신고로 인해 발생한다고 인식되는 비용은 1만 원 미만(57.14%)과 1만 원 이상~5만 원 미만(33.50%)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어서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6.9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0.49%) 순으로 나타남
 - 인감 변경 신고에 소요되는 절대적 비용의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음

□ 주소지와 생활권 간의 일치 여부

-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의 일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75%는 완전히 일치하거나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주소지와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거나 매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시 주소지 방문에 대한 인식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점에 대해, 일반국민 61.15%는 주소지와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완전히 같거나 거리가 가까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으나, 26.57%는 주소지와 주로 생활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시간을 내어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특히, 주소지와 현재 생활지역이 완전히 분리된 응답자의 경우(12.54%), 인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적·물리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에 대한 인식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할 경우, 대부분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86.86%),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 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처리될 경우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인감 신고·인감증명 발급 과정상의 불편 경험·불편 사항

- 일반국민 중 인감 신고·인감증명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한 응답자는 37.01%로 조사되었음
-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27.36%), 일과 후(18시) 발급 이용 불가(20.85%), 본인 확인 등 절차나 요구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함(13.03%), 인감의 신규 신고·변경, 증명서 발급 등에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됨(12.87%), 도장 제작에 비용·불편 초래(12.54%), 대리인에게 위임시 재외공관·병원 등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11.56%) 순으로 나타남

□ 인감증명서 발급·사용 사유

- 인감증명서를 주로 발급 및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처(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56.7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다른 증명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13.88%)이 높게 나타남

□ 제출기관 확대 인식

- 인감증명서의 제출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3.58%가 제출기관 확대로 인한 편의성 증대를 이유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제출기관을 확대하되, 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28.96%)이 뒤를 이음
- 반면에 법원·은행 제출용은 대출 등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 반대한다는 응답(13.58%)과 확대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3.73%)도 일부 차지함

2)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감 관련 업무 처리 전반

□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감 업무 처리 실태

-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전체 담당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평균 41.34%), 대장관리(평균 20.45%), 민원응대(평균 17.34%), 인감 신고(평균 11.96%), 본인서명신청 및 발급(평균 8.90%) 순으로 나타남
- 담당자들은 하루 2~4건의 인감 신규·변경 업무를 처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6.85%), 인감 신규 신고 업무와 변경 업무 모두 1건당 평균 처리 시간은 약 10분 수준이나,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크다는 응답(45.97%)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체감되는 업무 부담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의 평균은 약 99건으로 나타남
- 관할 주소지 외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 신청 시 반려한 사례는 가끔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46.20%)이 가장 높음
 - 이어서 '자주 있는 편이다'(24.98%), '별로 없다'(10.63%), '거의 없다'(9.59%), '매우 자주 있다'(8.60%)라고 응답함

□ 인감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및 수기 인감대장 관리 문제

- 인감업무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인감 사고 발생 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 부여(49.81%)임이 확인됨
 - 이어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및 위임장 등 서류 확인(30.66%), 수기 인감대장 관리(14.12%), 민원 응대(4.76%) 순으로 나타남
- 수기 인감대장 관리 오류 및 분실 사례 경험은 응답자의 57.67%가 있었으며, 전산과 수기의 이중 관리 부담(39.03%), 이송 과정 번거로움(26.59%), 분실·훼손 우려(25.75%), 보관 공간 부족(7.18%) 순으로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음

□ 인감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민원 대기 시간·발생 빈도·민원 유형

- 인감 신규 신고·변경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은 5분~10분(50.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발생 빈도는 가끔씩 접함(43.40%), 드물게 접함(25.83%)이 대부분을 차지함
- 주요 민원 유형은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불편(44.72%), 절차의 복잡성(28.33%), 처리 지연 또는 처리시간 관련 불만(14.41%), 필요 서류에 대한 불만(10.59%) 순으로 나타남

□ 인감 신규 신청·변경 제도의 문제점

- 담당자들은 인감 신규 신청·변경 제도의 문제점을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53.94%)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26.65%), 업무 부담 과중(24.82%),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12.73%) 순으로 인식함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실태 및 인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경험·발급 이유·용도

- 일반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경험과 발급 이유, 용도는 다음과 같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29.07%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감증명서 이용 경험(35.87%)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인감증명서보다 인지도·이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이유는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34.70%), 발급비용이 저렴해서(27.55%),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22.37%),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12.02%) 순으로 나타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용도는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데, 은행 거래(27.82%), 자동차 거래(21.38%), 부동산 거래(14.49%),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7.91%), 계약·사업 신청(6.00%), 보상금 청구·수령(4.39%), 상속 절차 처리(4.25%),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3.51%), 인·허가 관련(2.78%), 보증(2.05%) 순으로 나타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일반국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만 요구해서(22.84%)’, ‘알지 못함(21.7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서 서명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서(7.21%)’, ‘대리발급이 불가능함(2.88%)’, ‘해킹이 우려됨(2.19%)’, ‘인터넷 및 정보화 기기 사용 미숙(1.04%)’ 순임
- 이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저해 요인이 수요기관이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제도의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의향

- 일반국민의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의향에 대해 ‘있다’라는 응답은 88.52%로 나타남
- 실제 이용 경험은 약 29%로 나타났으나, 향후 의향은 매우 높아 제도 자체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존재하나, 인지·접근성·활용처 부족 등이 현재의 낮은 이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식**

-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홍보 방식으로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라는 응답(49.07%)’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 정부 홈페이지에서 배너, 게시글 등으로 안내(18.21%),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 실시(13.34%),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포스터, 홍보책자 등 비치(10.09%), 유튜브·SNS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배포(8.82%)가 뒤를 이음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안성·신뢰성**

-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보안성·신뢰성 비교 결과, 인감증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앞서지만(인감증명서: 27.0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2.04%), 두 제도 간 신뢰도 격차가 크지 않음(38.63%)

□ **인감업무 담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인식**

- 공무원 조사 결과, 담당자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수요처의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41.86%),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확대(31.27%), 홍보 강화(23.45%)를 중요하다고 인식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기관 확대(49.23%), 정부24 기반 접근성 강화(21.99%), 비대면 이용승인 절차 도입(6.60%)이 요구됨
- 이는 국민 응답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이용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개선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다음과 같음

-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30.39%),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으로 접근성 확대(28.31%), 제도 홍보 강화(24.71%), 발급수수료 지속 무료화(15.55%) 순임
-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다음과 같음
 - 이용기관 확대(36.66%), 제도 홍보 강화(25.06%), 정부24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22.51%), 민간간편인증 허용(8.82%), 최초 이용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허용(6.26%) 순임
- 인감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41.86%)이 가장 높았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31.27%), 제도 홍보 강화(23.45%), 발급수수료 인하(2.03%) 순으로 나타남
- 인감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이용기관 확대(49.23%), 정부24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21.99%), 제도 홍보 강화(18.57%), 이용승인신청 방법 다양화(6.60%), 인증 보안 수단 강화(3.61%) 순으로 나타남
- 즉,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보다 이용 환경을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함

4) 인감제도 개편 관련 인식

□ 인감증명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 필요 사항

-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7%,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42.79%로 나타나, 전체의 93.56%가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감증명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가 51.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제도 정비를 통한 인감증명 제출 요구 사무 최소화’(35.42%),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편리성 강화’(20.81%), ‘인감증명 사고 방지를 위한 대리발급 요건 강화’(25.76%) 순으로 나타나,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 모두를 고려한 개선 요구가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 인감대장 이송 시 등기번호 자동 입력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94%의 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7.34%이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7.17%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한 인식

- 인감업무 담당자들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등기우편 본인수령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56.91%)가 찬성하는 경우(43.09%)보다 높게 나타남
 - 반대 사유는 등기우편 수령 시 본인 확인이 어려워 분실·오배송·대리수령·도용 등 인감사고 위험과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가 있으며, 등기 발송·반송·민원 대응 등으로 행정·집배 업무 부담과 비용 증가 등임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전부 확대 필요’라는 응답(57.52%)이 가장 높고, ‘법원·은행 확대’라는 응답이 13.16%,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확대’라는 응답이 9.86%로 나타남
 -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8.30%임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인식·기대효과·문제점

- 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인식과 기대효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인감제도 주소지 요건 완화 개편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매우 찬성’

21.22%, ‘어느 정도 찬성’ 35.96%로 찬성 의견이 총 57.18%를 차지하는 반면, ‘어느 정도 반대’ 21.34%, ‘매우 반대’ 21.49%로 반대 의견도 42.83%에 이르러, 주소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교적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을 보임

-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이 48.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소지 요건 관련 민원 감소’(39.35%), ‘현행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행정 유연성 향상’(23.91%),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하는 현실에서 제도 간 정합성 증대’(17.43%) 순으로 나타남
-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에서의 신고·변경에 따른 업무 책임 소재 불명확’이 4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소지 중심 관리체계의 약화로 인감대장 관리의 일관성 저하’(33.00%),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위·변조 위험의 증가 우려’(21.77%), ‘수도권 및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감 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량 증가’(21.21%), ‘제도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 혼선 및 안내 혼동’(7.01%)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결과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책임 구조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

- 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제도 운영 형태로는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가 3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점진적 확대’(24.37%), ‘바로 개편’(18.15%), 시도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점진적 확대(11.78%), 생활지역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증명 시에 한해 주소지 요건 완화(7.41%)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행정 현장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단계적·검증 중심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줌

□ 현행 인감 업무 시스템의 수용 가능성

- 현행 시스템에서 관할 주소지 외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남
 - 단기적 혼란은 있으나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24.37%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주소지 요건 완화는 수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0.63% (1,059명)로 나타남
 - 또한 신규·변경 신고에 한해 제한적 가능하다는 응답은 27.09%였고, 전혀 문제없다는 의견은 5.91%에 그침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 논의가 시스템·인력·책임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변경 가능 시 인감업무 담당자의 인식

-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
 - ‘전국 어디서나 인감 변경 신고가 가능할 경우 민원인 편의성 향상 효과’에 대해, 인감 업무 담당자들은 ‘매우 효과적’ 17.73%, ‘어느 정도 효과적’ 43.59%로 약 61.32%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효과는 있으나 크지 않음’ 또는 ‘거의 효과 없음’이라는 응답도 약 38.68%에 달해, 효과의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업무 부담 변화 인식
 -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이 일부 또는 매우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총 58.91%로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응답은 총 21.26%, ‘변화 없음’은 18.99%로 나타나, 다수의 담당자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
 - 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필수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는 ‘통합 전산망 구축’이 38.80%로 가장 높았으며, ‘실시간 정보 연계’(19.80%), ‘추가 인력

및 예산 지원'(15.00%), '신원 확인 절차 강화'(14.31%),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교육 등 제공'(8.63%) 순으로 제시됨

□ **인감증명제도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 인식·기대효과·우려사항**

- 인감 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 인식과 기대효과,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감 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의 경우, '매우 찬성' 66.58%, '어느 정도 찬성' 29.13%로 찬성 의견이 95.71%에 달함
 -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시 업무량 변화 예상치 평균은 -17.6%로, 전반적인 업무량이 감소가 기대되나 기관별로 업무량 변화 폭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 주요 기대 효과로는 업무 효율성 향상(52.49%), 관리 실수 및 오류 감소(26.98%),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18.06%), 인감대장 관리의 정확성·일관성 강화(17.99%),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13.69%), 사후 추적과 감사 대응 용이(12.7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시스템 장애나 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38.08%),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 증가 우려(28.66%), 초기 전산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관 오류 및 업무량 과다 발생 가능(26.09%), 인감대장 원본 부재로 진위 확인 및 이력 추적 어려움(25.05%), 새로운 전산시스템 활용 및 적응에 대한 부담(7.52%),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 부담(6.05%) 순으로 나타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

- 인감 업무 담당자가 인식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인감증명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으로는 두 제도를 중심으로 병행하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 전환(37.03%)이 가장 높음

- 이어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단일화 운영(30.85%), 현재와 같이 인감증명제도를 중심으로 병행 유지(17.38%), 국가 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민간기관의 증명제도로 운영(7.56%),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인감증명제도 단일화 운영(4.03%), 민간기관 증명 서비스 추가 병행 운영(2.92%) 순임
- 즉, 향후 인감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며, 제도 간소화와 민간기관 증명제도 활용이 필요함

2. 심층 면접조사 결과 요약

□ 면접조사 결과 종합 결과 개요

- 심층 면접조사 결과,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행정 내부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전산시스템, 금융·등기 실무, 법적 책임 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확인됨
 - 특히 읍면동 공무원, 전산 담당자, 은행관계자, 법원 등기소 관계자의 인식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책임 영역과 리스크 구조에 따라 제도 개선의 수용 가능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인감제도 개선은 단일 해법이 아닌, 쟁점별로 분리된 단계적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역할 조정을 전제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수기 인감대장을 원본으로 하는 이중구조의 제약

- 주소지 요건 완화, 전산 연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대 적용의 가장 큰 제약은 수기 인감대장의 물리적 이동임
 - 이에 따라 인감제도 개선 논의는 주소지 완화 여부 이전에, 수기 인감대장의 법적 지위 조정과 전산 원본화 방향 설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어야 함

□ 전산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인감대장 전산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범위와 목적 설정에 따라 난이도와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정책 과제로 확인됨

- 전수 전산화는 법적 분쟁 대비와 기록 보존 측면에서 이상적이거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사업이 요구됨
- 기준연도 이후·생존자 중심 전산화는 행정 효율·민원 개선에는 효과적이거나, 과거 기록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2003년 이후 구간은 이미 전산 이력이 존재하므로,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관리 가능함
- 전산화는 “해야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인감 전산화와 등기 실무는 직접적 연계 효과가 제한적임

- 인감대장 전산화가 등기 실무에서의 종이 인감 요구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움
 - 등기 실무에서 인감증명서는 진정성 확인의 핵심 방어 수단으로 인식되며, 육안 확인 가능한 종이 문서가 책임 분산 구조의 중심에 있음
 - 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 간 인감증명서 전자 연계(PDF 열람)는 실무에서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서면 등기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함
 - 이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1차 효과가 주민센터 행정부담 완화와 보존·재난 대비에 있으며, 등기 실무 변화는 별도의 정책 축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부진은 ‘신뢰 부족’이 아니라 ‘설계 부적합’의 문제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양식 설계가 실무 환경과 부합하지 않음
 - 위임자·용도 사전 기재 구조는 대량·분업·표준화된 주택담보대출 및 등기 처리 프로세스와 충돌함
 - 기재 내용이 등기 서류와 조금만 달라도 보정·반려 사유가 되어 실무적 이용 가능성이 낮아짐
- 역설적으로 본인서명은 인감과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보안·안전성 측면에서 더 신뢰 가능하다는 평가도 존재

-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도의 위상이 아니라, 양식·해석·실무 지침의 불일치에 있음을 보여줌

□ 인감 축소는 ‘편리화’가 아니라 ‘구조적 유인 설계’의 문제

- 인감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편의성이 확대될 경우 오히려 인감 의존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특히 전자 방식)를 구조적으로 더 편리하고 범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인감 축소에는 효과적임
- 금융기관·법원행정처 모두, 본인서명 양식이 인감처럼 범용화되고 보완 요구의 가능성이 제거된다면 활용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음
 - 인감제도 개선은 단순히 인감 폐지의 여부를 넘어, 제도 선택에 대한 유인구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및 시사점

□ 인감증명제도의 역할과 선택 구조의 제약 존재

- 인감증명제도는 부동산 거래, 은행 거래, 자동차 거래 등 주요 재산권 행사 영역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기 때문’이 크며, 이는 국민이 편의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이용 구조는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간 대체 기능과 선택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

□ 주소지 기반 인감 관리 체계의 한계로 인해 주소지 요건 완화의 실익은 상당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이 일정 비율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감 신규 신고·변경 과정에서 이동 부담, 시간 소요, 휴가 사용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직장, 주거지, 생활권이 분산된 환경에서 주소지 요건은 일부 국민에게 실질적인 행정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할 경우 유용하다는 국민 다수의 인식은 행정서비스가 거주지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인감업무 담당자는 관리 책임의 불명확성,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 제도 개편 시 책임 체계의 명확화와 업무 절차 개선 등 행정 운영 측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소지 요건 완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전면 추진은 현실적 어려움 존재

- 주소지 요건 완화는 국민 불편 완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읍면동 업무 담당자들은 주소지 제한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전산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 주소지 요건 완화는 행정부담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큼
- 특히 수기 인감대장이 원본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비주소지 관할기관에서 접수한 인감대장을 다시 등기·이송해야 하는 구조가 발생함
 - 이 경우 업무량 증가와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며, 주소지 요건 완화는 시·군·구 단위 또는 특정 유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적용과 행정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 인감대장 전산화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인감증명제도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대해 담당자 다수가 찬성한

것은 행정 현장에서도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함

- 따라서 수기 인감대장 관리체계의 전산화와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리발급 및 위임장 확인 절차 개선, 공무원 책임 부담 완화 및 보호장치 강화,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통한 제도 보완, 의사능력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온라인·무인 발급 확대, 업무 지침·교육 및 시스템 표준화 등 다양한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감제도는 물리적 종이·도장 중심에서 전자적 확인 중심으로 증명제도가 전환되는 일종의 과정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행정·전산·사법·금융 전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즉각적 제도 개선이 실무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음
- 그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분리 설정한 점진적 개편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인감제도 개편에 있어 단계적·분리적 접근이 필요

○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분리적 로드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소지 요건 완화의 단계적 적용과 인구·업무 밀집 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
- 2단계: 수기 인감대장의 법적 지위 조정 및 전산화 방향 설정
- 3단계: 전산화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별 비용·효과 분석 및 시범사업 추진
- 4단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양식 개선과 수요처 실무지침 통일
- 5단계: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전자적 확인 방식에서의 점진적 제도 전환

○ 주소지 요건 완화 및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 허용과 같은 개편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시범운영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소지 요건 완화 시 바람직한 운영 형태로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단위부터의 점진적 확대를 우선하는 것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 안정성과 검증을 중시하는 행정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

□ 종합적 시사점

- 인감증명제도 개선은 다수의 세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 ① 주소지 요건 완화, ②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소지 요건 완화는 국민 체감 불편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단계적 적용과 함께 업무밀집 지역에 대한 인력·창구·운영 지원 및 책임 체계의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함
 - 둘째, 수기 인감대장을 원본으로 유지하는 이중구조는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전산화 방향 설정과 범위(전수/부분)별 비용·효과 분석, 그리고 시범 사업의 수행을 통해 방향을 구체화해야 함
 - 셋째, 인감 의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양식·기재 요건을 실무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등기·금융 등 수요처의 통일된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간 ‘대체가능한 선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인감제도에서 점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요처의 이용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 특히, 국민과 업무 담당자 모두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기관의 이용 확대 및 의무화, 접근성 강화, 제도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조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제 4 장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적 효과 추정

제1절 정책적 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및 방법

제2절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 추정

제3절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제4절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정책적 효과 추정

제1절

정책적 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 및 방법

1. 직주불일치의 개념 및 적용

□ 직주불일치의 정의(definition)

-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와 실제 생활권·근무지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의미
- 1960년대 J. Kain에 의해 처음 제시된 것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여성, 소수인종 등 주로 취약계층의 거주지와 고용기회 간의 공간적 간극을 설명하며 등장한 개념임(이민주·박인권, 2016: 69)
 -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인한 도시의 외연 확장 및 교외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용기회 역시 교외화가 두드러졌음에도, 다수의 취약계층은 도심부에 거주하게 되어 그들의 주거와 고용기회가 분리되는 공간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음(Gobillon et al., 2007)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도권 및 지방의 각 지역에서 서울 내 주요 고용 중심지로의 통근이 집중되어 직주불일치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발생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직주불일치와 인감증명제도의 이용

- 이러한 주소지 및 주거지와 주요 생활지역의 공간적 분리는 인감 신고·변경 행태 및 비용에도 영향을 미침
 - 인감 신고·변경은 법규정상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인근이나 생활권 내에서는 처리 불가

- 이러한 제약은 수도권·광역 통근자 등 직주불일치가 큰 집단일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함
 - 인감 신고·변경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인감 미신고·변경 지연 발생
 - 관할 주소지 증명청으로의 이동 및 업무 처리에 있어 행정적·시간적 비용 증가
 - 장거리 이동, 근무시간 중 행정기관 방문, 휴가 사용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및 인구 이동성 증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인감제도의 주소지 중심 신고 원칙과 현실적 생활권의 괴리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인감 업무의 생활권 기반 운영 또는 주소지 요건 완화 필요성 제기

2. 직주불일치 인구의 산정

□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직주불일치 인구의 산정

- 본 연구에서는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라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주불일치 인구를 ‘주민등록상 거주지(주택 주소지)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 등을 이유로 이동하는 인구’로 정의
 - 이러한 직주불일치는 적게는 읍면동 단위의 직주불일치부터 광역지사체 단위의 직주불일치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
-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행정통계자료, 마이크로 데이터, 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지역·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의 효과를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형 수립에 활용함

【표 4-1】 활용데이터 현황

구분	내용	출처
주민등록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대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집계된 지역별, 연령별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 	국가통계포털
사망자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데이터처의 연도별, 지역별, 연령별 사망자수 현황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 	국가통계포털
인감신고·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4 지역별, 연령별 인감 신규·변경 신고 현황 및 2025.8월 기준 지역별, 연령별 인감등록신고 현황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 	행안부 내부자료
인구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E평가정보(DB)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속성 정보(연령, 소득수준, 주택 소재지, 직장 소재지, 카드소비금액, 직업 등)를 연구 목적에 따라 가공 • NICE평가정보는 개인신용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이며, 모형 개발을 위해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및 외부기관들로부터 수집하는 신상정보(주택, 직장주소), 카드소비정보, 추정소득정보 등을 통계화/비식별화하여 구축하고 이를 마이데이터사업에 활용하고 있음 	NICE평가정보

- 이 중 NICE평가정보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속성 정보(연령, 소득수준, 신용카드 지출 이력 및 수준, 거주지 이력 등)를 바탕으로 주택 주소지(거주지)와 주요 생활지역(직장, 학교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⁵⁾

5) 현재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주택 주소지(거주지)와 직장 주소지(생활구역)를 세분화하여 대상 인구규모를 제공하는 자료는 크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의 두 가지 DB가 있으며, 양자의 추정모형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음. 다만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2019년 12월 ~ 2023년 12월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NICE평가정보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하여 비교적 더 최신 시점의 인구이동 정보를 관찰할 수 있음. 또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의 경우 연령대 구간이 20세 이상 ~ 65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10개 구간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NICE평가정보는 20세 이상 ~ 70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11개 구간을 구분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표 4-2 | NICE평가정보 데이터 세부 내용

구분	내용
DB명	인구이동정보(통근)
출처	NICE평가정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CE평가정보 개인 대상자의 거주지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소득/카드소비 정보를 집계해 제공 • 본 데이터는 NICE평가정보가 보유한 개인 대상자 중 만20세~만104세를 대상으로 함
구축기준	NICE평가정보에서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및 외부 기관들로부터 수집하는 거주지 정보, 카드소비정보, 추정소득정보 등을 통계화/비식별화하여 구축
구축방법 및 관련 자료	NICE평가정보 보유 고객 거주지 정보 기반으로 비식별화 및 통계화하여 제공
구축시점	2022.03. ~ 2024.12. (분기별)
항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월 • 자택 소재지(시군구, 행정동(법정동)) • 직장 소재지(시군구, 행정동(법정동)) • 성별 • 연령대구간: 20세 이상 ~ 70세 이상 (5세 단위) • 직업구분(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타(주부/무직/학생 등)) • 자택(행정동) - 직장(행정동)을 쌍으로 하는 대상자의 집계인구수 • 월환산소득 • 월환산 중위소득 • 월평균 카드소비금액 • 경제활동 인구수

제2절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 추정

1.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방법

1) 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 가공

□ 모형 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가공과 융합 방법

- 본 연구는 인감제도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이종 데이터를 통합·가공하여 분석 기반을 구축함
 - 분석 대상 데이터는 주민등록인구, 사망자 통계, 인감신고·변경 현황, 직주불일치(인구이동) 자료의 4종이며, 공공데이터(행정안전부·국가통계포털)와 민간 빅데이터(NICE평가정보)를 결합함
 - 4개 데이터를 지역(광역·기초), 연령대(10세 단위) 단위로 통계 단위를 표준화하여 일치시킨 후, 각 데이터의 시점·범위를 보정하여 결합형 데이터셋을 구성함
- 이를 위해 △지역별, 연령별 사망보정율 △내국인 비중(내국인 외 제외) △주민등록인구수와 인감신고자수 간의 수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거침

【표 4-3】 데이터 가공 절차

구분	내용
주민등록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시군구·연령별 인구 추출 • 연도별 기준(2012~2024년)으로 시계열 정비 • 지역코드 및 연령코드 표준화
사망자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사망률을 반영하여 '생존보정계수(alive rate)' 산출⁶⁾ • 인감신고자수 > 주민등록인구 발생 구간을 고려하여 보정계수 적용
인감 신고·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준 지역별, 연령별 인감등록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인감미등록자 인구 추정 • 연도별 신규·변경건수를 연령대별·지역별로 분류 • 현행 인감등록자 중 내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외 인구(외국인,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자 제외)를 제외한 보정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비중(약 98.5%)으로 보정
인구이동 (직주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속성(주택·직장주소)을 활용하여 직주불일치 비율 산출 • 직주불일치 범위는 ① 읍면동, ② 시군구, ③ 시도 단위로 불일치 정도를 구분 • NICE 집계인구(A)와 주민등록인구(P)를 연계하여 보수·확장 시나리오 설정

□ 데이터 가공을 통한 모형화

- 통합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수혜 인구 규모 계산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시, 인감 신규신고는 연도별 건수에 기반한 연도별 수혜가능인구 규모와 더불어 향후 인감을 신규로 등록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인감 미등록자 중 직주불일치에 해당하는 잠재적 규모를 구분하여 산출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변경신고의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은 연도별 규모로 산출

2) 모형의 가정 및 구조

□ 기본 구조

- NICE평가정보 데이터에서는 2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직주불일치 비율을 산정한 후 20대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를 추정함
 - 직주불일치비율 산정시 데이터는 2024년 12월(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는 다음의 공통 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함

$$\text{수혜인구}_{r,a} = f(P_{r,a}, R_{r,a}^{adj,\theta}, U_{r,a}, m_{r,a,s}, N_{r,a}, M_{r,a})$$

- $P_{r,a}$: 지역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 $R_{r,a}^{adj,\theta}$: 지역별, 연령대별 보정된 인감등록자수⁷⁾

-
- 6)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는 인감관리대상 및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은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고령층, 특히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주민등록인구수보다 인감대상등록건수가 더 크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간극이 더욱 심화됨. 따라서 실제 주민등록인구 중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 인구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누적 사망률을 반영한 보정이 필요함
 - 7) 누적 사망률을 반영한 보정 후, 70대 이상의 인감등록자 비중은 인감등록신고건수의 38.9% 수준으로

- $R_{r,a}^{adj,\theta} = R_{r,a} \times (1 - CumDeathRate_{r,a}) \times DomesticRatio_i$
- $R_{r,a}$: 지역별, 연령별 인감등록신고 건수
- $CumDeathRate_{r,a}$: 2012년~2024년 지역별 누적 사망률
- $DomesticRatio_i$: 2025년 기준 전체 인감등록대상 중 내국인 신고 비중
- $U_{r,a}^\theta$: 지역별, 연령대별 보정된 인감미등록자수(= $1 - R_{r,a}^{adj,\theta}$)
- $m_{r,a,s}$: 지역별, 연령대별, 시나리오별 직주불일치율
- $N_{r,a}$: 지역별, 연령대별 인감 신규 신고자수
- $M_{r,a}$: 지역별, 연령대별 인감 변경 신고자수
 - 편의상 연간 1인 1회 변경신고를 가정하여, 변경건수를 변경자수로 적용

○ 지역별, 연령대별 보정된 인감등록자수의 경우 보정계수 적용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인감신고건수가 주민등록인구수보다 많은 경우가 존재

- 사망률 보정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감신고건수와 주민등록 인구수 간의 음(-)의 차이(주민등록인구보다 인감신고건수가 많을 경우)는 주민등록인구 상한(100% 또는 95%)을 적용하여 보정함⁸⁾

$$R_{r,a}^{adj,\theta} = \min(R_{r,a}^{adj}, (P_{r,a} \times \theta))$$

- $\theta = 1.0$: 보정된 인감등록자수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을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100% 수준으로 상한 보정 적용
- $\theta = 0.95$: 보정된 인감등록자수가 주민등록인구보다 많을 경우 주민등록인구의 95% 수준으로 상한 보정 적용

○ 지역별, 연령대별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각각 2가지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함

- 인감 신규 신고의 수혜 인구규모 추정시, 최근 3년간 평균 신규 신고건수에

조정됨. 2025년 8월 기준 20대 이상 주민등록인구수는 43,457,838명이며, 전체 인감등록신고 건수는 총 42,123,395건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인감등록자수(추정)은 33,404,781명으로 전체 20대 이상 주민등록인구의 76.9%에 해당함

8) 전체 1,374개 관측치(229개 시군구 및 6개 연령대) 중 총 87개 관측치가 해당됨. 구체적으로는 28개 지역에서의 50대(50세~59세) 연령층 구간 및 59개 지역에서의 60대(60세~69세) 연령층 구간임

기반한 연도별 수혜 인구규모와 더불어 향후 인감을 신규로 등록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인감 미등록자 중 직주불일치에 해당하는 잠재적 규모를 구분하여 산출함

- 최근 3년간 인감 신규신고 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긴 하나 그 등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2022년-2024년 연평균 값을 활용
- 인감 신규신고의 경우 한 해의 수혜가능인구 규모와 잠재적 수혜가능인구 규모를 별도로 추정하는 것은 인감 신규신고와 관련한 유량(flow) 및 저장량(stock)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임
 - 유량(flow)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활동과 산출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감 신고의 경우 매년 일정한 수준의 신규 신청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주소지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전체 인감 미등록자가 일시에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인감 신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결정됨
 - 반면 저장량(stock)은 특정 시점에 측정되는 상태(stat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감 미등록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시점에는 인감을 등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그에 따라 주소지 요건 완화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미등록자 규모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 또한 필요
- 인감 변경 신고의 수혜 인구규모 추정시, 최근 3년간 변경 신고건수의 평균값과 함께 가장 최근 연도인 2024년의 변경 신고건수 2가지를 활용함
 - 최근 3년간 인감 변경신고 건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긴 하나,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시나리오별 분석

- NICE평가정보 데이터에서는 2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NICE평가정보 데이터에서 구축된 총 집계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 1/2 ~ 1/3 수준임에 따라 직주불일치율 산정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음
 - 보수 시나리오: 지역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중 NICE평가정보 데이터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은 모두 직주일치를 가정

- $m_{r,a}^{cons} = SM_{r,a} \div P_{r,a}$
- $SM_{r,a}$: 직주불일치 인구 규모
- 확장 시나리오: NICE평가정보의 데이터가 모집단(주민등록인구)을 통계적으로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직주불일치 비율을 전체 인구에 확장 적용
 - $m_{r,a}^{exd} = SM_{r,a} \div A_{r,a}$
 - $A_{r,a}$: NICE평가정보 데이터의 지역별, 연령별 총집계인구

□ 단계별 주소지 요건 완화 방식 고려

- 주소지 요건 완화의 범위는 크게 3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시군구(기초) 단위에서의 주소지 요건 완화, 시도(광역) 단위에서의 주소지 요건 완화,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요건 해제의 3가지가 그것임
 - 시군구(기초)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의 읍면동 단위는 다르나 시군구 단위에서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예: 자택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이며, 직장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인 경우
 - 시도(광역)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의 시군구 단위는 다르나 시도 단위에서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예: 자택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이지만, 직장 주소지는 서울시 강남구인 경우
 - 전국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읍면동 단위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읍면동, 시군구, 시도 단위의 불일치 사례 모두 포함)

3)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모형

□ 다양한 시나리오 및 가정에 기반한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파악에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 및

가정을 반영하여 추정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타당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시나리오 및 가정에 따른 각 조합별 결과는 지역·연령별 세분화된 수혜가능인구 규모 산출에 활용됨
 - 보수 시나리오는 직주불일치율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최소 추정하는 반면, 확장 시나리오는 NICE 집계인구 기준으로 직주불일치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 추정에 가까움
 - 인감등록인구의 상한 조건은 과다 등록지역의 통계적 왜곡을 제거하기 위한 보정 장치에 해당
 - 인감 신규신고 모형은 미등록 인구 중심, 변경신고 모형은 기등록 인구 중심으로 설계됨
- 시나리오 및 가정별 추정 경우의 수
 -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이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는 총 36개임
 - 신규 신고의 경우 단계별 완화방안(3가지 요건 완화) * 2가지 시나리오(보수, 확장) * 대상별 추정(연간 대상자, 잠재 대상자) * 인감등록자수 추가보정(주민등록인구 대비 상한 적용 100% 및 95%)을 고려한 총 24개 경우의 수가 가능함
 - 변경 신고의 경우 단계별 완화방안(3가지 요건 완화) * 2가지 시나리오(보수, 확장) * 산출 방식(연평균, 2024년 기준)에 따라 총 12개 경우의 수가 가능함

표 4-4 | 시나리오 및 가정별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모형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신규 신고(연간)	$\sum_{r,a} \min(N_{r,a}, U_{r,a}) \times m_{r,a}^{cons}$	$\sum_{r,a} \min(N_{r,a}, U_{r,a}) \times m_{r,a}^{exd}$
신규 신고(잠재)	$\sum_{r,a} U_{r,a} \times m_{r,a}^{cons}$	$\sum_{r,a} U_{r,a} \times m_{r,a}^{exd}$
변경 신고(연간)	$\sum_{r,a} \min(R_{r,a}^{adj}, M_{r,a}) \times m_{r,a}^{cons}$	$\sum_{r,a} \min(R_{r,a}^{adj}, M_{r,a}) \times m_{r,a}^{exd}$

□ NICE평가정보 데이터 타당성 검증(robustness check)

- 본 연구에서 직주불일치비율 산정을 위한 NICE평가정보 데이터는 2024년 12월(4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다만 이러한 직주불일치의 패턴에 있어 구조적·지역적 요인 외에 제3요인(시점 차이 또는 계절성 요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시점 및 계절성 요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2분기(6월)부터 2024년 4분기(12월)까지 총 6개 시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가 검증을 실시
- 전체적으로 볼 때 직주불일치 패턴은 시점이나 계절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
 -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직주불일치 패턴은 시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표 4-5 | NICE평가정보 데이터 시점별 직주불일치율 기초통계

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22/2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3	0.24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2
	시도 직주불일치	0.05	0.09
2022/4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2	0.24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2
	시도 직주불일치	0.05	0.09
2023/2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2	0.24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2
	시도 직주불일치	0.05	0.09
2023/4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2	0.24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2
	시도 직주불일치	0.05	0.09
2024/2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2	0.23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1
	시도 직주불일치	0.06	0.09

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24/4분기	읍면동 직주불일치	0.51	0.23
	시군구 직주불일치	0.24	0.21
	시도 직주불일치	0.06	0.09

주: 1) 읍면동 단위 직주불일치: 전체 중에서 자택과 직장의 주소지가 읍면동 단위에서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중
 2) 시군구 단위 직주불일치: 전체 중에서 자택과 직장의 주소지가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에서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중
 3) 시도 직주불일치: 전체 중에서 자택과 직장의 주소지가 시도 단위에서만 다른 경우의 비중

- 분산분석(ANOVA) 결과, 시점 변수의 유의확률은 $p > 0.05$ 로 나타나 계절성 요인이나 외부 충격 등에 다른 평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추가로 시점 가변수(dummy)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직주불일치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를 적용 모형에서는 시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계수의 크기가 작아(0.001 미만)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모형의 설명력이 $R^2=0.995$ 수준으로 매우 높아 시점별 변동이 크지 않음
-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직주불일치 패턴은 시점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2024년 4분기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2. 주소지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⁹⁾

1)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1.0$)

- 보수 시나리오에 의할 때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단계별 주소지 완화 방안에 따라 적게는 56,633명, 많게는 142,802명이 주소지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9) 본 절에서의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대략적인 추정이며, 실제 제도 개선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책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252명 ~ 40,962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7,557명 ~ 33,909명으로 크게 나타남
- 확장 시나리오에 의할 때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단계별 주소지 완화 방안에 따라 적게는 122,135명, 많게는 310,984명이 주소지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146명 ~ 87,629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이 17,257명 ~ 75,763명으로 크게 나타남

[표 4-6] 지역별 연간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56,653	120,226	142,802	122,135	260,679	310,984
서울	7,557	31,781	33,909	17,257	70,894	75,763
부산	2,597	7,066	7,651	6,640	17,736	19,117
대구	1,984	4,284	4,894	5,379	11,587	13,255
인천	2,806	5,693	8,501	6,722	13,755	20,290
광주	1,719	3,703	4,131	3,749	8,098	9,052
대전	1,889	4,185	4,551	3,884	8,740	9,499
울산	1,404	2,988	3,177	2,655	5,682	6,058
세종	720	720	1,155	1,390	1,390	2,184
경기	14,252	28,388	40,962	30,146	59,683	87,629
강원	2,699	3,043	3,167	5,709	6,413	6,695
충북	2,091	4,261	4,549	4,084	8,113	8,675
충남	3,380	5,288	5,759	6,403	9,856	10,725
전북	2,294	3,556	3,664	5,007	7,549	7,805
전남	1,956	2,468	2,685	4,512	5,805	6,310
경북	3,766	4,860	5,245	7,865	10,023	10,888
경남	4,106	6,370	7,184	8,021	12,331	13,902
제주	1,432	1,571	1,620	2,714	3,024	3,138

- 시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1유형)에서 시군구 완화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4-7 | 시군구 유형별 연간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56,653	120,226	142,802	122,135	260,679	310,984
1유형	15,966	33,843	43,696	32,702	68,691	90,305
2유형	6,429	9,575	14,089	13,290	19,992	29,739
3유형	7,557	31,781	33,909	17,257	70,894	75,763
4유형	11,919	26,838	31,579	27,964	63,197	74,311
5유형	12,668	14,593	15,445	26,130	30,012	31,829
6유형	1,414	2,738	3,109	3,018	5,763	6,605
7유형	699	859	975	1,775	2,131	2,432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0.95$)

-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1.0$)와 비교할 때,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의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 보수 시나리오 기준으로 57,696명 ~ 145,453명, 확장 시나리오 기준으로 124,924명 ~ 318,055명으로 2%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표 4-8 | 지역별 연간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57,696	122,572	145,453	124,924	267,244	318,055
서울	8,046	33,082	35,290	18,608	74,541	79,507
부산	2,597	7,066	7,651	6,640	17,739	19,117
대구	1,987	4,292	4,902	5,389	11,621	13,281
인천	2,869	5,831	8,661	6,910	14,166	20,767
광주	1,724	3,711	4,140	3,762	8,120	9,075
대전	1,891	4,191	4,558	3,892	8,759	9,519
울산	1,404	2,988	3,177	2,655	5,682	6,058
세종	720	720	1,155	1,390	1,390	2,184
경기	14,712	29,253	42,028	31,310	62,030	90,350
강원	2,699	3,043	3,167	5,709	6,413	6,695
충북	2,091	4,261	4,549	4,084	8,113	8,675
충남	3,380	5,288	5,759	6,403	9,879	10,725
전북	2,294	3,556	3,664	5,007	7,549	7,805
전남	1,956	2,468	2,685	4,512	5,806	6,310
경북	3,766	4,860	5,245	7,865	10,023	10,888
경남	4,106	6,370	7,184	8,021	12,331	13,902
제주	1,453	1,593	1,642	2,767	3,083	3,197

[표 4-9] 시군구 유형별 연간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57,696	122,572	145,453	124,924	267,244	318,055
1유형	16,333	34,542	44,557	33,619	70,621	92,491
2유형	6,522	9,740	14,293	13,534	20,429	30,272
3유형	8,046	33,082	35,290	18,608	74,541	79,507
4유형	11,993	26,997	31,762	28,184	63,684	74,857
5유형	12,689	14,614	15,467	26,184	30,071	31,888
6유형	1,414	2,738	3,109	3,018	5,763	6,605
7유형	699	860	976	1,777	2,136	2,434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2) 잠재적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1.0$)

- 인감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모형에서는 상당 인구가 주소지 요건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수 시나리오에 의할 때 인감 미등록자 중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단계별 주소지 완화 방안에 따라 적게는 1,001,570명, 많게는 2,454,356명이 주소지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확장 시나리오 기준으로 인감 미등록자 중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더 극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단계별 주소지 완화 방안에 따라 적게는 2,804,493명, 많게는 6,729,797명이 주소지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이러한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인감 미등록자가 일정 시점에 반드시 인감을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질 잠재적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큼

[표 4-10 | 지역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01,570	2,078,046	2,454,356	2,804,493	5,706,844	6,729,797
서울	141,611	571,103	609,211	408,481	1,549,483	1,651,555
부산	49,470	129,223	139,508	164,895	416,682	446,542
대구	39,118	82,044	93,611	135,840	284,161	322,549
인천	45,234	87,684	127,890	143,646	276,460	388,303
광주	30,662	64,751	72,279	84,827	178,493	198,011
대전	33,958	73,660	80,296	86,919	189,926	206,309
울산	25,961	54,788	58,615	62,132	131,170	140,245
세종	12,348	12,348	18,962	28,736	28,736	42,955
경기	236,988	457,237	664,552	653,189	1,233,928	1,804,991
강원	48,149	53,871	56,362	133,056	146,935	153,555
충북	33,792	66,354	71,030	88,376	165,054	175,818
충남	53,130	81,073	87,614	133,436	195,898	209,637
전북	43,577	66,487	68,834	122,505	178,405	184,602
전남	36,585	44,994	49,113	108,408	132,251	143,525
경북	68,560	87,211	95,126	191,320	237,537	260,209
경남	78,002	118,501	133,427	201,946	298,686	334,818
제주	24,426	26,718	27,926	56,783	63,041	66,173

- 시군구 유형별 인감 미등록자 중 주소지 요건 완화로 혜택을 보는 인구 규모는 인구 50만 이상 시(1유형), 광역시 자치구(4유형) 및 도·농복합시(5유형)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군 지역(6유형 및 7유형)에서는 주소지 완화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표 4-11] | 시군구 유형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 = 1.0$)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01,570	2,078,046	2,454,356	2,804,493	5,706,844	6,729,797
1유형	268,062	553,122	714,127	708,567	1,433,628	1,867,652
2유형	112,461	161,859	237,840	303,396	432,806	637,307
3유형	141,611	571,103	609,211	408,481	1,549,483	1,651,555
4유형	215,775	472,319	548,097	653,898	1,419,345	1,632,754
5유형	226,592	257,256	273,468	616,240	690,283	732,587
6유형	23,948	46,244	53,086	68,920	127,935	147,053
7유형	13,121	16,143	18,529	44,991	53,364	60,889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0.95$)

- 주민등록인구 상한 적용시($\theta=1.0$)와 비교할 때,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의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 보수 시나리오 기준으로 1,027,704명 ~ 2,517,886명, 확장 시나리오 기준으로 2,876,206명 ~ 6,904,234명으로 나타남
- 시군구 유형별로 살펴볼 때, 보수 시나리오에서 시군구 단위 주소지 완화 시에는 광역지 자치구(4유형) 및 도·농복합시(5유형) 지역이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크게 나타나, 전국 완화 시에는 서울시 자치구(3유형)의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인구규모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4-12 | 지역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theta = 0.95$)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27,704	2,133,923	2,517,886	2,876,206	5,860,658	6,904,234
서울	151,173	595,923	635,497	436,186	1,620,078	1,726,176
부산	49,470	129,223	139,508	164,895	416,682	446,542
대구	39,275	82,432	94,007	136,393	285,530	323,945
인천	47,320	92,242	133,197	149,963	290,131	404,233
광주	30,990	65,297	72,865	85,685	179,919	199,541
대전	34,098	74,004	80,662	87,345	190,979	207,426
울산	25,961	54,788	58,615	62,132	131,170	140,245
세종	12,348	12,348	18,962	28,736	28,736	42,955
경기	250,031	481,585	694,268	686,893	1,297,278	1,882,479
강원	48,149	53,871	56,362	133,056	146,935	153,555
충북	33,792	66,354	71,030	88,376	165,054	175,818
충남	53,130	81,073	87,614	133,436	195,898	209,637
전북	43,577	66,487	68,834	122,505	178,405	184,602
전남	36,585	44,994	49,113	108,408	132,251	143,525
경북	68,560	87,211	95,126	191,320	237,537	260,209
경남	78,002	118,501	133,427	201,946	298,686	334,818
제주	25,244	27,590	28,800	58,931	65,391	68,529

[표 4-13] 시군구 유형별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주민등록인구 95% 적용시 ($\theta = 0.95$)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27,704	2,133,923	2,517,886	2,876,206	5,860,658	6,904,234
1유형	278,259	572,615	737,900	734,401	1,483,735	1,928,853
2유형	115,284	166,685	243,752	311,177	445,930	653,473
3유형	151,173	595,923	635,497	436,186	1,620,078	1,726,176
4유형	218,486	478,156	554,752	662,052	1,436,865	1,652,727
5유형	227,410	258,128	274,342	618,388	692,633	734,943
6유형	23,948	46,244	53,086	68,920	127,935	147,053
7유형	13,144	16,173	18,559	45,082	53,483	61,009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3) 연간 인감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 최근 3년 평균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 단계별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연간 인감 변경 신고 대상 수혜자 수는 연간 인감 신고 대상 수혜자수 규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상당수가 인감을 이미 신고한 상태로 미등록자가 많지 않기에, 변경 신고가 신규 신고에 비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보수 시나리오에 의할 때 인감 변경 신고자 중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최소 103,595명부터 229,78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확장 시나리오에 의하면 인감 변경 신고자 중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최소 245,624명에서 540,784명으로 추정됨

| 표 4-14 | 지역별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최근 3년 평균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3,595	197,473	229,789	245,624	466,477	540,784
서울	11,735	38,967	41,629	31,897	100,238	106,690
부산	4,625	12,065	13,085	12,489	32,012	34,387
대구	3,500	7,593	8,625	9,334	20,414	23,057
인천	5,105	410,341	14,170	13,170	26,567	35,629
광주	3,209	6,733	7,419	7,122	14,951	16,413
대전	2,851	6,397	6,903	6,264	14,082	15,149
울산	2,582	5,415	5,707	5,112	10,756	11,329
세종	996	996	1,714	2,019	2,019	3,437
경기	25,679	48,972	66,868	59,495	111,998	153,393
강원	5,240	5,900	6,049	11,827	13,223	13,551
충북	3,560	6,788	7,125	7,899	14,433	15,117
충남	5,939	8,671	9,280	13,157	18,602	19,771
전북	5,419	7,863	8,002	13,011	17,964	18,266
전남	4,384	5,369	5,716	11,185	13,717	14,640
경북	6,905	8,975	9,540	16,224	20,627	22,004
경남	8,714	12,973	14,443	18,900	27,567	30,500
제주	3,151	3,454	3,515	6,520	7,309	7,451

○ 시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1유형) 및 도·농복합시(5유형) 지역에서 주소지 요건 완화시 인감 변경 신고의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4-15] 시군구 유형별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최근 3년 평균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3,595	197,473	229,789	245,624	466,477	540,784
1유형	27,671	56,571	70,251	60,802	123,191	154,315
2유형	12,714	18,653	25,642	29,044	42,379	58,052
3유형	11,735	38,967	41,629	31,897	100,238	106,690
4유형	20,929	46,300	53,194	51,234	113,404	129,478
5유형	25,403	28,718	29,900	58,186	65,315	67,907
6유형	3,157	5,903	6,609	8,168	14,643	16,403
7유형	1,986	2,362	2,564	6,293	7,308	7,939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 인감 변경신고의 경우 '22~'24년 사이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를 적용하여 인감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를 추정하면, 연평균 변경건수 적용시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가 도출됨
- 보수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할 때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103,595명에서 229,789명까지 분포하며, 확장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규모는 245,624명에서 540,784명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완화 방안에서는 경기도의 인감 변경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서울, 경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 순서로 높게 나타나나 경남에 비해 인천의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소폭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전국 주소지 요건 완화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편의성 향상 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4-16] 지역별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3,378	197,837	230,834	241,685	459,976	534,372
서울	11,623	38,915	41,565	31,051	97,881	104,149
부산	4,526	11,862	12,870	12,023	30,962	33,263
대구	3,515	7,653	8,691	9,205	20,235	22,846
인천	5,146	10,425	14,304	13,062	26,333	35,308
광주	3,200	6,718	7,392	6,966	14,631	16,032
대전	2,872	6,428	6,939	6,198	13,912	14,966
울산	2,590	5,437	5,728	5,061	10,651	11,208
세종	1,016	1,016	1,762	2,026	2,026	3,487
경기	26,093	49,975	68,560	59,744	112,872	155,073
강원	5,183	5,841	5,984	11,581	12,963	13,271
충북	3,503	6,748	7,077	7,654	14,117	14,765
충남	5,925	8,665	9,283	12,948	18,315	19,479
전북	5,371	7,847	7,980	12,689	17,639	17,917
전남	4,270	5,266	5,583	10,825	13,359	14,184
경북	6,826	8,895	9,435	15,836	20,192	21,488
경남	8,566	12,692	14,172	18,345	26,648	29,563
제주	3,153	3,452	3,510	6,470	7,242	7,373

○ 시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1유형)과 광역시 자치구(4유형, 그리고 도·농복합시(5유형) 지역 중심으로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크게 나타남

- 다만 시군구 완화 방안시에는 도·농복합시(5유형)의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광역시 자치구(4유형)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전국 완화시에는 광역시 자치구(4유형)가 도·농복합시(5유형)에 비해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대폭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전국 완화시에는 서울시 자치구(3유형) 지역 또한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7 | 시군구 유형별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 추정: 2024년 기준 변경신고건수 적용시
(단위: 명)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④ 시군구 완화	⑤ 시도 완화	⑥ 전국 완화
전국	103,378	197,837	230,834	241,685	459,976	534,372
1유형	27,950	57,326	71,608	60,690	123,292	155,206
2유형	12,826	18,840	25,951	29,013	42,377	58,061
3유형	11,623	38,915	41,565	31,051	97,881	104,149
4유형	20,895	46,240	53,163	50,268	111,313	127,106
5유형	25,136	28,458	29,613	56,829	63,867	66,335
6유형	3,077	5,829	6,521	7,895	14,346	16,039
7유형	1,871	2,229	2,413	5,941	6,899	7,477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제3절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1.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방법

1) 업무량 변화 추정을 위한 모형의 기본 가정

□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및 부담의 가능성

-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한 국민 편의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선이 행정적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인감증명제도의 주소지 요건 완화는 국민 입장에서 신고·변경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직주불일치 인구(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관할 주소지 요건의 제한 완화는 이용 편의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반대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편의성 증대가 곧 업무량 증가·행정 처리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그에 따라 주소지 요건 완화가 초래하는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작업 또한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감증명제도의 주소지 요건 완화가 시행될 경우 실제 행정업무량(인감 신고·변경 민원 건수)이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측하고자 함
 - 앞서 주소지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분석은 자택 주소지(관할 증명청)를 기준으로 ‘수혜 인구’를 추정한 반면, 업무량 변화에 대한 분석은 직장 주소지(생활권 기준)를 활용하여 민원이 실제 발생하는 위치, 즉 행정수요의 이동 방향을 파악함에 초점을 둠
 - 이는 제도 완화가 단순히 국민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행정기관 간 업무량의 재배분(reallocation)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기 위함임

□ 분석의 기본 구조

○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업무량 변화는 다음의 구조를 기반으로 산출함

$$\text{업무량 변화}(\beta) = \frac{B_i - N_i}{B_i^T} \times 100 (\%)$$

- B_i : 읍면동 주민센터 i 의 기존 인감 업무 이용 인구
 - $B_i = B_i^E + B_i^N + B_i^C + B_i^M$
 - B_i^E : 읍면동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
 - B_i^N : 시군구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
 - B_i^C : 시도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
 - B_i^M : 시도 단위에서 자택-직장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이용 인구
 - N_i : i 읍면동에 직장이 있는 인감 이용 인구
 - $N_i^T = N_i^E + N_i^N + N_i^C + N_i^M$
 - N_i^E : 읍면동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이며, B_i^E 와 동일
 - N_i^N : i 읍면동에 직장이 있고, 시군구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타 읍면동으로 통근·통학)
 - N_i^C : i 읍면동에 직장이 있고, 시도 단위에서 자택과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는 이용 인구(타 시군구로 통근·통학)
 - N_i^M : i 읍면동에 직장이 있고, 시도 단위에서 자택-직장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이용 인구(타 시도로 통근·통학)
- 직주불일치 인구의 경우 주소지 요건 완화 이후 직장, 학교 등 자신의 주 생활지에서 인감 신고·변경 업무를 처리한다고 가정함
- 100의 값을 기준으로 업무량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인감업무 수요의 순유입, 100보다 작을 경우 인감업무 수요의 순유출로 이해될 수 있음

2) 주소지 요건 완화 범위에 따른 업무량 변화 측정 모형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측정 모형

○ 시군구 주소지 요건 완화 범위에 따른 측정 모형

$$\beta^C = \frac{B_i^T - B_i^N + N_i^N}{B_i^T} \times 100 (\%)$$

-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i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감 이용 인구 중 읍면동 단위에서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인감 이용 인구(유출)를 제외하고, 타 읍면동 거주자 중 i 지역에 직장이 소재한 인감 이용 인구(유입)를 더한 값으로 계산됨¹⁰⁾

○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범위에 따른 측정 모형

$$\beta^M = \frac{B_i^T - B_i^N - B_i^C + N_i^N + N_i^C}{B_i^T} \times 100 (\%)$$

-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i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감 이용 인구 중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에서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인감 이용 인구를 제외하고, 타 시군구 거주자 중 i 지역에 직장이 소재한 인감 이용 인구를 더한 값으로 계산됨

○ 전국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범위에 따른 측정 모형

$$\beta^{Nat} = \frac{B_i^T - B_i^N - B_i^C - B_i^M + N_i^N + N_i^C + N_i^M}{B_i^T} \times 100 (\%)$$

-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 i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감 이용 인구 중 읍면동·시군구·시도 단위에서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인감 이용 인구를 제외하고, 타 지역 거주자 중 i 지역에 직장이 소재한 인감 이용 인구를 더한 값으로 계산됨

- $\beta^{Nat} = \frac{N_i^T}{B_i^T} \times 100 (\%)$ 와 같은 값을 가짐

10) 자택 주소지와 직장 주소지가 모두 i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B_i^E) 그대로 주민센터 i 에서 업무를 처리함

□ 시나리오에 기반한 업무량 변화 추정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파악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 추정 또한 보수 및 확대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추정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타당성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함
 - 보수 시나리오는 직주불일치율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최소 추정하는 반면, 확장 시나리오는 NICE 집계인구 기준으로 직주불일치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 추정에 가까움

2.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1)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 지역별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시 업무량의 상대적 변화를 계산한 결과, 보수 시나리오의 업무량의 평균 변화율은 104.05%로, 확대 시나리오의 평균 변화율은 113.91%로 나타나 시군구 주소지 요건 완화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약 14% 수준까지 상대적 행정업무량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시도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시 업무량의 상대적 변화는 보수 시나리오 기준 109.28%, 확대 시나리오 기준 123.22%로 나타남¹¹⁾
- 전국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시 업무량의 상대적 변화를 계산한 결과, 전국 평균 업무량 변화는 보수 시나리오 기준 111.27%, 확대 시나리오 기준 126.68%로, 이는 곧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할 경우 행정업무가 약 11%~2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137.66%), 광주(136.75%), 세종(142.71%) 등 대도시권·업무중심권에서 변화율 증가가 두드러져,

11)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처럼 광역-기초-읍면동의 3단계 구조가 아닌 광역-읍면동의 2단계 구조를 보이므로,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와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의 결과값이 동일하게 도출됨

생활권 중심의 행정수요가 대도시 및 업무중심지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인천(99.07%), 경기(109.21%) 등의 지역은 전국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시 업무량 증가가 기존 시도 완화 방안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감업무 수요의 외부 유출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인감 신고·변경의 주소지 요건 완화시 현재에 비해 지역별·기관별 업무량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표 4-18 | 지역별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단위: %)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대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전국	104.05	109.28	111.27	113.91	123.22	126.68
서울	100.64	120.08	137.95	99.76	110.72	137.66
부산	101.74	110.88	112.41	104.14	122.09	126.95
대구	101.85	107.09	106.11	106.45	123.91	121.38
인천	100.33	102.70	98.87	100.58	109.80	99.07
광주	105.41	113.63	112.80	117.64	138.65	136.75
대전	101.92	105.20	106.33	106.24	115.37	118.42
울산	105.19	108.86	110.95	114.58	121.75	128.53
세종	111.36	111.36	111.20	134.72	134.72	142.71
경기	103.78	106.78	102.98	113.30	119.29	109.21
강원	106.35	107.70	107.73	125.08	130.76	131.53
충북	104.76	108.60	109.46	117.49	130.35	133.85
충남	105.04	106.63	110.08	119.21	124.70	135.73
전북	104.11	106.15	106.13	116.89	125.47	125.62
전남	105.77	106.96	108.23	120.19	124.79	130.65
경북	107.27	110.34	112.42	125.94	134.47	141.15
경남	105.64	109.50	110.03	117.78	128.83	130.30
제주	104.07	104.59	104.31	112.26	114.73	114.05

□ 시군구 유형별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 주소지 요건 완화 시나리오별 업무량 변화를 시군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업무 증가의 강도는 상이하게 나타남
 - 전국 평균 기준 업무량 지수는 보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시군구 완화 104.05%, 시도 완화 109.28%, 전국 완화 111.27%,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시군구 완화 113.91%, 시도 완화 123.22%, 전국 완화 126.68%로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완화 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지역유형별로는 이러한 평균적 경향과 다른 양상이 확인되어, 주소지 요건 완화의 영향이 지역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함을 시사

【표 4-19】 시군구 유형별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변화 추정

(단위: %)

지역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대 시나리오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① 시군구 완화	② 시도 완화	③ 전국 완화
전국	104.05	109.28	111.27	113.91	123.22	126.68
1유형	105.82	110.51	108.08	113.11	121.86	114.93
2유형	106.38	107.58	107.02	121.26	124.48	124.65
3유형	100.64	120.08	137.95	99.76	110.72	137.66
4유형	102.16	108.16	107.57	106.08	121.00	119.57
5유형	108.70	110.08	110.75	134.37	139.59	141.86
6유형	102.54	105.75	107.03	113.36	124.36	129.24

주: 1유형: 인구 50만 이상 시, 2유형: 인구 50만 이하 시, 3유형: 특별시 자치구, 4유형: 광역시 자치구, 5유형: 도·농 복합시, 6유형: 인구 5만 이상 군, 7유형: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을 의미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 부담의 증가 경향

- 전반적으로 주소지 요건의 완화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반적인 행정 부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주소지 요건 완화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될수록 인감 신규·변경 업무에 대한 수요가 일부 지역·증명청에 집중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줌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단순한 민원 분산 효과를 넘어, 특정 지역으로의 행정수요 재배치를 동반하는 제도 변화에 해당함을 시사함
- 대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업무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생활권 중심 행정수요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됨
 - 서울은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시군구 완화 단계에서는 99.76%로 평균 이하 수준을 보이나, 시도 완화(110.72%), 전국 완화(137.66%) 단계에서 급격한 업무량 증가를 보이며 전국 완화 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 역시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국 완화 시 120~130% 이상의 업무량 변화를 기록하여, 광역 거점도시가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업무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크게 흡수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광주(138.56%), 경북(141.15%), 충남(135.73%) 등은 시도·전국 단위 완화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여, 주소지 요건 완화시 광역권 내 중심 지역으로의 행정수요의 편중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수도권 일부 지역과 인접 대도시에서는 완화 범위 확대에 따라 상대적 업무량 감소 또는 증가폭의 둔화 현상이 나타남
 - 인천은 시군구 및 시도 완화 단계에서는 업무량이 100% 이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나, 전국 완화 시 100% 미만으로 낮아져, 전국 단위 완화 시 인감업무에 대한 수요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시사함
 - 경기도 역시 시도 완화에 비해 전국 완화 시 업무량이 소폭 하락하여, 수도권 내부에서 중심도시로의 수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패턴은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업무의 조정이 개별 증명청 단위에서 고르게 분산되기보다는, 지역 간 업무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도 단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완화 범위 확대에 따라 업무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다수의 도 지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평균 100% 이상의 업무량 지수를 기록하며, 특히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국 완화 시 증가 폭이 확대됨

- 이는 광역시 외 지역에서도 광역 단위 행정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일정 수준의 신규 행정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도청 소재지 또는 중심 시·군 중심의 업무 집중 가능성을 내포함
- 이는 실제 개별 주민센터의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전국 3,549개 주민센터 중, 시군구 주소지 요건 완화시 1,715개소(48.3%), 시도 주소지 요건 완화시 1,649개소(46.5%),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 가능시 1,619개소(45.6%)에서 업무량 증가가 발생하여, 완화 방식에 따라 증가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행정 전달체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임을 시사함
-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나,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 양상은 다름
 - 서울은 시군구 요건 완화시 154개소, 시도 요건 완화시 85개소, 전국 완화시 96개소에서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화 방식에 따라 업무 증가의 범위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전국 완화 또는 광역 단위 완화 시,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거점 주민센터로 수요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4-20 | 인감 신고·변경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분포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전체 주민센터수 (T)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A)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B)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C)
전국	3,549	1,715	1,649	1,619
서울	426	154	85	96
부산	205	89	69	69
대구	150	56	60	56
인천	156	63	54	48
광주	96	43	33	32

지역 구분	전체 주민센터수 (T)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A)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B)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 (C)
대전	82	31	28	28
울산	55	20	17	19
세종	24	11	11	11
경기	601	281	258	210
강원	188	109	120	118
충북	153	83	93	94
충남	208	122	121	127
전북	243	131	145	144
전남	297	139	153	162
경북	322	188	201	204
경남	305	169	176	176
제주	38	26	25	25

주: 1)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직주불일치 정보가 결측값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임
 2) 보수 시나리오와 확대 시나리오 모두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는 동일하게 나타남

2)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정책적 효과 추정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단계별·시나리오별 추정모형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

- 앞서 분석한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에서 단계별·시나리오별 최소값을 기준으로 한 추정결과를 정리·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단계별 주소지 요건 완화 방안은 ① 시군구 단위에서의 요건 완화, ② 시도 단위에서의 요건 완화, ③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 가능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보수 시나리오(최소 추정치)와 확장 시나리오(최대 추정치)로 추정 결과값을 산출함

| 표 4-21 | 단계별·시나리오별 추정모형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 최소값 기준
(단위: 명)

구분		보수 시나리오	확장 시나리오
신규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56,653	122,135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20,226	260,679
	전국 어디서나 가능	142,802	310,984
신규 신고 (잠재)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001,570	2,804,493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2,078,046	5,706,844
	전국 어디서나 가능	2,454,356	6,729,797
변경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03,378	241,685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97,473	459,976
	전국 어디서나 가능	229,789	534,372

□ 인감 신규 신고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연간 수혜가능인구 규모

-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연간 인감 신규 신고 수혜인원은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56,653명,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122,135명이 추정됨
 - 반면 시도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방안의 경우 보수 시나리오 기준 120,226명, 확장 시나리오 기준 260,679명으로 결과값이 산출됨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142,802명,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310,984명의 수혜인원 규모가 산출됨
 - 인감 신고·변경의 관할 주소지 완화 범위가 커질수록 접근성·편의성 증가로 연간 신규 신고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감 신규 신고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잠재적 수혜가능인구 규모

-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잠재적 인감 신규 신고 수혜인원은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1,001,570명,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2,804,493명이 추정됨
 - 시도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방안의 경우 보수 시나리오 기준 2,078,046명, 확장 시나리오 기준 5,706,844명으로 결과값이 산출됨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2,454,356명,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6,729,797명의 수혜인원 규모가 산출됨

- 주소지 요건 완화가 단기간 인감 신규 신고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도 개선시 중·장기적으로 주소지 요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감 미등록자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 인감 변경 신고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연간 수혜가능인구 규모

-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연간 인감 변경 신고 수혜인원은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103,378명, 확장 시나리오에는 241,685명이 추정됨
 - 시도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방안의 경우 보수 시나리오 기준 197,473명, 확장 시나리오 기준 459,976명으로 결과값이 산출됨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해질 경우 보수 시나리오에서는 229,789명, 확장 시나리오에서는 534,372명의 수혜인원 규모가 산출됨
 - 현행 인감 보유자가 인감도장 및 성명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의 편의성 개선 효과 또한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소지 요건 완화의 범위 확대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관찰됨

- 주소지 요건의 완화 범위가 확대될수록 인감 신고·변경 대상자 중 수혜가능인구 규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단계에서 시도 단위로 주소지 요건 완화의 범위 확대시 추가 증가폭이 크게 관찰되어, 편의성 및 접근성의 비약적 상승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반면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효과와 비교할 때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고·변경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시군구 → 시도 요건 완화시에는 2배 수준으로 수혜가능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시도 → 전국 요건 완화시에는 약 20% 수준의 수혜가능인구 규모 상승이 확인되고 있음
 - 이는 향후 단계별 주소지 요건 완하시, 업무량 변화의 부담 및 업무 통일성을 고려한다면 시도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를, 국민 편의성 및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의 방안을 택일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함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의 증가 경향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량 변화 추정 결과, 전국 평균 업무량 지수는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완화 범위 확대에 따라 행정업무 부담이 누적되는 경향이 확인됨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단순히 민원 처리의 편의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원의 발생 위치를 생활권 중심으로 이동시켜 특정 지역으로의 행정수요 집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및 업무중심권에서 업무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생활권 중심 행정수요의 집중 가능성이 확인됨
 - 예컨대 확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완화 시 서울(137.66%), 광주(136.75%), 세종(142.71%) 등은 상승폭이 큰 반면, 인천(99.07%), 경기(109.21%) 등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완화 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수도권 내부에서도 중심지로 수요가 재배치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전국적으로 균등한 업무량 증가가 아닌 지역 간 업무량의 편중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업무량) 변화는 업무의 재배치 및 편중을 초래함

- 주소지 요건 완화 조치 시행 시 지역 간 업무량 편차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전국 단위 완화 시 대도시·광역 거점에서의 업무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정 지역이나 읍면동에 대한 업무 집중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별 인력·창구·전산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력 재배치, 전자적 확인수단 확대, 예약제·분산처리체계 도입 등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됨
- 주소지 요건 완화는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업무 증가의 시점·강도는 뚜렷하게 달라질 수 있음

- 전국 단위 주소지 요건 일괄 완화는 대도시·업무 중심지에 과중한 업무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책 설계 시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완화 단계의 구분과 함께 차등적 행정지원 및 인력 배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주소지 요건 완화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통해 업무량 변화·행정 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요건 완화의 단계적 적용과 행정 지원을 결합한 정책 설계 필요

- 종합해 볼 때, 주소지 요건 완화는 민원인 편의성 확대라는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나, 행정수요 이동으로 인한 지역 간 업무 부담 격차의 확대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첫째, 주소지 요건 완화는 단일 수준의 일괄 적용보다는 시군구 → 시도 → 전국의 단계적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각 단계에서 업무량 변화, 순유입 상위 지역, 민원 처리시간(대기·처리), 전산 조회 및 확인 부담 등을 점검하는 중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업무 집중이 예상되는 대도시 및 광역 거점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창구·전산 인프라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력의 탄력적 재배치, 혼잡관리(사전예약·분산접수), 전자적 확인수단 확대, 표준 업무지침 배포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소지 요건 완화의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국 완화 이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행정 지원 및 인력 재배치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업무의 혼란·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4절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경제적 효과 추정의 가정 및 고려사항

1) 경제적 효과 분석 개요

- 경제적 효과 추정은 인감대장의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분석결과를 통해 전산화 사업 시행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본 절에서는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틀을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비용편익 비율(B/C ratio: Benefit/Cost ratio), 순현재 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 이 중 비용편익 비율과 순현재가치 기법을 적용하여 인감대장 전산화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 인감대장 전산화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라,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민원 처리방식의 구조적 변화와 수기 인감대장의 폐지를 통한 업무방식의 전환을 동반하는 변화임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교적 단기간 집행되는 반면, 그에 따른 편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누적 발생하게 됨
 - 그에 따라 단년도 비교가 아닌 중장기 관점의 경제적 효과 추정이 요구됨

□ 분석의 기본 접근

-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효과 추정은 다음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수행함
 - 비용과 편익의 차이(Net Present Value, NPV)

- 비용 대비 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B/C)
-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한 누적 편익의 규모 및 범위
- 이를 통해 인감대장 전산화가 단순히 편익이 존재하는가를 넘어 어느 수준의 편익 가정에서, 어떤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인감대장 전산화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함
 - 특히 편익 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기반 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는 경제적 효과의 추정을 시도하고자 함

□ 경제적 효과 추정의 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경제적 편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민원인 편익은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민원인 시간·비용 편익을 산정함
 - 이와 함께 인감대장 전산화로 수기 인감대장이 폐지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편익을 고려함
- 이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핵심 정책 효과가 ① 대국민 민원 접근성 개선과 ② 행정 내부 업무 부담·비용 완화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 인감제도의 신뢰도 제고, 행정 오류 감소,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간접적·상징적 파급효과 등 정량화가 어려운 비시장적 효과는 본 절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서는 제외하고, 종합 정책 판단 단계에서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함

2) 편익 및 비용 산정의 기본 가정

□ 민원인 편익 산정의 기본 가정

- 인감대장 전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주소지 요건에 따른 인감 신고·변경 제한이 완화되어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인감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민원인 편익은 '기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상황과 비교하여 생활권 내 또는 현재 체류지 인근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의 완화'로 정의함

- 이를 고려할 때 민원인 편익은 다음의 두 요소로 구성됨
 - 이동시간 절감에 따른 시간가치 편익
 - 이동에 수반되는 교통비 절감 편익
- 다만, 민원인의 실제 이용 행태, 주소지-생활권 간 거리, 민원 처리 빈도 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는 민원인 편익을 보수적 시나리오와 확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산정함
 - 이를 통해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이 최소 어느 수준에서 발생하는지, 제도 변화가 확대될 경우 편익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범위로 제시함
- 민원인 편익은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혜가능인구의 이동시간 절감(시간가치) 및 교통비 절감으로 구성하며, 제3장의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 결과를 활용
 - 주소지 완화 수준별(시군구/시도/전국) 수혜가능인구가 중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완화 수준에 해당하는 증분 수혜가능인구를 산정하고 이를 순 수혜가능인구(net beneficiary population)로 정의함
 - 즉, 전국 단위 완화 시 수혜가능인구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완화 시 수혜가능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 합산할 경우 편익이 과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완화 수준 간 중복을 제거한 순 수혜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편익을 산정함
 -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는 해당 수준의 총 수혜가능인구로, 시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완화에 따른 수혜가능인구는 각각 직전 주소지 요건 완화 수준 대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증분 수혜가능인구로 정의하여 분석에 적용함

| 표 4-22 | 보수 시나리오 기준 수혜가능인구 규모

(단위: 명)

구분		보수 시나리오	△ 수혜가능인구
신규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56,653	56,653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20,226	63,573
	전국 어디서나 가능 (타 시도 이동)	142,802	22,576
변경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03,378	103,378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97,473	94,095
	전국 어디서나 가능 (타 시도 이동)	229,789	32,316

| 표 4-23 | 확대 시나리오 기준 수혜가능인구 규모

(단위: 명)

구분		보수 시나리오	순(net)수혜가능인구
신규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122,135	122,135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260,679	138,544
	전국 어디서나 가능 (타 시도 이동)	310,984	50,305
변경 신고 (연간)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241,685	241,685
	시도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459,976	218,291
	전국 어디서나 가능 (타 시도 이동)	534,372	74,396

□ 행정 내부 편익 산정의 기본 가정

- 인감대장 전산화의 또 다른 핵심 효과는 수기 인감대장 관리 체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공무원 업무 부담의 구조적 감소와 행정 운영비 절감임
 - 현재 인감 관련 업무는 인감 신고·변경 처리, 수기 인감대장 작성 및 사후 정리, 대장 보관·이송 및 관리 등 복수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행정 내부 편익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함
 - 공무원 업무량 절감 편익: 인감 신고·변경 및 수기 인감대장 관리 업무의 축소로 인해 공무원이 투입하는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효과
 - 행정 운영비 절감 편익(이송비용 절감): 주소지 이전 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수기 인감대장의 물리적 이송이 전산화로 인해 불필요해짐에 따라, 등기우편 등 이송에 소요되던 직접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 공무원 업무량 절감 편익은 인감 신고·변경의 순수 처리시간 감소만을 반영한 보수적 추정 방식과 인력 규모, 급여 수준, 인감업무 비중을 활용하여 수기대장 관리 등 구조적 업무 부담 감소를 환산한 확대 추정 방식으로 구분함
 - 한편, 이송비용 절감 편익은 민원 이용 행태나 공무원 개인의 업무 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전산화 도입 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판단하여, 보수·확대 구분 없이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반영함
- 이러한 이중적 접근을 통해 행정 내부 편익을 단일의 추정치로 제시하는 데 따른 과대·과소 평가 가능성을 완화하고, 인감대장 전산화가 공무원 노동 부담과 행정 운영비 절감의 양 측면에서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산화 비용 산정의 기본 가정

- 본 연구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인감대장 전산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산정하거나 공학적 모델링을 통해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이는 본 연구가 정보시스템 설계·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적 연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연구 기간·범위·예산상 전산화 비용을 자체적으로 정밀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실무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값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함
 - 전산화 비용은 기존 인감대장의 물량 규모와 기록 형식을 고려하여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스캔, 이미지 보정·검증,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등 실제 전산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또한 본 비용은 인건비 및 제경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금액으로 설정됨

- 본 연구는 이러한 비용 산정 방식을 통해 전산화 비용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기보다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현실적 수준의 비용을 전제로 인감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둠

3) 기타 고려사항

□ 비용 구조와 분석기간에 대한 고려

- 인감대장 전산화 비용은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연계 개발 등을 포함한 초기 구축비 중심의 비용 구조를 가짐
 - 반면, 편익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시스템이 유지·운영되는 한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비용-편익 구조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단년도 기준의 비교는 전산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본 연구는 전산화 비용은 초기 일시 비용으로, 편익은 매년 반복 발생하는 흐름으로 설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

□ 시나리오 기반 분석을 통한 경제성 민감도 검토

- 본 연구는 민원인 편익(보수/확대)과 공무원 업무량 절감 편익(보수/확대)을 조합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
 - 이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을 특정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현실 가능성 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OECD, 2005)
 - 이러한 가정과 분석 틀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비용 대비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전산화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함
- 또한 공공부문 비용-편익 분석 관행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함
 - 할인율 설정에 따른 분석 결과의 민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 할인율이 아닌 복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결과를 비교함

- 이는 인감대장 전산화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되는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할인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임

2.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 모형 설계

□ 모형의 기본 구조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가치는 전산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편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전산화 구축 비용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 분석모형으로 정의함
 - 본 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편익을 산정하여 총편익을 구성함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민원인 편익
 -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따른 공무원 업무량 절감 편익
 - 주소지 이전 시 대장 이송에 소요되던 등기비용의 이송비용 절감 편익
 - 비용은 행정안전부 및 전산 구축·운영 실무 관계자로부터 제공된 전산화 구축 비용을 외생적으로 적용함

□ 민원인 편익 계산 모형: 이동시간 절감 편익 + 이동비용 절감 편익

- 이동시간 절감(시간가치) 편익은 완화 수준별 왕복 이동시간 가정(t)과 시간가치(w)를 곱하여 산정함
 - 편의상 각 완화 수준별 왕복 이동시간은 다음으로 가정함
 - 시군구 주소지 요건 완화(t^n): i 읍면동에서 j 읍면동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편도 30분, 왕복 1시간으로 가정
 - 시도 주소지 요건 완화(t^c): i 시군구(기초)에서 j 시군구(기초)로 이동하는 시간은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으로 가정
 - 전국 주소지 요건 완화(t^m): i 시도(광역)에서 j 시도(광역)로 이동하는 시간은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으로 가정
 - 시간가치(w)는 보수적 추정을 위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

- 이동시간 절감 편익의 계산

$$B_y^{time} = [(\Delta BP_{nw}^n \times \Delta BP_{chg}^n) \times t^n + (\Delta BP_{nw}^c \times \Delta BP_{chg}^c) \times t^c + (\Delta BP_{nw}^m \times \Delta BP_{chg}^m) \times t^m] \times w$$

- BP_{nw} : 연간 인감 신규신고 수혜가능인구
- BP_{chg} : 연간 인감 변경신고 수혜가능인구

○ 교통비 절감 편익은 완화 수준별 왕복 교통비(c)를 적용하여 산정함

- 편익상 읍면동 간 및 시군구 간 이동에 따른 비용은 동일 생활권으로 가정하여 시내버스 왕복 교통요금 3,200원(1,600원×2) 수준으로, 시도 간 이동에 따른 비용은 광역버스 왕복 교통요금 6,400원 (3,200원×2)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함
- 교통비 절감 편익의 계산

$$B_y^{fare} = (\Delta BP_{nw}^n \times \Delta BP_{chg}^n) \times c^n + (\Delta BP_{nw}^c \times \Delta BP_{chg}^c) \times c^c + (\Delta BP_{nw}^m \times \Delta BP_{chg}^m) \times c^m$$

○ 따라서 민원인 연간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B_y^{BP} = B_y^{time} + B_y^{fare}$$

□ 행정 내부 편익 계산 모형: 업무부담 완화 편익 + 이송비용 절감 편익

- 업무부담 완화 편익은 전산화로 수기 인감대장 관리 및 인감 신고·변경 처리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공무원 노동투입이 절감되는 효과로 정의함
 - 본 연구는 경제성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시간×건수) 방식과 확대(인력×연봉×업무비중) 방식을 병행함¹²⁾

12) 설문조사 결과, 업무 담당자들은 인감의 신규 신고 및 변경 처리에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하였으나, 해당 응답은 개별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순수 처리시간을 중심으로 인식된 결과로, 수기 인감대장의 작성·정리·보관, 주소지 이전에 따른 대장 이송, 관련 민원 응대 및 사후 관리 업무 등 부수적·간접적 업무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은 처리시간×처리건수 방식에 의한 편익 산정은 전산화에 따른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 효과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음 (보수적 추정 결과). 반면, 공무원 인력을 중심으로 한 노동 투입 절감 효과 산정은 전산화로 인해 수기 인감대장 관리·이송 업무가 구조적으로 폐지되고, 인감 신고·변경 관련 민원 처리 과정 전반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산화의 제도적·구조적 효과를

- 보수추정 방식: 처리건수 × 처리시간 기반

$$B_y^{admin, cons} = (Q_{nw} + Q_{chg}) \times \tau \times \rho \times w_{gov}$$

- Q_{nw} : 연간 인감 신규신고 처리건수
- Q_{chg} : 연간 인감 변경신고 처리건수
- τ : 건당 처리 시간¹³⁾
- ρ :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감소율¹⁴⁾
- w_{gov} : 공무원의 노동투입 시간가치(편의상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 확대추정 방식: 인력 × 업무비중 기반

$$B_y^{admin, exd} = M \times 12S \times a \times p$$

- M : 인감 담당(읍면동) 수행인력¹⁵⁾
- S : 9급 3호봉 월평균 급여¹⁶⁾
- a : 전체 업무 중 인감 신고·변경에 소요되는 업무량 비중¹⁷⁾
- p :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감소율
- w_{gov} : 공무원 시간가치(편의상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 이송비용 절감 편익은 주소지 이전 시 법정 기한 내 수기 인감대장을 등기로 이송하던 비용이 전산화로 인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로 정의함

- 건당 등기 이송비용은 2025년 기준 2,830원임(우체국 등기 기준)

보다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편익을 과다 추정할 우려가 있음(확대 추정 결과),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추정 방식을 병행하여 행정부담 감소의 편익을 범위로 제시함으로써, 단일 가정에 따른 과대 또는 과소 평가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

13) 설문조사 결과 평균 10분으로 나타남

14) 설문조사 결과 평균 17.6%로 나타남

15) 김권위·고경훈(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5,778명으로 가정

16)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감업무는 대부분 9급 공무원이 담당하며, 설문조사의 경력 응답이 평균 3년으로 나타났으므로 9급 공무원 3호봉의 임금을 적용함. 2025년 기준 9급 공무원 3호봉 월지급액은 2,039,500원임

17) 설문조사 결과 평균 32.41%로 나타남

- 이송비용 절감 편익의 계산

$$B_y^{tran} = 12 \bar{t} \times E$$

- \bar{t} : 읍면동 주민센터 월평균 인감 이송건수(설문 평균 월 99건)
- E: 총 읍면동 주민센터 수(2024년 기준 3,551개소)

○ 따라서 연간 행정 내부 편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B_y^{GOV} = B_y^{admin} + B_y^{tran}$$

□ 비용 및 편익 현재가치(PV) 환산에 따른 경제적 가치 계산 모형

○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총 편익은 다음과 같음

$$B_y^{Total} = B_y^{BP} + B_y^{GOV}$$

○ 편익 발생 기간을 n 년, 시간 할인율을 r 로 두고, 연간 총편익이 매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편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음

$$PV(B) = \sum_{t=1}^n \frac{B}{(1+r)^t} = B \times \frac{1 - (1+r)^{-n}}{r}$$

○ 비용의 현재가치는 초기 일시 비용으로 $PV(C) = C_0$ 으로 처리함¹⁸⁾

○ 경제성 지표 산출

-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NPV = PV(B) - PV(C) = PV(B) - C_0$$

- 비용편익 비율(B/C)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B/C = \frac{PV(B)}{PV(C)} = \frac{PV(B)}{C_0}$$

- $NPV > 0$, $B/C > 1$ 일 때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18) 본 연구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편익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며, 구축 이후 유지관리비는 연구 범위 및 가용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 계상하지 않음. 유지관리비는 시스템 운영 방식, 기존 인프라 활용 정도, 보안·백업 수준 및 고도화 범위 등에 따라 편차가 큰 항목이며, 본 연구는 제공된 구축비용 자료를 기반으로 전산화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1차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비 반영 시 경제적 효과는 보수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

□ 시나리오 구성

- 민원인 편의(보수/확대)과 행정 내부 편익(보수/확대)을 조합하여 4개 시나리오를 구성함
 - S1: 민원인 편의 보수 + 행정 내부 편익 보수
 - S2: 민원인 편의 보수 + 행정 내부 편익 확대
 - S3: 민원인 편의 확대 + 행정 내부 편익 보수
 - S4: 민원인 편의 확대 + 행정 내부 편익 확대
- 이송비용 절감은 전산화 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 절감으로 보아 공통 기준값을 공통적으로 반영
- 또한 할인율(예: 3%, 4%, 5%) 및 분석기간(예: 10년, 20년, 30년)을 변화시키며 NPV와 B/C의 민감도를 비교함

[표 4-24]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모형 구분

민원인 편의 행정 내부 편익	보수 시나리오	확대 시나리오
보수 시나리오	S1	S3
확대 시나리오	S2	S4

3.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타당성 검토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연간 편익은 민원인 편의와 행정 내부 편익으로 구분하여 산정
 - 가정의 차이에 따라 총 네 개의 시나리오(S1~S4)로 구분됨
- 민원인 편의는 주소지 요건 완화로 인한 이동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으로 구성되며, 보수 시나리오 기준 연간 약 83억 원(이동시간 69억 원, 교통비 13억 원), 확대 시나리오 기준 연간 약 189억 원(이동시간 158억 원, 교통비 31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행정 내부 편익 중 공무원 업무부담 절감 효과 중 순수 민원 처리시간 감소만을 반영한 보수적 추정 결과는 연간 약 3.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인감 담당 공무원 인력·보수·업무비중을 반영한 확대 추정 결과는 연간 약 80.6억 원으로 계산되었음
- 또한 주소지 이전 시 수기 인감대장 이송에 소요되던 등기우편 비용 절감 효과를 행정 내부 편익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연간 약 119억 원으로 추정됨
 - 해당 이송비용 절감 효과는 전산화 도입 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으로 판단하여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반영
- 한편, 비용은 인감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 일시 비용으로 약 1,800억 원을 적용
 - 해당 비용은 인감대장 스캔, 이미지 보정·검증,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제경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금액에 해당함

표 4-25 | 인감대장 전산화의 비용-편익 정리

(단위: 백만원)

구분	항목	시나리오	산출근거	추정값
연간 편익	이동시간 절감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이동: 왕복1시간×수혜인구(신규 56,653명 +변경103,378명)× 최저임금(10,030원) • 시군구 이동: 왕복2시간×수혜인구(신규 63,573명 +변경94,095명)× 최저임금(10,030원) • 시도 이동: 왕복4시간×수혜인구(신규 22,576명+변경32,316명)× 최저임금(10,030원) 	6,970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이동: 왕복1시간×수혜인구(신규 122,135명 +변경 241,685명)× 최저임금(10,030원) • 시군구 이동: 왕복2시간×수혜인구(신규 138,544명 +변경218,291명)× 최저임금(10,030원) • 시도 이동: 왕복4시간×수혜인구(신규 50,305명+변경74,396명)× 최저임금(10,030원) 	15,810
	교통비용 절감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이동: 시내버스비(1,600원)× 왕복(2) ×수혜인구(신규 56,653명+103,378명) • 시군구 이동: 시내버스비(1,600원)× 왕복(2) ×수혜인구(63,573명+94,095명) • 시도 이동: 광역버스비(3,200원)× 왕복(2) ×수혜인구(22,576명+32,316명) 	1,368

구분	항목	시나리오	산출근거	추정값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이동: 시내버스비(1,600원)×왕복(2)×수혜인구(신규 122,135명+변경 241,685명) 시군구 이동: 시내버스비(1,600원)×왕복(2)×수혜인구(신규 138,544명+변경 218,291명) 시도 이동: 광역버스비(3,200원)×왕복(2)×수혜인구(신규 50,305명+변경 74,396명) 	3,104
		보수	{연간 신규신고 건수(458,008건)+변경신고 건수(821,654건)}×10분×17.6%×시급(10,030원) ¹⁹⁾	376
	업무부담 절감	확대	인감담당공무원수(5,778명)×9급 3호봉 연봉×업무비중(32.41%)×17.6% ²⁰⁾	8,066
	이송비용 절감	공통	건당 등기비용(2,830원)×주민센터당 연간 평균 이송건수(1,188건)×읍면동 주민센터수(3,551개소) ²¹⁾	11,939
연간 편익 소계	S1	민원인 편익(보수)+행정 내부 편익(보수)		20,653
	S2	민원인 편익(보수)+행정 내부 편익(확대)		28,343
	S3	민원인 편익(확대)+행정 내부 편익(보수)		31,229
	S4	민원인 편익(확대)+행정 내부 편익(확대)		38,919
비용			인감 전산시스템 구축비(1,840억) ²²⁾	184,000

- 이러한 편익을 종합한 연간 총편익은 시나리오별로 S1(하한) 약 206억 원, S2 약 283억 원, S3 약 312억 원, S4(상한) 약 389억 원으로 추정됨
- 이는 민원인 편익과 행정 내부 편익의 보수·확대 조합에 따른 결과임

19) 인감 신규신고 건수 및 변경신고 건수는 2024년 수치를 활용함

20) 설문조사 결과 전체 업무 중 인감 신고·변경 및 수기대장 관리 업무의 비중은 32.41%임

21) 통계청의 전·출입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관내 및 관외로 주소지를 이동한 인구는 총 4,487,846명이며, 설문결과에 기반한 연간 인감대장 이송 건수는 4,218,588건이므로 조사 결과의 타당성·신뢰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됨

22) 자료 반/출입, 인감대장 스캔, 이미지 보정/검증, 메타데이터 추출/입력/검증, 제경비 및 직접경비 등을 포함한 것임

| 표 4-26 |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비용-편익 정리

(단위: 백만원)

구분		S1(하한)	S2	S3	S4(상한)
연간 편익	이동시간 절감	6,970	6,970	15,810	15,810
	교통비용 절감	1,368	1,368	3,104	3,104
	업무부담 절감	376	8,066	376	8,066
	이송비용 절감	11,939	11,939	11,939	11,939
	편익 소계	20,653	28,343	31,229	38,919
총 비용	시스템 구축비	184,000	184,000	184,000	184,000

○ 이러한 연간 편익 규모와 초기 구축비용을 바탕으로, 편익 발생 기간과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 기준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연간 총편익(억 원/년)

- S1(하한) 약 206억 원, S2 약 283억 원, S3 약 312억 원, S4(상한) 약 389억
- 편익은 매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함

○ 초기 구축비용: 1,840억 원(일시)

○ 할인율은 3%, 5%, 7%의 3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 이러한 할인율 가정은 미래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 평가부터 상대적으로 완화된 평가까지 장기 공공투자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시간가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할인율 3%를 적용한 분석 결과, 인감대장 전산화는 중·장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하한 시나리오(S1)의 경우 분석기간 10년 기준에서는 순현재가치(NPV)가 소폭 음(-)의 값을 보이나, 분석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NPV가 양(+)으로 전환되고 비용편익비율(B/C) 또한 1을 상회함
- 이는 민원인 편익과 행정 내부 편익을 모두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일정 기간 이상 누적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됨을 의미함

- 기준 시나리오(S2)는 분석기간 10년 기준에서도 NPV가 약 578억 원으로 나타나고 B/C가 1.3 수준을 상회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편익 발생 기간이 20년 및 30년으로 확대될 경우 NPV와 B/C는 크게 증가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경제성을 보임
- 민원인 편익 또는 행정 내부 편익 중 하나를 확대 가정한 시나리오(S3)와 두 편익을 모두 확대 가정한 시나리오(S4)의 경우, 모든 기간에서 NPV가 크게 양(+)의 값을 나타내고 B/C 또한 1을 충분히 초과함
 - 특히 S4 시나리오는 30년 기준 B/C가 4를 상회하여, 인감대장 전산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지님을 시사함
- 종합하면, 할인율 3% 적용 시 인감대장 전산화는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며, 민원 편익과 행정 효율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그 타당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27 |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3%
(단위: 억 원)

시나리오	편익 기간	PV(B) (편익 현재가치)	NPV(B) (순현재가치)	B/C
S1	10년	1,762	-78	0.96
	20년	3,073	1,233	1.67
	30년	4,048	2,208	2.2
S2	10년	2,418	578	1.31
	20년	4,216	2,376	2.29
	30년	5,555	3,715	3.02
S3	10년	2,664	824	1.45
	20년	4,646	2,806	2.52
	30년	6,120	4,280	3.33
S4	10년	3,320	1,480	1.8
	20년	5,790	3,950	3.15
	30년	7,631	5,791	4.15

- 할인율 5%를 적용한 분석은 미래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불확실성을 강화하여 반영한 보수적 민감도 분석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한 시나리오(S1)는 편익 발생 기간 10년 기준에서 NPV가 음(-)의 값을 보이고 B/C 또한 1 미만으로 나타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분석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NPV가 양(+)으로 전환되고 B/C가 1을 상회하여, 장기적 누적 효과에 따라 경제성이 회복되는 구조를 보임
 - 기준 시나리오(S2)는 분석기간 10년 기준에서도 NPV가 약 349억 원, B/C가 1.19 수준으로 나타나, 할인율을 상향 적용하더라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분석기간이 20년 및 30년으로 확대될 경우 NPV와 B/C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긍정적인 경제 효과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됨
- S3 및 S4 시나리오는 모든 분석기간에서 NPV가 양(+)의 값을 유지하며, B/C 또한 1을 안정적으로 상회함
 - 특히 S4의 경우 할인율 5%라는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30년 기준 B/C가 3을 초과하여, 제도 개선의 장기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할인율 5% 적용 결과는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성이 특정한 낙관적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미래 편익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타당한 사업임을 시사함

표 4-28 |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5%

(단위: 억 원)

시나리오	편익 기간	PV(B) (편익 현재가치)	NPV(B) (순현재가치)	B/C
S1	10년	1,595	-245	0.87
	20년	2,574	734	1.4
	30년	3,207	1,367	1.74
S2	10년	2,189	349	1.19
	20년	3,533	1,693	1.92
	30년	4,357	2,517	2.37
S3	10년	2,411	571	1.31
	20년	3,893	2,053	2.12
	30년	4,799	2,959	2.61
S4	10년	3,005	1,165	1.63
	20년	4,851	3,011	2.64
	30년	5,979	4,139	3.25

- 할인율 7%는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 미래 편익을 최대한 엄격하게 할인하여 평가한 하한 민감도 분석에 해당함
 - 하한 시나리오(S1)는 편익 발생 기간 10년 기준에서 NPV가 음(-)의 값을 보이며, B/C 또한 0.79 수준으로 나타나 단기적 경제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NPV가 양(+)으로 전환되고 B/C가 1을 초과하여, 장기 누적 효과에 따라 최소한의 경제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준 시나리오(S2)는 할인율 7% 적용 시에도 10년 기준에서 NPV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B/C가 1을 소폭 상회함
 - 이는 매우 보수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인감대장 전산화가 단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을 의미함

- S3 및 S4 시나리오는 모든 기간에서 NPV가 안정적으로 양(+)의 값을 유지하며, B/C 역시 1을 충분히 상회함
 - 특히 S4는 30년 기준에서도 B/C가 2.5 이상으로 나타나, 가장 엄격한 할인율 가정하에서도 사업의 경제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하면, 할인율 7% 적용 결과는 인감대장의 전산화가 매우 보수적인 조건 하에서도 중·장기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성립함을 보여주는 검증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표 4-29 | 시나리오별 모형에 따른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할인율 7%
(단위: 억원)

시나리오	편익 기간	PV(B) (편익 현재가치)	NPV(B) (순현재가치)	B/C
S1	10년	1,451	-389	0.79
	20년	2,188	348	1.19
	30년	2,563	723	1.39
S2	10년	1,991	151	1.08
	20년	3,003	1,163	1.63
	30년	3,517	1,677	1.91
S3	10년	2,193	353	1.19
	20년	3,308	1,468	1.8
	30년	3,875	2,035	2.11
S4	10년	2,734	894	1.49
	20년	4,123	2,283	2.24
	30년	4,830	2,990	2.62

제 5 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일반국민 조사로부터 인감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라기 보다 특정 시점·상황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이 확인됨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은행 거래(28.18%)·부동산 거래(25.12%)·자동차 거래(15.28%) 등 재산권·금융·부동산 관련 내용에 집중되어, 인감증명서가 여전히 “핵심 거래 절차의 필수 문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인감 신고 이유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호’(54.11%)가 가장 높고, 각종 행정상 필요(42.75%)도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인감제도가 개인의 편의보다 법적 안전장치 및 절차적 요구에 의해 유지되는 측면이 강함을 시사함
 - 인감 변경 신고 경험은 30.30%로 확인되었고, 변경 사유는 주로 분실·훼손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감 업무의 사후관리(변경·이송)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민원인이 인감 변경을 큰 비용이 드는 절차로 보지는 않으나, 시간·거리 비용의 발생은 국민 불편의 확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 일반국민 중 인감 신고·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37.01%로 나타나, 특정 집단에게는 뚜렷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주요 불편 요인은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27.36%), 업무시간 이후(18시) 이용 불가(20.85%), 절차·서류 복잡(12.87%), 대기시간 소요(13.03%), 도장 제작 불편·비용 초래(12.54%), 대리 위임 시 확인절차 부담(11.56%)

등으로, 불편의 원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나 수용성 부족보다는 오프라인 방문의 필요성에 따른 불편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주소지와 생활권의 일치 여부를 보면 약 75%는 완전히 일치 또는 가까움으로 나타나, 다수에게는 현 제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존재함. 그러나 주소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집단(12.54%)은 인감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물리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인감제도의 개선 효과가 집단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어디서나 인감의 신규 신고·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86.17%)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인감 처리 업무가 빈도는 낮으나 비교적 민원인에게 부담이 크며, 특히 생활권이 분산화된 현재의 환경에서 접근성 개선의 체감효과가 상당 부분 존재함을 보여줌

○ 인감증명서 발급·사용의 가장 큰 이유는 ‘수요처(관공서·금융기관 등)가 인감 증명서만 요구’(56.72%)로 나타났고, ‘다른 증명제도를 알지 못함’(13.88%)이 뒤를 이음

- 이는 인감 이용이 민원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요기관에 의한 준강제적 선택 구조에 의해 유지됨을 의미하며, 제도 개선은 단순히 발급 방식 개선을 넘어 수요기관의 요구 관행·제도 정합성을 함께 다루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출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긍정 응답(53.58%)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온라인 발급 시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28.96%)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해 편의성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안전장치 강화가 수반된 제도 개선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인감 신규·변경 처리건수는 “하루 2~4건”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부담이 크다(45.97%)는 응답이 상당하여, 절대 물량보다 책임 구조(사고 시 책임)와 절차 복잡성이 업무부담을 키우는 구조로 해석됨

- 인감업무 추진 애로사항 1순위는 ‘인감 사고 발생 시 담당 공무원 책임’(49.81%)이며, 다음으로 대리인 신원·서류 확인(30.66%), 수기대장 관리

(14.12%)가 뒤를 이어, 읍면동 공무원들은 인감제도 개선에 있어 편의성보다 책임·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 수기 인감대장 관리 문제는 매우 구조적으로 나타나, 오류·분실 경험이 있다는 응답(57.67%)이 과반 이상이며, 문제 인식은 전산·수기 이중관리 부담(39.03%), 이송 번거로움(26.59%), 분실·훼손 우려(25.75%), 보관공간 부족(7.18%) 순으로 나타남. 이는 수기 인감대장의 전산화에 있어 인감대장 관리의 이중 관리구조 해소가 핵심 과제임을 강하게 뒷받침함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은 월평균 99건으로 보고되어, 전산화가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이 민원 처리뿐 아니라 이송·보관·관리의 운영비 절감에도 있음을 시사함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대해 일반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에 대한 긍정 인식이 매우 높고(86.86%), 주소지-생활권 분리 집단은 체감 불편이 뚜렷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인 국민 편익이 크다는 것이 확인됨
 - 반면 인감업무 담당자는 주소지 요건 완화에 대해 찬성은 57.18%, 반대는 42.83%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며, 찬성 논리는 접근성 개선(48.55%)·주소지 민원 감소(39.35%) 등인 반면, 반대 논리는 책임 소재 불명확(48.76%)·관리 일관성 저하(33.00%)·위변조 위험 및 절차 복잡화 우려(21.77%)·대도시 업무량 증가(21.21%)로 나타남
 - 이는 주소지 요건 완화가 인감의 책임 구조·관리 체계·업무 재배치 문제를 동반하는 종합적인 재설계 과제임을 보여줌
- 바람직한 제도 개선 형태로는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32.77%), 시군구 단위에서 장기적으로 전국 확대(24.37%)가 높게 나타나, 현장은 제도의 즉각적·전면적 개편보다 점진적 변화를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됨
 - 또한 “현행 시스템에서 관할 외 민원 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수용이 어렵거나 불가능(40.63%)이 큰 비중을 차지해, 제도 개편은 통합 전산망(38.80%)·실시간 연계(19.80%)·인력·예산 지원(15.00%)·신원확인 강화(14.31%) 등 다양한 조건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인감업무 담당자들은 인감대장 전산화 및 수기대장 폐지에 ‘찬성’이 95.71% (매우 66.58%, 어느 정도 29.13%)로 나타나, 현장의 수기대장 체계의 비효율에 대한 불만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 예상은 평균 -17.6% 감소로 인식되어, 전산화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업무량 절감 효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기대효과는 업무 효율성 향상(52.49%), 관리 실수·오류 감소(26.98%), 보안·개인정보 보호 향상(18.06%), 정확성·일관성 강화(17.99%), 민원 편의 향상(13.69%), 감사 대응 용이(12.72%) 등으로, 전산화가 행정 내부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세함
 - 다만 전산화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시스템 장애 시 업무 중단(38.08%), 해킹·유출 위험(28.66%), 초기 이관 오류 및 과부하(26.09%), 원본 부재로 진위 확인·이력추적 어려움(25.05%) 등이 제기되어, 전산화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보안·원본성 확보를 전제로 한 설계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 요약

- 심층 면접 결과를 통해 인감제도 개선이 단순 행정 절차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변동, 금융·등기 실무 관행의 변화, 법적 책임 구조의 전환이 중첩된 복합 과제임이 확인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읍면동 공무원·전산 담당·은행·등기소)별 제도 개선의 수용 범위와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등기 실무에서는 종이 인감증명서가 법적 책임 구조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인감대장 전산화가 단기간에 종이 제출 관행을 직접 대체 하기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됨. 이에 따라 전산화의 일차적인 기대효과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부담 완화와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효율성 향상에 두고, 실무적 관행의 변화는 별도의 정책 축으로 설계하여 유인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부진은 신뢰 부족보다는 양식·기재 방식이 실무(은행·등기)의 표준 프로세스와 부합하지 않는 설계 부적합의 문제임이

확인되었으며, 인감과 본인서명의 제도 대체를 위해서는 양식 구조 개선 + 해석·지침 통일 + 수요처의 수용체계 정비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전산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전산화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이 사전에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음

2. 정책효과 분석 결과

□ 수혜가능인구 규모 추정결과

○ 주소지 완화 수준별 수혜가능인구 규모 요약(연간 기준)

- 연간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는 주소지 요건 완화 범위가 확대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보수·확장 시나리오 모두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확인함
 - 보수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56,653명 → 시도 완화 120,226명 → 전국 완화 142,802명
 - 확장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122,135명 → 시도 완화 260,679명 → 전국 완화 310,984명
- 연간 변경 신고 수혜가능인구는 신규 신고보다 그 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인감 보유자가 이미 상당수 존재하는 제도 특성(기등록자 기반)을 반영한 결과임
 - 보수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103,378명 → 시도 완화 197,473명 → 전국 완화 229,789명
 - 확장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241,685명 → 시도 완화 459,976명 → 전국 완화 534,372명

○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미등록자)²³⁾

- 한편, 잠재적 신규 신고 수혜가능인구(미등록자)의 경우, 주소지 요건 완화

23) $\theta=1.0$ 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임

범위가 확대될수록 수혜가능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인감 미등록 인구 중 주소지 요건 완화의 수요가 상당 규모 존재함을 시사함

- 보수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1,001,570명 → 시도 완화 2,078,046명 → 전국 완화 2,454,356명
- 확장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2,804,493명 → 시도 완화 5,706,844명 → 전국 완화 6,729,797명

□ 주소지 완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 결과 요약

- 분석 결과, 완화 범위가 확대될수록 전국 평균 업무량 부담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됨
 - 보수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104.05% → 시도 완화 109.28% → 전국 완화 111.27%
 - 확대 시나리오 기준: 시군구 완화 113.91% → 시도 완화 123.22% → 전국 완화 126.68%
- 주소지 완화에 따른 업무량 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지역 간 인감업무 수요의 편중과 거점 집중이며, 특히 전국 완화 시나리오에서 대도시·업무중심권의 상승 폭이 두드러짐
 - 확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전국 완화 시 서울(137.66%), 광주(136.75%), 세종(142.71%) 등은 업무량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인천(99.07%)은 업무량이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여 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수요의 재배치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주민센터 단위의 업무량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주소지 완화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3,549개소 중 업무량 증가 주민센터 수는 시군구 완화 1,715개소, 시도 완화 1,649개소, 전국 완화 1,619개소로 나타나, 행정청 단위에서도 업무량 증감이 대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됨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요약**

- 인감대장 전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 틀을 적용하여 전산화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 분석기간(10년·20년·30년)과 할인율(3%, 5%, 7%)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순현재가치(NPV)가 0을 상회하고 비용편익비(B/C)가 1 이상으로 나타나, 인감대장 전산화는 보수적 가정하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행정 내부 편익을 구조적으로 반영한 시나리오(S2, S4)에서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경제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됨
- 인감대장 전산화의 경제적 효과는 민원인 편익과 행정 내부 편익을 동시에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할인율 및 편익 가정 변화에도 결과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장기 차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이상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 및 활용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가능인구 규모, 행정업무량 변화, 비용-편익 (경제적 가치)을 계량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도 설계의 방향성과 대략적인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approximation)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현실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노동시간 가치(임금)의 상승과 이동·등기 비용 등의 증가, 전산화 이후 유지비용의 발생 및 할인율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감제도의 개편은 민원인의 인감 이용행태와 읍면동 단위에서의 업무처리 방식 변화, 제도 개선의 범위 및 속도 등 개편 이후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지역별 수요 집중, 대체수단(본인서명 사실향인제 등) 전환, 민원인의 학습효과 등에 따라 실제 개선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행정·민간 데이터의 결합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의 차이, 누락·오차, 대표성 한계로 인해 산출값이 일부 과대/과소 추정되어 분석되었을 여지 또한 있으므로 분석결과의 해석 및 활용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상의 정책효과 분석에서 제시된 수치는 정책 대안 간 상대 비교 및 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되, 최종 제도 설계·확대 적용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 및 운영지표(처리시간, 오류율, 민원발생 등)에 기반한 추가 검증과 보완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인감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 단계적·검증 기반 개편 전략 수립 필요

-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기반 관리체계는 생활권 분산·직주불일치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 시 편익이 높다는 국민 응답(86% 이상)은 인감제도가 지금과 같은 거주지 기반에서 생활권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함
 - 반면 인감업무 담당자들은 책임 소재 불명확·업무량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그에 따라 제도 개편은 단일 조치의 즉각 적용보다는 단계별 검증·보완체계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
 - 주소지 요건의 전면 완화 이전에 시도 단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행정 부담 및 오류율, 처리시간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됨
 - 단계적 완화(시군구 → 시도 → 전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행정처리 한계치(throughput limit)를 분석하여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 전국 단위 완화 시행 시에는 준비 및 안정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병행을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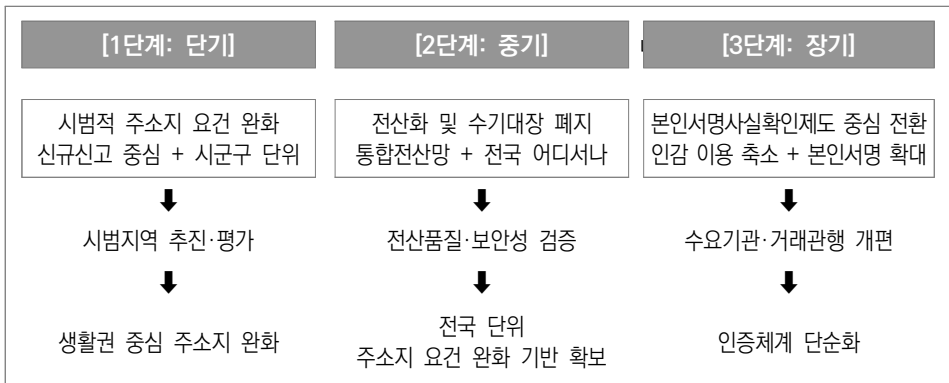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제도는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권 거래에서 여전히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존재함
 - 다만 일반 국민 대상 설문에서의 인감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응답자 과반이 '수요기관이 인감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나타나, 제도 선택이 국민의 자발적 측면에 의존하기보다 수요기관의 관행·요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 이는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성·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감증명제도의 이용을 축소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증명제도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사용 편의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일반국민 및 담당 공무원 중 다수가 신뢰성·보안성 측면에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함
 - 제도적 홍보와 함께 수요기관 관행 개선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실질적 이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인감제도의 개선방향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점진적 전환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그 과정에서 행정적 안정성과 국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함

[그림 5-1] 인감증명제도 단계별 개편 로드맵



2. 인감증명제도 개선 방안

1) 단기 방안: 시범지역 중심의 신규 신고 주소지 요건 완화 및 단계적 확대

□ 시군구 단위의 시범적 주소지 요건 완화 추진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 시 편의성 제고 효과에 대해 국민 응답은 매우 긍정적인 반면, 담당자들은 업무량 증가 및 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우려
 - 전면적 주소지 요건 완화 이전에 특정 시군구 단위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향후 주소지 요건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담, 처리 오류, 새로운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주소지 요건 완화 시 우선 적용 업무는 ‘신규 신고’ 중심으로 제한
 - 담당자 조사 결과, 변경신고는 수기대장 이송·기존 정보 검증 등 복잡도가 높아 단기 확대 시 업무 폭주의 우려 가능성이 높음
 - 신규 신고는 변경 신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고 민원 혼선 가능성이 낮아 초기 시범 적용 대상으로 적합함

□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확대 방향

- 주소지 요건 완화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0단계: 특정 시군구 지역 시범사업 실시
 - 시범지역은 직주불일치율이 높은 직장 또는 대학 밀집 지역 등 생활권 중심의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1단계: 기초자치단체 중심 주소지 요건 완화
 - 관할 증명청의 범위를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확대
 - 자택 주소지와 일치하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환
 - 2단계: 광역자치단체로 주소지 완화 범위 확대
 -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
 - 3단계: 인감 신규 신고·변경 지역의 전국 단위 적용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

□ 주소지 요건 완화에 따른 행정 운영 보완

-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단계별로 업무량 변화(throughput), 처리시간, 오류율, 민원 증가율 등 효과성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지 범위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경감
-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탄력적 인력 배치 지원
 - 단기적으로 신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부·업무지구 밀집 지역 등에 한시적 인력 파견
 - 인력의 순환지원 또는 광역-기초 간 지원체계 구축 검토
- 본인확인 절차 정비 및 표준화
 - 타 지역에서 인감 신규·변경 신고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의 강화
 - 위임장·대리발급 요건 강화 및 신원확인 체크리스트 정비·배포 등
- 민원 분산 및 혼선 방지
 - 신고 업무의 경우 현장에서의 업무량 변화 및 혼란의 발생 가능성이 변경 업무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소지 요건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적용
 - 변경업무 처리시 시범지역 내 사전 예약제 도입 등 검토
 - 정부24 등 온라인 사전 안내 강화 및 민원 응대 매뉴얼 체계화

2) 중기 방안: 인감대장 전면 전산화 및 수기 인감대장 폐지

□ 단계적 전산화 추진 필요

- 업무 담당자의 절대다수가 수기 인감대장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분실·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대장 이송 업무(주소지 이전 시 우편 발송 등)는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저해
 - 전산화 시 업무량이 평균 1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는 인감대장 관리에 있어 구조적 전환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전면 전산화 시행 이전 특정 지자체 또는 권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데이터 이관 오류, 시스템 장애, 신원확인 프로세스 설계 등의 문제를 사전에 검증
 - 전산화 초기 오류로 인한 민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테스트베드 마련
- 시범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전면 전산화 추진
 - (가칭)국가 표준 인감관리시스템(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 구조 마련
 - 인감대장의 경우 변경 신고에 따른 기록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므로 전자기록 기반의 이력관리 기능 탑재·강화

□ 전산화 시 기대효과

-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와 대장 이송 업무가 사라짐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업무가 모두 가능해지며, 업무 부담 완화와 비용 절감, 나아가 행정 효율화가 기대됨
 - 민원인 접근성·처리시간 개선 및 이동비용 절감
 - 수기 인감대장 기록·관리상의 실수·오류·분실 가능성 감소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상시 추적관리 가능

□ 전산화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

- 시스템 장애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폭증 우려
 - 이중화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이 필요
- 개인정보 유출·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
 -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한 고도화된 인증·접근권한 관리 기능 도입
- 데이터 이관 오류 및 초기 업무량 증가
 - 단계별 이관·검증 절차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지원
 - 담당 공무원의 신규 시스템 적응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침 제공

3) 장기 방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의 인증체계로 전환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상의 구조적 제약

- 일반 국민 및 업무 담당자 모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
 - 일반 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경험은 29%에 불과하나 향후 이용 의향은 88%로 매우 높음
 - 인감 업무 담당자들의 절대 다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를 병행 운영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인증체계를 단일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
- 발급의 편의성 및 신뢰성 향상, 그리고 종이서류 감소 등의 부수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및 전면적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관행적 인감 요구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확산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기재’ 및 ‘위임받은 사람 상세 기재’ 의무 완화
 - 현재와 같이 기재정보 오류 시 서류의 재발급이 필요한 구조는 제도의 이용 장벽으로 작용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감증명서처럼 범용적 제출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 필요
- 일정 유예기간 이후 신규 인감 신고를 제한
 - 제도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특정 시점 이후에는 신규 인감 신고를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의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필요
- 수요기관 중심 홍보 및 안내 의무 강화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대출, 자동차 매도 등에서 제출이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안내 실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표준 매뉴얼 배포 및 현장 직원 교육 병행

- 전 금융기관·등기소의 통합 안내체계 구축
- 수요기관 관행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인감에서 본인서명으로의 제도 대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 확립

□ 장기적으로 인증체계 구조 단순화

- 국민·기관 모두 이해하기 쉬운 단일 인증체계로 이동
 - 인감증명제도의 점진적 축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표준 인증수단으로 전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모바일 기반 비대면 이용 활성화
- 민간 인증수단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장기적으로 인증체계는 공공-민간의 상호보완 구조로 전환 필요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 인증체계의 신뢰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3.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 제도·법령 측면

- 단기 (1단계)
 - 인감 신규신고에 한해 시군구 단위 주소지 요건 완화 시범 규정 마련
 - 시범사업 근거 고시·지침 제정, 책임소재·처리범위 명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기재요건 완화 등 시행령 개정
- 중기 (2단계)
 - 인감대장 전산화 관련 상위법·시행령·행정규칙 정비
 - 수기 인감대장 폐지 근거 마련 및 경과규정 설정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한 법적·행정적 근거 정비
- 장기 (3단계)
 -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주요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선 사용을 명시
 - 일정 시점 이후 신규 인감신고 제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전환 유도
 - 인감증명제도의 단계적 축소·전환 로드맵 제도화

□ 시스템·인프라 측면

○ 단기 (1단계)

- 기존 시스템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 신규신고 처리 기능 시범 적용
- 시범지역 전산 처리시간·오류율·민원 패턴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

○ 중기 (2단계)

- (가칭)국가 표준 인감관리시스템 구축
- 수기 대장 디지털 이관(스캔·메타데이터 입력) 및 품질 검증
- 이중화·백업, 보안체계 강화

○ 장기 (3단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출 시스템 고도화
-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연계(전자본인서명, 전자증명서 제출 등) 및 수요기관 확대

□ 현장 운영 측면

○ 단기 (1단계)

- 시범지역 주민센터에 인감전담 인력 한시 배치
- 본인확인·대리발급 표준 매뉴얼 배포 및 단기 집중 교육
- 사전예약제·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민원 분산 운영

○ 중기 (2단계)

- 수기대장 폐지에 따른 업무 재배치 및 정원·업무량 재산정
- 전산시스템 활용 교육(기초·심화 과정) 상시 운영
- 전산 장애 대응, 보안 사고 대응 등 비상 매뉴얼 마련·훈련

○ 장기 (3단계)

- 인감 업무를 축소하고, 본인서명·전자본인서명 업무 중심으로 재구조화
-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창구·전담인력 운영
- 인증 제도 전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 창구 마련 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 인식·홍보 측면

○ 단기 (1단계)

- 시범지역 대상 ‘어디서나 인감 신규신고’ 안내 캠페인
- 주민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문자 안내 등 생활권 단위 홍보

○ 중기 (2단계)

- 수기대장 폐지 및 전산화에 따른 민원 변화 사항 안내
- 장애 발생 시 대체 창구·절차에 대한 사전 공지
- 등기소·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전산화 연계 교육

○ 장기 (3단계)

- 수요기관 중심 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환 캠페인 실시
- 은행·법원·공공기관 창구에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 가능’ 상시 안내
-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별도 리플릿·설명회·상담창구 운영

표 5-3 | 인감증명제도 개선에 따른 단계별 내용 및 전략 요약

단계	주요 내용	기대효과	문제 가능성	대응전략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지역 중심 주所知 요건 완화 • 이후 시군구 단위 주所知 요건 완화 운영 확대 • 인감 '신규신고'에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중심 신고·변경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감소 • 국민의 행정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신고에 따른 관리·책임 주체 불명확 우려 • 특정 지역(도심·업무지구 등)에 민원 쏠림 현상 가능 •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신 및 민원 증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확인·대리발급 요건에 대한 표준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실시 • 사전예약제 등 민원 분산 장치 도입 • 정부24·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 인감대장 폐지 • 통합 전산망 구축 및 인감대장 전면 전산화 •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대장 이송·보관·검증 업무의 제거로 행정 효율성·업무 생산성 향상 • 분실·훼손·기재 오류 등 이블로그 관리의 구조적 위험 감소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처리 가능에 따른 민원인 편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장애·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 가능성 • 초기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누락·오입력 등 전산 품질 저하 위험 • 해킹·사이버 공격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및 위·변조 우려 •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현장 적응 부담 및 교육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화·백업, 재해복구센터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표준 절차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운영 • 위변조 기능성에 대비한 고도화된 인증·접근권한관리 도입 • 전산시스템 매뉴얼·온라인 교육·현장 설명회 등 체계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 • 인감증명 이용 축소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 제작·보관·분실에 따른 비용·위험 소멸 • 본인발급에 따른 대리 위·변조 위험 상대적 감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연계해 비대면·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래 편의성 증대 • 인증 수단의 단순화·표준화에 따른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을 전제된 한 기존 거래 관행·내부 규정과의 충돌 가능성 •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의 제도 적응 부담 및 접근성 저하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관 중심의 시스템 개편 등 전환계획 마련 •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대면창구 유지 및 별도 보호체계 구축

4. 소결: 인감제도 개편의 방향 및 과제

□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필요성과 수요에 비해 편의성·접근성의 제약이 존재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반 관리체계가 생활권 분산·직주불일치가 변화된 행정 환경과 충돌
 - 이는 국민에게는 행정적 장벽·추가 비용·시간 소모로, 담당 공무원에게는 수기대장 관리·대장 이송·책임 부담 등의 구조적 비효율로 나타나고 있음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성과 선택권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설계와 수요기관 관행, 시스템·홍보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단일 조치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보다 단계적·검증 기반의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인감증명제도 개선 로드맵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의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신고'에 한해 주소지 요건을 완화
 - 그 결과를 토대로 업무량 변화, 처리시간, 오류율, 민원 증가 양상 등 객관적 지표를 추적·분석
 - 이후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 단위로 단계별 확대 전략을 실시
- 중기적으로는 인감대장의 전면 전산화·수기대장 폐지를 통해 수기 기록·이송·보관에 수반되는 비효율·위험을 제거
 - 통합전산망·실시간 정보연계·전자 이력관리체계를 구축
 - 전국 어디서나 신고·변경 가능한 기술·시스템 기반을 마련
- 장기적으로는 인감증명제도의 이용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표준적인 인증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재설계
 - 제도·법령·수요기관 규정과 거래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인증체계를 단순·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도장 제작·보관이 필요

하지 않으며, 전자본인서명과 연계 시 비대면·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현대적 인증제도의 속성을 갖고 있고,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 신뢰성·보안성 측면에서 인감증명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용도 기재’ 및 ‘위임받은 사람 상세 기재’ 의무, 기재 오류 시 재발급 필요 등은 제도 이용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
-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수준의 범용성·편의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등기소·행정기관 등 수요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도록 내부 규정·매뉴얼·전산시스템을 함께 개편해야 함

□ 단계별 개편 전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법령, 시스템·인프라, 현장 운영, 인식·홍보의 네가지 축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제도·법령 측면에서는 각 단계별 조치(주소지 요건 완화, 전산화·수기대장 폐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중심 전환)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인감제도의 단계적 축소·전환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 통합 인감관리 전산망 구축, 데이터 이관·품질관리, 이중화·백업·보안체계 등을 사전에 갖추어 전산 장애·사이버 공격·데이터 오류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비대면 이용 기반을 확충해야 함
- 현장 운영 측면에서는 단계별로 인감전담 인력 배치, 업무 재배치 및 정원 재설계, 전산·보안·비상대응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창구 운영 등을 통해 공무원의 책임 부담과 적응 비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인식·홍보 측면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소지 요건 완화·전산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전환에 대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특히 은행·법원·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창구에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 가능’ 여부를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오해를 줄이는 소통 전략이 필요함

-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성 증진, 책임 구조의 명확화, 인증체계의 현대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해당**
 - 단기적으로는 시범적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해 생활권 중심 인감 행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증
 - 중기적으로는 인감대장 전산화·수기대장 폐지를 통해 전국 단위 시스템 기반을 구축
 - 장기적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증체계의 단순화 및 표준화 전략을 추진
 -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불편 해소, 책임 구조의 명확화, 인증체계의 현대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인감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 김건위·현승현·최인수. (2016).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 pp. 37-62.
- 김건위·고경훈. (202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감 및 서명확인제도 개선 연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진일·허준. (2015).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 학회보』, 17(3), pp. 97-118.
- 김병두. (2006). 印鑑證明廢止와 그 대안. 『비교사법』, 13(2), pp. 217-249.
- 문흥안. (2020).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46), pp. 131-176.
- 박광동. (2011). 인감증명법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입법평가연구』, 4, pp. 63-83.
- 박광동. (201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의 제도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 18(1), pp. 87-118.
- 박광동. (2024).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부동산법학』, 28(1), pp. 161-175.
- 이민주·박인권. (2016). 지역 특성에 따른 소득별 직주불일치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2(1), pp. 67-82.
- 정창훈·신동오·장룡호·양대현·이경희·염홍열. (2016). 메시지 인증 코드를 위한 디지털 인감.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2), pp. 345-358.
- 정창훈·민대홍·양대현·이경희. (2018). 디지털인감을 이용한 일회용 비밀번호 인증 프로토콜의 제안,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14(4), pp. 45-5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보고서.
- 한정미. (2020).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아주법학』, 14(3), pp. 62-89.
- 허준·김진일. (2015).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의 위조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 학회보』, 17(3), pp. 97-118.

Gobillon, L., Selod, H., & Zenou, Y. (2007). The Mechanisms of Spatial Mismatch. *Urban Studies*, 44(12), 2401-2427.

OECD. (2005).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Environment : Recent Developments. <http://www.sourceoecd.org/environment/9264010041>.

업무 담당자

인감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업무담당자)

안녕하십니까?

인감증명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감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감업무 담당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진솔한 답변은 제도 개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 조사 주관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 협력기관: 행정안전부

A

인감 업무 처리 관련

A1.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인감증명 업무를 100%이라고 할 때 아래 각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무의 비중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로 입력, 각 업무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설정)

담당업무	업무 비중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① 인감증명서 발급											
② 인감 신고(변경)											
③ 대장관리(이송)											
④ 본인서명신청 및 발급											
⑤ 민원응대											

A2. (최근 1년간)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말소, 부활 포함) 처리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루에 처리되는 평균 건수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하루 1건 이하 ② 하루 2~4건 ③ 하루 5건 이상
- ④ 기타: (_____)

A3.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 업무(말소, 부활 포함) 처리에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건당 평균 처리 시간을 숫자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입력)

- 3-1. 인감 신고: 평균 _____ 분
- 3-2. 인감 변경: 평균 _____ 분

A4.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에 소요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적인 업무량이 매우 많음
- ② 절대적인 업무량이 다소 높은 수준임
- ③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부담이 큼
- ④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님
- ⑤ 절대적·상대적 업무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
- ⑥ 기타: (_____)

A5. 인감업무 추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인감사고 발생 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 부여(소송, 손해배상 등)
- ② 대리인의 신원 확인 및 위임장 등 서류 확인
- ③ 수기 인감대장 관리(수기 인감대장 정리, 이송시 분실 우려 등)
- ④ 민원 응대
- ⑤ 기타: (_____)

A6. 지금까지 수기 인감대장의 관리 오류나 분실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A7.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주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보관 공간 부족
- ② 분실·훼손 우려
- ③ 이송 과정 번거로움
- ④ 전산과 수기의 이중 관리 부담
- ⑤ 기타: (_____)

A8.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에 따른 인감대장 이송 건수는 월평균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_____건 / 월

B**인감증명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실태 관련****B1. 관할 주소지가 아닌 민원인이 인감 신고(변경)를 신청하여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다
- ② 자주 있는 편이다
- ③ 가끔 있는 편이다
- ④ 별로 없다
- ⑤ 거의 없다

B2. 귀하가 속한 기관에서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신청 시, 평균 민원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분 미만(거의 즉시처리 가능)
- ② 5분~10분
- ③ 10분~20분
- ④ 20분~30분
- ⑤ 30분~1시간
- ⑥ 1시간 이상

B3.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민원(불편, 문의 등)을 자주 접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 접함 ② 가끔씩 접함
- ③ 드물게 접함 ④ 관련 민원이 거의 없음
- ⑤ 기타: (_____)

B4.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 관련 민원이 있다면, 주요 민원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불편(예: 등본상 주소지에서만 처리 가능)
- ② 처리 지연 또는 처리시간 관련 불만(예: 민원인이 오래 대기하여야 함)
- ③ 절차의 복잡성(예: 본인 확인이나 수기 인감대장 작성이 복잡함)
- ④ 필요 서류에 대한 불만(예: 사전 작성 서류가 많고 작성이 어려움)
- ⑤ 기타: (_____)

B5. 현행 인감 신규 신청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주소지 요건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
- ②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
- ③ 수기 인감대장 관리의 비효율성
- ④ 업무 부담 과중
- ⑤ 기타: (_____)

B6.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후 수령방법에 등기우편(본인수령)을 추가하고, 집배원이 방문하여 정당 본인 확인 후 배당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 도입 찬성
- ② 제도 도입 반대(반대시 사유: _____)

B7. 인감대장을 신 증명청으로 이송 시 우정사업본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등기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B8. 현재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부동산·자동차 매도 및 법원·은행 제출은 제한되는데, 사용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부 확대 필요 ②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확대
 ③ 법원·은행 확대 ④ 필요하지 않음

C

인감증명제도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선 필요 관련

C1. 현행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어느정도 필요함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④ 매우 필요하지 않음

C2. 인감증명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주소지 요건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및 편리성 강화
 ② 제도 정비를 통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최소화
 ③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 폐지
 ④ 인감증명 사고 방지를 위한 대리발급 요건 강화
 ⑤ 기타: (_____)

C3. 인감제도의 주소지 요건을 완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청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어느 정도 찬성 ③ 어느 정도 반대 ④ 매우 반대

C4.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에 있어 주소지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 편의성 증진
 ② 주소지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민원 감소
 ③ 현행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행정 유연성 향상
 ④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존하는 현실에서 제도 간 정합성 증대
 ⑤ 기타: (_____)

C9. 만일 인감제도의 주소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국 어디서나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로 개편
- ② 본인의 주소지가 위치한 시도(광역시자체)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단계적 확대
- ③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향후 시도 단위,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점진적 확대
- ④ 직장, 학교 등 주 생활지역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생활지역에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요건을 완화
- ⑤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주소지 요건을 완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방향을 논의
- ⑥ 기타: (_____)

C10.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말소, 부활 포함)이 가능해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시스템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합 전산망 구축
- ② 실시간 정보 연계
- ③ 신원 확인 절차 강화
- ④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교육 등 제공
- ⑤ 추가 인력 및 예산 등 지원
- ⑥ 기타: (_____)

C11.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전산화하여 수기 인감대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어느 정도 찬성 ③ 어느 정도 반대 ④ 매우 반대

C12. 전산화를 통한 수기 인감대장이 폐지될 경우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를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수기 작성 및 관리 과정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 향상
- ② 자료 누락·오류 등의 실수 및 오류의 감소
- ③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인감대장 관리의 정확성과 일관성 강화
- ④ 종이대장 보관이 불필요해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 ⑤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해져 민원인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⑥ 업무 표준화 및 기록 관리가 강화되어 사후 추적과 감사 대응 용이
- ⑦ 기타: (_____)

C13. 전산화를 통해 수기 인감대장이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감 관련 업무량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숫자로 입력)

※ 0%는 “현재와 동일”, 음수(-)는 “업무량 감소”, 양수(+)는 “업무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예: -50% = 업무량 절반 감소, +50% = 업무량 1.5배 증가)

업무량 변화 예상치: _____ %

C14. 전산화를 통해 수기 인감대장이 폐지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을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① 시스템 장애나 전산 오류 발생 시 업무 중단 및 민원 처리 지연
- ②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 증가 우려
- ③ 인감대장 원본(수기 기록) 부재로 자료 진위 확인 및 이력 추적 어려움
- ④ 초기 전산화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관 오류 및 업무량 과다 발생 가능
- ⑤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전문인력 확보 부담
- ⑥ 새로운 전산시스템 활용 및 적응에 대한 부담
- ⑦ 기타: (_____)

C15.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 홍보 강화
- ② 발급수수료 인하
-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
- ④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
- ⑤ 기타: (_____)

C16.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 홍보 강화
- ② 이용기관 확대(은행 및 민간기관 등)
- ③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
- ④ 이용승인신청 방법 다양화(비대면 이용승인 신청)
- ⑤ 인증 보안 수단 강화
- ⑥ 기타: (_____)

S

일반 현황

S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응답하지 않음

S2. 연령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세 이상

S3. 소속

- ① 본청 ② 구청 ③ 사업소 및 직속기관 ④ 읍면동 ⑤ 의회
⑥ 기타: (_____)

S4. 근무지역

- ① 시도: _____
② 시군구: _____
③ 읍면동: _____

S5. 직급

-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이상
⑥ 기타: (_____)

S6. 근무경험

S6-1. 공무원 경력

- ① 1년 이하 ② 1년 이상~3년 이하 ③ 3년 이상~5년 이하 ④ 5년 이상

S6-2. 민원 업무 담당 경력

- ① 1년 이하 ② 1년 이상~3년 이하 ③ 3년 이상~5년 이하 ④ 5년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내용은 인감증명제도 개선 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일반국민

인감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국민)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이 인감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인감제도 개선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인감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 조사 주관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 협력기관: 행정안전부

A

인감증명서 이용 관련

A1. 귀하는 최근 1년간 인감(도장)을 신고(변경)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이용한 적이 있다 ⇨ A2번 항목으로 이동 ② 이용한 적이 없다 ⇨ 조사종료

A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까? (중복 응답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거래 | <input type="checkbox"/> 상속 절차 처리 |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거래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관련 |
| <input type="checkbox"/> 은행 거래(대출 등) | <input type="checkbox"/> 계약·사업 신청 |
| <input type="checkbox"/>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 <input type="checkbox"/> 보상금 청구·수령 |
|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 | <input type="checkbox"/> 보증(신용·인우·연대·재정) |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A3.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변경 신고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A3-1번 항목으로 이동
 ② 있음 (현재까지 ____회 ※ 숫자 입력) ⇨ A4번 항목으로 이동

A3-1. 인감(도장)을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보호
 ② 각종 행정상 필요(은행대출, 행정서류제출 등)
 ③ 독립된 세대를 구성
 ④ 부모 또는 지인의 필요성 언급
 ⑤ 기타: (_____)

A4. 인감 변경 신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동 시 소요된 교통비와 시간 소모에 따른 손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거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와 ㉡의 경우로 나눠 각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한 경우(현재 주소지와 주 생활지가 일치)
 ⇒ ()
 ㉡ 신고 주민센터가 달라 이동해서 신고할 경우(현재 주소지와 주 생활지가 불일치)
 ⇒ ()

- | | |
|---------------------|---------------------|
| ① 1만원 미만 | ② 1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
| ③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④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
| ⑤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⑥ 30만원 이상 |

A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일치합니까?

- ① 읍면동 단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예: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살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직장도 있음)
- ② 주소지 바로 옆 동네 등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예: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살고 있고 원주시 반곡동에서 가게를 운영함)
- ③ 주소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주로 생활한다
(예: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으나 학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어 통학함)
- ④ 자주 생활하는 지역이 주소지와 매우 떨어져 있다
(예: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있으나 직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임)
- ⑤ 기타: (_____)

A6. 현행 인감(도장)의 신규 신고 또는 변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인감(도장)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주소지와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완전히 같아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음
- ②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달라 필요시 이동해야 하나 거리가 가까워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③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다르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따로 시간을 내어 처리가 필요함
- ④ 현재 주로 생활하는 지역(직장, 학교 등)이 주소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려면 연차나 휴가 여가 등을 활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함
- ⑤ 기타: (_____)

A7.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인감 신규 신고 및 변경이 가능해 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당장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② 현재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다
- ③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나 신고·변경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다
- ④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 ⑤ 기타: (_____)

A8.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시 불편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A10번 항목으로 이동

A9.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 시 겪었던 불편 사항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방문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 ② 일과 후(18시) 발급 이용 불가
- ③ 도장 제작에 비용·불편 초래
- ④ 대리인에게 위임시 재외공관·병원 등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⑤ 인감의 신규 신고·변경, 증명서 발급 등에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됨
- ⑥ 본인 확인 등 절차나 요구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함
- ⑦ 기타: (_____)

A10. 본인증명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주로 발급·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증명제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알지 못하여
- ② 개인이 발급하기 수월하고 이용이 편리
- ③ 수요처(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
- ④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감증명서가 익숙해서
- ⑤ 인감증명서에 대한 높은 신뢰
- ⑥ 대리인을 통한 발급가능
- ⑦ 기타: (_____)

A11. 현재 정부24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법원 제출용,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출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제출기관 확대하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 ② 제출기관을 확대하되, 온라인 발급 시 본인 확인 수단 강화 필요
- ③ 법원과 은행 제출용은 대출 등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 반대
- ④ 확대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 ⑤ 기타: (_____)

B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관련

B1. 최근 1년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2012.12.1.시행)를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사용해 봤다 ② 사용하지 않았다 ☞ B3번으로 이동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신고와는 달리 행정기관에 서명신고를 하지 않으며, 발급시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구술로 신청하여 본인 서명을 통해 발급 (도장 필요 없음)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최초1회)을 받아, 공동인증서로 인터넷(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하며, 수요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발급수수료 무료)

B2-1.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 하셨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거래 | <input type="checkbox"/> 상속 절차 처리 |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거래 |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관련 |
| <input type="checkbox"/> 은행 거래(대출 등) | <input type="checkbox"/> 계약·사업 신청 |
| <input type="checkbox"/>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 <input type="checkbox"/> 보상금 청구·수령 |
|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임대차 계약 등 | <input type="checkbox"/> 보증(신용·인우·연대·재정) |
|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

B2-2.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 ① 인감(도장)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 ② 수요기관(공공기관, 등기소, 은행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요구
- ③ 인감증명서에 비해 위·변조 등에서 안전해보여서
- ④ 발급비용이 저렴해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현재 무료)
- ⑤ 기타: (_____)

B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알지 못함
- ② 수요기관(공공기관, 등기소, 은행 등)에서 인감증명서만 요구
- ③ 대리발급이 불가능함
-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서 서명해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해서
- ⑤ 해킹이 우려됨
- ⑥ 인터넷 및 정보화 기기 사용 미숙
- ⑦ 기타: (_____)

B4. 향후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B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 홍보 강화
- ② 발급수수료 지속 무료화(현행법령상 '28.12.31.까지 무료)
-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운영으로 접근성 확대
- ④ 제도 정비를 통한 수요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
- ⑤ 기타: (_____)

B6.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제도 홍보 강화
- ② 이용기관 확대(은행 및 민간기관 등)
- ③ 정부24(인터넷, 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편리성 강화
- ④ 최초 이용 신청 시 온라인 신청 허용(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
- ⑤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민간간편인증 허용
- ⑥ 기타: (_____)

B7.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홍보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홈페이지(정부24 등)에서 배너, 게시글 등으로 안내
- ② 정부 차원에서 홍보 캠페인 실시
- ③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포스터, 홍보책자 등 비치
- ④ 은행 등의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
- ⑤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 ⑥ 기타: (_____)

B8.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감증명서가 더 신뢰된다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신뢰된다
- ③ 비슷하다
- ④ 잘 모르겠다

B9.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개선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S

일반 현황

S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응답하지 않음

S2. 연령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59세 ⑥ 60~69세 ⑦ 70세 이상

S3. 거주지역

- ① 광역 단위: (_____) 예: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
② 기초 단위: (_____) 예: 서대문구, 양주시, 부여군 등

S4. 직업

-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영업직 ⑥ 생산직
⑦ 단순노무직 ⑧ 농림/어업 ⑨ 자영업
⑩ 대학(원)생 ⑪ 주부 ⑫ 무직
⑬ 기타: (_____)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내용은 인감증명제도 개선 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연구 2025-07

국민 편의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선 연구

저 자	황정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